

| 미국·EU편 |

#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20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CONTENTS



## 제1장

- 길잡이 개요 1

## 제2장

- 국제공동연구와 연구보안 3
  1. 국제공동연구 근거와 정의 및 추진 유형 4
  2.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 6

## 제3장

- 미국 연구보안 주요 제도·규정 및 유의사항 9
  1. 개요 10
  2. 에너지부(DOE) 16
  3. 국립과학재단(NSF) 45
  4. 국립보건원(NIH) 49
  5. 항공우주국(NASA) 53
  6. 전쟁부(DoW) 57

## 제4장

- EU 연구보안 주요 제도·규정 및 유의사항 61
  1. 개요 62
  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70
  3. 독일 88
  4. 영국 93
  5. 프랑스 98

## 제5장

-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가상 사례 105

〈참고문헌〉 115

〈부록〉 (연구자 및 기관용) 국제공동연구 단계별 연구보안 주요 유의사항 121

1. 기획 시 연구보안 유의사항 122
2. 계약 시 연구보안 유의사항 124
3. 수행 중 연구보안 유의사항 126
4. 종료 후 연구보안 유의사항 129

〈색인〉 주요 용어 해설 131



# 요약문

## ▶ 미국의 연구보안 제도·규정 개요

- » (개요) 미국 정부는 미국 자금이 투입된 연구 활동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미국의 연구자금 수혜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관련 보안 규정을 이해하고 유의할 필요
- » (관련 법령 및 규정) 미국의 주요 연구보안 정책은 다음의 상위 법령 및 지침에 기반
  - 「국가안보대통령교서-33 (NSPM-33)」
  - OSTP의 NSPM-33 연방기관 이행지침
  - 2022년 「CHIPS 및 과학법」
- » (주요 기관)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FY2025) 기준 주요 R&D 자금 지원기관은 전체 연방 연구개발 예산의 약 92.5%를 차지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방부(現 전쟁부)(DoD, 41.8%), 보건복지부(HHS, 27.1%), 에너지부(DOE, 11.6%), NASA(8.5%), 국립과학재단(NSF, 3.5%) 순임
- » (공통 보고 의무) 모든 연방 자금 수혜 연구자들 중 연구책임자 등 ‘대상 인물’은 악성 외국 인재채용 프로그램(MFTRP)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외국 인재채용 프로그램(FTRP) 참여 이력을 공개해야 함

## ① 에너지부(DOE)

- » (개요) 미국 에너지부(DOE)는 개방형 국제협력 정책과 함께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술 민감도, 연구자의 외국 연계 여부, 국익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국제공동연구 승인 여부를 평가
- » (관련 규정) 미국의 주요 연구보안 정책은 다음의 상위 법령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함
  - 외국정부 활동 : DOE O 486.1A
  - 외국인 접근 : DOE O 142.3B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 DOE O 483.1B
  - 전략적 파트너십(SPP) : DOE O 481.1E
  - 국립연구소 교류지침 : DOE P 485.1A
  - 공식 외국출장 : DOE O 550.1
  - 기술 민감도 분류기준 : S&T Risk Matrix

### ① (DOE O 486.1A)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

- DOE 직원 및 Contractor Personnel의 위험국가 관련 외국 정부 후원 인재 프로그램(FGTRP) 참여 금지
- DOE와 고용 관계가 있는 직원 및 계약자의 위험국가 관련 기타 외국 정부 연계 활동(자금 수령, 직위 수락 등)은 DOE 장관 또는 고위 승인자 사전 승인 필요

## ② (DOE O 142.3B) Unclassified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 외국인은 FACTS 시스템 등록, 이력서 제출, 신분 확인 등 절차 필요
- Red 기술 접근 시 위험국가 국적자는 강화된 승인 및 CI 심사 필요

## ③ (DOE O 550.1 Chg 1) Official Travel

- (DOE 직원 준수 사항) DOE 직원 및 계약자의 모든 공식 해외 출장은 FTMS 시스템 등록 및 사전 승인 필요하며, 민감국가 대상지 방문 또는 민감 주제 포함 시 IN 사전 브리핑 필수

## ④ (S&T Risk Matrix) Science & Technology Risk Matrix

- 기술 민감도를 Red/Yellow/Green으로 분류
- Red는 제한기술로 간주되어 위험국가 접근 시 본부·현장 심사 및 승인이 필수

## ⑤ (DOE P 485.1A)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 모든 외국기관 협력은 DOE 본부 사전검토 대상
- MOU, LOI, SPP, CRADA 등 포괄적 검토 범위

## ⑥ (DOE O 483.1B Chg 2)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CRADA)

- 미국 내 기술 활용 우선, FOCI 심사, IP 분배 조건 충족 필요
- 위험국가 또는 Red 기술 관련 협력은 DOE 차관 승인 필수

## ⑦ (DOE O 481.1E Chg 1)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SPP)

- DOE/NNSA 미션과 정합성, 산업경쟁 저해 여부, 리소스 낭비 방지 등 요건 검토
- Red 기술 포함 시 FOAB·DOE 차관 면제 승인 필수

### 〈참고〉 DOE의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및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관련 조치

» (개요)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정된 위험국가 및 민감국가와의 연구 협력, 기술 접근, 인력 교류에 대해 다양한 사전 승인 및 통제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국가안보, 기술보호, 방첩 활동 등과 연계되어 있음

#### ① 위험국가 관련 조치

- (정의) 국가정보국의 위협 평가 및 국가 방첩 전략에 따라 DOE 차관이 지정
- (현재 지정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벨라루스 (2025년 5월 기준)이며, 변동 가능
- 관련 규정 및 주요 조치
  - (제한기술 접근 통제) 위험국가 국적자/기관의 Red 등급 기술 접근 시 DOE 본부 및 현장 승인 필수
  - (인재유치 프로그램 제한) DOE 직원 및 계약자 대상 위험국가 FGTRP 참여 금지, 기타 외국 정부 연계 활동 제한
  - (국립연구소 협력 제한) 위험국가와 Red 기술 협력(MOU, CRADA, SPP 등) 금지, 사전 면제 필요
  - (CRADA 체결 제한) Red 기술 포함된 CRADA 협력 시 FOAB 및 DOE 차관 예외 승인 필요
  - (SPP 체결 제한) Red 기술 포함된 SPP 협력 시 FOAB 및 DOE 차관 예외 승인 필요

## ② 민감국가 관련 조치

- (정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지원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정
- (현재 지정국) 외부 비공개, DOE 내부 SCL(Sensitive Countries List)로 관리
- (제한 여부) 국제과학협력, 일반적 접촉, 출장 등을 금지하지 않음
- 관련 규정 및 주요 조치
  - (국립연구소 협력 사전 평가) 민감국가 국적자 연구자와의 협력 시 접근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 (CRADA 협력 정보 보고) 계약기관이 민감국가와 수익·계약관계 시 FOCI 심사 대상, 완화조치 필요
  - (기술 및 시설 접근 제한) 민감국가 국적자의 NNSA 접근 시 인덱스 조회 필수, 기록은 FACTS에 등록
  - (방첩 브리핑 (출장 시)) 민감국가 출장 또는 접촉 시 방첩 브리핑 수행
  - (비공식 민감국가 여행) 민감국가 여행 전·후 보고 및 브리핑, 가족 거주 시 3일 이내 보고
  - (방첩 프로그램 평가 항목) 민감국가 인물 접촉 기록의 정확성·시의성 등 방첩 성과 평가 항목 포함

## 2 국립과학재단(NSF)

- » (개요) NSF는 외국 영향, 이해충돌, 중복자금 수혜 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며,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 조직을 운영함. 국무부가 지정한 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와의 협력은 강화된 심사 대상
- » (주요 연구보안 규정 및 의무 사항) 2024년 5월 20일 개정된 PAPPG 24-1 기준으로 다음 사항 공개·보고 의무화됨
  - (외국 자금-Current & Pending Support) 외국 정부·기관의 직접/간접 지원 (연구비, 장비, 인력 등)
  - (외국 무보수 기여-Current & Pending Support) 외국 기관의 현물(in-kind) 기여, 무보수 공동연구 포함
  - (외국 직위-Biosketch) 외국 기관과의 모든 임용·자문·방문 연구 등 (보수 여부 무관)
  - (외국 협력자-COA) 최근 48개월 내 공동연구자, 공동저자, 지도교수·제자 관계 등
- » (MFTRP 금지 및 인증) 모든 주요 인력은 제안서 제출 시점부터 MFTRP(악성 외국 인재유치 프로그램) 불참을 개별 인증해야 함
- » (기관 요건 : 연구보안계획 자체 인증) 연간 NSF 수혜액이 \$500,000 이상인 기관은 자체 연구보안계획을 인증해야 함
- » (규정 위반 시 조치) 누락 기재, 허위 기재, MFTRP 허위 인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3 국립보건원(NIH)

- » (개요) 미국 내 생물의학 연구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 연구자 및 기관이 외국 활동, 자원, 재정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 » 주요 요구사항
  - (Other Support) 외국 자금, 인력, 장비 등 모든 현물 기여 포함

- (Foreign Components) 외국에서 수행되는 연구 또는 외국 소속 연구자 관여 시 NIH 사전 승인 필요
- (FCOI (재정적 이해충돌)) 외국 기관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은 소속 기관을 통해 NIH에 보고

#### » 보고 방식

- (Other Support) JIT 단계 및 RPPR 보고
- (Foreign Components) 최초 제안 또는 변경 시 사전 승인
- (FCOI (재정적 이해충돌)) 연 1회 이상 기관 평가 및 NIH 보고

### 4 항공우주국(NASA)

#### » (개요) GCAM(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Manual)을 통해 연구보안, 수출통제, 외국 참여자 관리 등 명확히 규정

#### » 주요 요구사항

- (Export Control) 외국 참여자는 수출통제법(ITAR, EAR) 적용 대상 여부 평가 필요
- (MFTRP 금지) PI, Co-PI, Co-I(연간 10% 이상 참여자)는 MFTRP 미참여를 매년 자가 인증
- (Foreign Participation Disclosure) 소속 및 역할 등 관련 정보 공개 필요

### 5 전쟁부(DoW)

#### » (개요)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외국 영향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MFTRP 금지, 정보공개, 보안심사 제도를 운영함

#### » 주요 요구사항

- (Current and Pending Support) 연구자의 모든 과제 및 외국 자금, 시간 투입, 수혜기관 정보 제출 의무
- (MFTRP 금지) 2024.8.9 이후 MFTRP 참여자 포함 과제 또는 관련 정책 미보유 기관은 연구비 수혜 불가
- (Security Review) 외국 영향에 대한 위험기반 심사 도입 (FTRP, FCOC 자금, 특히, BIS 등재기관 관련성 평가)

#### » 보안심사 결과 유형

- (Prohibited) 수혜 불가
- (Mitigation) 보완조치 조건부 수혜
- (Disclosure Only) 정보 제공만 요구
- (No Action) 문제 없음

#### » (이행 조치) MFTRP 참여 사실은 연례 RPPR 보고하며, 보안심사 거절 시 서면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존재

## EU의 연구보안 제도·규정 개요

### 1 EU 연구보안 개요

»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수반되는 연구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법적 권고안으로, “가능한 한 개방(as open as possible), 필요한 만큼 폐쇄(as closed as necessary)”라는 원칙 아래, 개방성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강조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4, May 23).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

- 국제 R&I(연구 & 혁신) 협력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리스크들(비의도적 기술이전, 외국의 불순 영향, 윤리·정직성 위반 등)을 명시하며, 이러한 리스크가 EU 및 회원국의 안보·가치·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
- 주요 내용으로 ①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연구보안 접근법 개발 및 시행, ②연구자·기관을 위한 리스크 평가·대응체계 마련, ③정부 부처 간 및 학계·산업계 간 협력 강화, ④민감기술·핵심기술 분야 국제협력 시 특별 리스크 인식 및 처리 강화 등 포함

### 2 Horizon Europe

» (상위 규정) Regulation (EU) 2021/695 제20·22·40조는 Horizon Europe 규정에서 연구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조항으로, Horizon Europe 연구보안의 대원칙 제시

- (제20조(보안)) 연구 수행 단계에서 보안 원칙 준수,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 처리 요건, EU 외부 협력 시 보안협정 필요성 등 규정
- (제22조(참여)) 일반적 개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EU의 전략적 자산·이익·자율성·안보 관련 활동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제40조(연구성과 통제)) 연구성과(Result)의 이전·라이선스 시 사전 통보 및 타 수혜자의 이의 제기 권리, 비연합 제3국 대상 이전/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의권 규정

» (집행 문서) Regulation에 근거하여 채택·운영되는 집행 문서 또는 실무 지침으로서, 공모·계약·과제 수행 단계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

-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EU 기밀정보(EUCI)의 정의, 등급, 취급, 보호 절차
- (Work Programme) Regulation 제22조(참여 자격), 제20조(보안), 제38~41조(성과 및 EU 이익 보호)에 근거하여, 연도별 공모마다 참여 제한, 보안 요건, 성과 관리 관련 추가 조건을 토픽별로 구체화
- (Model Grant Agreement (MGA)) 보안·기밀·EUCI 취급 의무와 함께 연구성과의 소유, 활용, 이전 및 라이선스에 관한 절차를 계약상 의무로 명시

» (내부 계약 문서) Consortium Agreement(CA)를 통해 수혜자 간 내부 계약 사항을 규율

- (Consortium Agreement) 수혜자 간 내부 계약으로, 컨소시엄 내부의 역할, 책임, 지식재산권(IPR), 기밀정보, 데이터, 제3자 활용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을 규정하는 문서

- » (타 EU 일반 규정) Horizon Europe 자체 규정과 동일 체계는 아니지만, 연구보안과 밀접히 연계되어 과제 수행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EU 규정
  - (Regulation (EU) 2021/821 (이중용도 규제))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수출·이전 규제
  - (Regulation (EU) 2019/452 (FDI Screening)) EU의 안보·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 (Regulation (EU) 2016/679 (GDPR))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 3 독일

- » (대외경제법, AWG) EU 이중용도 규정(2021/821)의 독일내 이행 근거, 연구성과·기술 수출 통제
- » (대외경제령, AWV)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연구기관 지분 인수 시 심사 대상
- » (DFG 가이드라인) 국제공동연구 참여 시 연구자의 위험 자가 평가 요구
- » (연구회 규정) 각 연구회별 국제협력, 데이터, 파트너 검증 규정
  - (막스플랑크협회) ①이중용도·안보 관련 연구 위험성 평가, 자가점검, 법규(수출통제·대외무역법) 준수, ②안전성 관련 연구 윤리위원회 알림·자문 절차
  - (프라운호퍼협회) ①수출통제법 준수, 허가 지역·불허 시 계약 책임 제한, ②정보보안·기밀유지·지식재산 보호, ③수출통제 절차 적용
  - (헬름홀츠연합) ①데이터 보호 법령 준수, ②대외무역법·제재 준수, ③연구성과·기밀정보 무단 공개 금지, ④비민수 목적 협력은 사례별 검토
  - (라이프니츠연합) ①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보안·윤리 리스크 연구 심의, ②수출통제 준수, 협력 전 위험평가

### 4 영국

- » (국가안보투자법, NSIA)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투자 거래에 대해 정부가 심사·개입할 수 있는 권한 규정
  - 17개 민감 분야(첨단소재, AI, 양자, 위성, 합성생물학, 방위산업 등)에 대한 거래는 의무 통보 대상  
※ 17개 민감 분야의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AI 및 에너지 분야의 일부 완화 및 중요 광물 분리, 데이터 인프라 확장, 응급 서비스 공급자 세부화, 물 분야 추가 등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 논의가 진행 중
- » (수출통제령, Export Control Order) 이중용도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및 이전을 규제하여 군사 전용 및 WMD 확산을 방지
- » (학술기술승인제도, ATAS) 특정 국적의 학생·연구자가 영국 내 특정 민감분야 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 시작 전/비자 신청 전 ATAS 증명서 요구
-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지침, Trusted Research Guidance) 국제협력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법적·사이버 위험에 대해 기관 및 연구자 단위의 식별·완화를 지원하는 지침

## 5 프랑스

- » (과학기술잠재력보호제도, PPST) 국가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외국 간섭·부당한 지식 수집·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ZRR(제한구역) 지정 및 접근 통제를 통해 민감 연구공간을 관리
  - ZRR로 지정된 연구소·대학의 특정 실험실·시설은 국적과 무관하게 사전 인가가 필수
  - 위험 기준은 국가 경제·과학적 잠재력 침해, 외국 군사력 강화, WMD 확산, 방위능력 약화 등
- » (이중용도 기술·수출통제) 생물·화학 병원체, 유전자편집 기술, 첨단 반도체 장비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EU 역내 이전·중개·기술지원·환승을 규제
  - 이메일·클라우드 업로드·화상회의 등 전자적 전송도 기술 수출에 해당할 수 있음
  - 허가: 이중용도 품목은 EGIDE 시스템을 통해 경제부 산하 SBDU 허가가 필요하며, 군사목록 품목은 국방부(DGA 등) 별도 체계를 통해 승인
- » (지적재산권(IPR) 보호) 프랑스 지식재산법에 따라 직무발명은 기관(대학·연구소)에 귀속되며, 연구자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CNRS, École Polytechnique 등은 기술이전·스핀오프 설립을 적극 장려함
- »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 GDPR·정보자유법에 기반하여 민감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며, 건강데이터 외부 호스팅은 HDS(Hébergement de Données de Santé) 인증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고, 연구 목적 사용 시 가명처리·익명화 등 고강도 보호조치가 요구됨

# 제1장



• 길잡이 개요 •



## 제1장. 길잡이 개요

### ▶ 추진배경

- »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는 국가 간 기술 협력과 혁신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의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연구보안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연구보안 관련 법제 및 절차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연구자의 자금 수령, 인력 참여, 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의무적 공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과제 참여 초기 단계부터 각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 공개 및 이해충돌 관리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한 사전적 노력 필요

### ▶ 목적 및 필요성

- »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보안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안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 가상 사례와 FAQ 형식의 실무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단순 규정 요약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함

### ▶ 주요 내용 및 구성

- »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기본 개념과 유형, 그리고 연구보안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국내 주요 제도 소개
  - » (제3장) 미국 연방 R&D 예산 상위 5개 기관\*(DoD, DOE, NIH, NASA, NSF)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로 상이한 연구보안 요구사항과 준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보 공개 의무, 외국 인재 프로그램 관련 제한, 민감기술 관리 등 우리나라 연구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 \* DoD, HHS(NIH로 대체), DOE, NASA, NSF 등
- 이를 위해 FY2025 미국 연방 R&D 예산 요청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연구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자들이 사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규정과 절차 등을 정리함
- » (제4장) EU 연구보안 개요, Horizon Europe 연구보안 관련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EU 국가R&D 투자 규모 상위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의 연구보안 제도 분석
  - » (제5장)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가상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각 사례별로 적용 규정, 연구보안 이슈, 가능한 후속 조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하였음

※ 각 사례는 실제 공개된 규정, 정책, 보도자료, 인터뷰,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해를 돋기 위해 재구성·창작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관, 인물 또는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

#### 참고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사용설명서

-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용어(영어 약자) 해설은 본권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색인을 참조 바랍니다

## 제2장



### • 국제공동연구와 연구보안 •

1. 국제공동연구 근거와 정의 및 추진 유형
2.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



## 제2장. 국제공동연구와 연구보안

### 1 국제공동연구 근거와 정의 및 추진 유형

#### ▲ 국제공동연구의 법적 근거

- »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형태로,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 **과학기술기본법**
  - 제18조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필요한 연구비 지원, 성과 관리, 보안 대책 등을 포함
  - 연구보안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성과 보호 및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
- » **국제사법 및 기타 법규**
  -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 및 협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
  - 계약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해결 절차를 정의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연구수행 과정에서는 『국제사법』, 『형법』, 『행정소송법』 등 다양한 법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시행령 및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연구보안의 기본 원칙과 관리 방안을 규정

#### ▲ 국제공동연구의 개념과 범위

- » 국제공동연구는 국내 기관(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해외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연구 주체)**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하며, 연구주체 간 협력 방식에 따라 단순한 연구 교류부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연구 방식)** 논문 공동 작성 및 발표, 공동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기술 공동개발 및 연구성과 공유, 해외 연구자 초빙 및 파견 프로그램 운영
  - **(연구 범위)** 기술개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인력 양성, 정보 교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 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며, 연구 주제와 협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 △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유형

» 국제공동연구는 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 수행 방식, 연구성과의 공유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①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연구비는 국내 연구기관이 관리하며, 해외 연구자는 연구 협력자로 참여
  - 연구협약 및 계약 없이 논문 공동 집필, 공동 실험 등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 ※ (예) 국내 대학이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여 신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

### ② 공동기관형

- 해외 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비 일부를 직접 수령
  -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며, 연구성과를 공동 소유
  - 연구비 집행이 국내외에서 각각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식 협약이 체결됨
- ※ (예)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국내 연구소와 해외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 ③ 별도과제형 (Joint Call)

- 연구내용은 연계되어 있지만, 연구비 집행 및 연구계획 수립은 각국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
  - 연구비 지원 기관이 국가별로 다르며, 연구결과 공유 방식도 사전에 정의됨
- ※ (예)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 수행 후 연구성과 공유

## △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절차

»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

- **(수요 조사)** 연구개발 필요성을 평가하고, 국제협력 대상 국가 및 연구기관을 선정, 정부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주제와 협력 가능성을 검토
- **(사전 기획)** 연구과제의 목표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조달 방식 및 연구성과 공유 방식 결정,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 및 연구윤리 검토
- **(공고 및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협력 기관과 협약 체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과제 신청 및 참여,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 **(과제 선정 및 협약)**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연구 협력 기관 선정, 연구 협약 체결 후 연구 수행 개시,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구성과를 관리
- **(연구 수행 및 성과 공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성과 보호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연구성과 발표 및 국제적 활용 방안 마련
- **(사후 평가 및 연구성과 확산)**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검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개발 계획 수립

## △ 국제공동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 **연구보안** : 연구성과 보호 및 연구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
- » **지식재산권 관리** : 연구성과의 공동 소유 및 특허 출원 시 명확한 협약 필요
- » **연구비 집행 투명성** :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비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함
- » **정책 및 규정 준수** : 국가 간 연구협력 시 각국의 연구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준수 필요

## 2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

### △ 연구보안의 개념과 국제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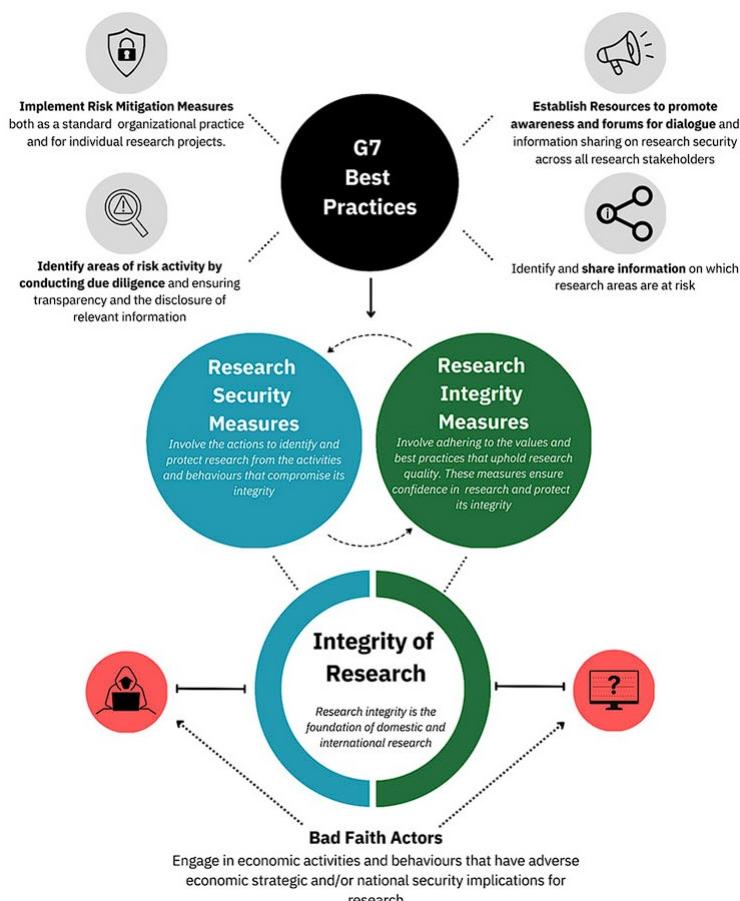
- » 국제공동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연구 방식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 감염병 연구, 우주 개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 형태로 부상 중
  - 이러한 개방성과 협력 중심의 연구 환경에서는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 연구보안이란 연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국가 안보적 위험 요소로부터 연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함께 신뢰받는 연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
  - 연구보안은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와 국제적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IP) 보호, 데이터 보안, 연구 성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연구보안이 부재할 경우, 외국 기관이나 적대적 행위자에 의해 연구 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의 정당한 공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
- » G7 국가들은 연구보안과 연구진실성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의 보호와 개방성 간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특히, 연구보안 조치는 불법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IP) 침해, 연구 자산의 부적절한 활용 등을 방지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
- » 연구보안은 단순히 연구자 개인이나 특정 연구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 및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체계적인 연구보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및 연구기관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연구보안은 연구자 및 기관의 자율적 실천이 중요한 기반이 되나, 국제적 가이드라인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

### △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연구보안 주요 이슈

- » 최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보안의 개념은 군사 및 경제 안보 영역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임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자금 수혜 신고 의무화, 연구자 및 기관 대상 연구보안 가이드 배포, 연구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연구안보정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구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지원금 및 외국 자금 수혜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보안은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글로벌 협력 및 경제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연구성과의 유출이나 악용은 자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보안은 과학기술정책뿐 아니라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 국제사회에서도 연구보안 관련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G7은 연구보안 8대 원칙을 발표하며 연구보안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G7 연구보안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국익과 글로벌 이익의 균형 유지) 국가별 연구보안 정책이 각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어야 함을 강조
- (개방성과 연구보안의 조화) 연구보안이 과도한 규제가 되어 개방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
- (협력과 대화 촉진) 연구보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국제적 대화를 통해 조율되어야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협력을 유지해야 함
-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연구자 및 기관이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교육 필요
-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연구 분야 및 연구 내용에 따라 차별화된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연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동 책임의 이행) 연구보안은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 국제기구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임
-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연구보안 관련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적응성과 유연성 확보) 연구보안 정책은 기술 및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개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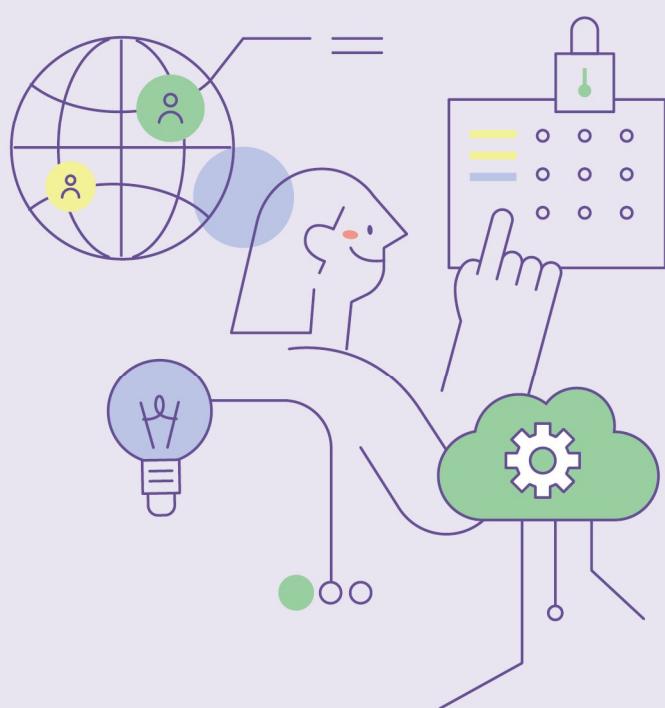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보안과 연구진실성이 연구의 기초를 보호하는 방식

※ (출처) <https://science.gc.ca/site/science/en/safeguarding-your-research/general-information-research-security/international-research-security-resources/g7-common-values-and-principles-research-security-and-research-integrity>

- ▶ 이러한 연구보안 원칙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과 개방성 간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제3장

---





## • 미국 연구보안 주요 제도 · · 규정 및 유의사항

1. 개요
2. 에너지부(DOE)
3. 국립과학재단(NSF)
4. 국립보건원(NIH)
5. 항공우주국(NASA)
6. 전쟁부(DoW)



## 제3장. 미국 연구보안 주요 제도·규정 및 유의사항

### 1 개요

#### ▶ 미국 정부는 자국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활동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 » 미국 정부 연구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자금 지원 기관이 요구하는 연구 보안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 »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미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각 자금 지원 기관이 설정한 연구보안 요건을 숙지
  - 미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권장됨
  - 각 연구 자금 기회(RFO)에는 연구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요건은 미국 연구보안 관련 지침에 따름

#### ▶ 미국 연구보안정책 관련 상위 법령·지침 및 주요 자금 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 » 주요 법령 및 지침
  - 2021년 국가안보대통령교서-33 (NSPM-33,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33)
  - 2022년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발표한 NSPM-33 연방기관 이행 지침
  - 2022년 CHIPS 및 과학법
-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보고서에 따르면, FY2025 연방 연구개발(R&D) 예산 요청<sup>1)</sup>에서 주요 5개 기관의 예산 비율을 합산 시 전체 연방 R&D 예산의 약 92.5%를 차지하며, 개별 기관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국방부(現 전쟁부) (DoD) : 전체 R&D 예산의 41.8%
  - 보건복지부(HHS) : 전체 R&D 예산의 27.1%
  - 에너지부 (DOE) : 전체 R&D 예산의 11.6%
  - 항공우주국 (NASA) : 전체 R&D 예산의 8.5%
  - 국립과학재단 (NSF) : 전체 R&D 예산의 3.5%

1) Sargent, J. F., & Gallo, M. E. (2024, March 27).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unding : FY2025 (CRS Report No. R483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8307>

참고 **국가안보대통령교서-33 (NSPM-33(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33))**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받는 연구 활동의 보안과 무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발표한 지침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외국의 부정한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조치 중 하나
- NSPM-33은 △ 연구자 개인의 보고 의무 (Disclosure Requirements) △ 연구기관의 책임과 보안 체계 구축 (Research Security Programs) △SciENcv 시스템 통한 통합 보고 권장 등을 연구보안 관련 핵심 내용으로 규정
  - **연구자 개인의 보고 의무 (Disclosure Requirements)** : 연방 자금 수혜 대상자(PIs, Co-PIs, Senior Personnel 등)는 외국의 직책 및 소속, 외국 기관/정부의 연구지원 수혜 이력, 외국 정부와의 계약, 협약 이력,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FTRP) 참여 여부, 외국에서의 연구활동 및 공동연구 이력 등의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 특히 연구자는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s)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부인해야 하며, 참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 자격 제한 또는 제재
  - **연구기관의 책임과 보안 체계 구축 (Research Security Programs)** : 연구비를 수혜하는 기관 전체에 다음 요건을 요구
    - 정보보안 (Cybersecurity) : 연방 표준(NIST SP 800-171 등)에 따라 연구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 연구자 행동 관리 (Researcher Disclosure Policy) : 연구자의 외부 활동, 재정지원, 겸직 등 모든 이력의 포괄적·정기적 보고 체계 마련
    - 해외 협력 위험 평가 (Foreign Risk Management) : 공동연구 파트너의 국적, 기관 성격(군사적 목적 여부 등), 통제 기술 여부 등에 따른 사전 위험 분석
    - 연구보안 교육 및 인식 제고 : 연구자 대상 정기적 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이 네 가지 요소는 연방정부가 향후 모든 수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보안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SciENcv 시스템 통한 통합 보고 권장** : SciENcv(Science Experts Network Curriculum Vitae)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모든 경력·수혜 이력 보고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NSF와 NIH 등 주요 기관은 이를 의무화 중
- 상기 연구보안 관련 규정 미준수 시 연구비 회수, 향후 연방과제 수주 제한, 법적 제재 가능
- NSPM-33은 연방 자금(federal funding)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짐

### 참고 OSTP가 발표한 NSPM-33 연방기관 이행 지침

- 2022년 1월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는 NSPM-33의 실제 이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으로 “NSPM-33 Implementation Guidance” 문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지침은 연방 연구자금 수혜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안 체계와 연구자 보고 시스템의 표준화 기준을 제시
- 이 지침은 기관의 연구보안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고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관의 연구보안 프로그램 구성 요소 (4대 영역) : OSTP는 연방 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건을 아래 네 가지 분야로 명확히 규정
    - 정보보안 (Cybersecurity) : NIST SP 800-171 등 보안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데이터 보호체계 구축
    - 연구자 행동관리 (Researcher Disclosure Policies) : 외부 소속, 겸직, 재정지원 이력 등 의무적 보고 체계
    - 외국 영향 리스크 평가 (Foreign Risk Management) : 국가, 기관의 성격, 과제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 평가
    - 교육 및 훈련 (Research Security Training) : 모든 연구자 대상의 주기적 보안 교육 이행 필수
  - ※ 미 정부는 4대 요건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연방 연구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도록 함
- 보고 정보의 표준화(Disclosure Elements Checklist) : OSTP는 연구자 개인이 보고해야 할 사항을 소속 기관, 외국 정부 지원 모든 형태의 외국 자금 수혜 이력, 고용계약, 연구비 지원, 비금전적 지원, 외국 인재유치 프로그램 FTRP/MFTRP 참여 여부 등 13개 항목으로 표준화하였으며, 미국 연구기관은 이 Checklist를 기반으로 자체 보고양식 개발 또는 SciENcv 등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고 받도록 함

### 참고 CHIPS 및 과학법 내 연구보안 관련 조항

- 2022년 제정된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연방 연구개발(R&D) 활동의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은 특히 외국의 부정한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연구자 및 기관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연구보안 교육 의무화** : 2025년 5월 1일부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은 연구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구책임자(PI), 공동연구자(Co-PI), 프로젝트 디렉터(PD),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생 등 주요 기여자가 포함되고, 교육 내용은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시 보안 고려사항, △외국의 부정한 영향 및 간섭 대응, △연구 무결성 및 위험 관리 등을 포함
  - **연구보안 프로그램 구축 요건** : 연방 R&D 자금을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수령하는 기관은 사이버보안, 외국 여행 보안, 내부 위협 인식 및 식별, 수출 통제 교육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함
  -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 참여 금지** : 연방 연구 자금 수혜자는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MFTRP)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증해야 하며, 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구비 수혜 자격이 제한되거나 박탈 가능함
  - **외국 재정 지원 공개 의무** :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의 우려 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 및 계약을 연간 보고해야 함
  - **국립과학재단(NSF) 내 연구보안 및 정책 사무소 설립** : NSF는 △연구보안 정책 개발 및 모범 사례 수립, △연구 보안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수행, △연구 제안서 및 수상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 △NSPM-33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역할을 하는 ‘연구보안 및 정책 사무소를 유지

## ▣ 모든 R&D 자금 지원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의무 사항 : MFTRP 및 FTRP 관련 보고 의무

※ 상세 보고 요건 등은 기관 내부 규정을 따르며,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대상 개인'(Designated Individual, 미국 연구 보안 정의 참조)은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제안서 제출 시점 및 수상 기간 동안 매년, 본인이 악성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MFTR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점 및 수상 기간 동안 매년, 모든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FTRP) 참여 여부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함

### » 시행 시점

- NSF 과제의 경우 : 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됨
- 기타 모든 연방 및 비연방 외부 후원 과제 : 2024년 8월 9일부터 적용됨

### » 과거 MFTRP 참여 이력에 대한 고려사항

- 2022년 8월 9일 이전에 MFTRP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이 포함된 제안서는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과제 수탁 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관에 따라 완화조치(Mitigation Measures)가 요구될 수 있음

## ▣ 주요 연구보안 규정 요약

### » ①정보 공개(Disclosure) 및 이해충돌 관리, ②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제한, ③CUI(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및 수출통제, ④기술이전 통제, ⑤시스템 접근 및 시설 출입 통제, ⑥출국 및 출장 통제 등의 연구보안 규정을 운영 중

| 표 1 | 주요 연구보안 규정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정보 공개 (Disclosure) 및 이해충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소속, 자금, 인재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에 대한 의무적 공개 요구</li> </ul>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FTRP 참여 금지 및 증명 의무</li> <li>• MFTRP 참여자는 미국 연방과제 참여 제한 또는 자금 지원 불가</li> </ul>
CUI 및 수출통제(Export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 및 시스템 통제</li> <li>• 외국 연구자의 접근은 사전 승인, 보안 교육 이수, 최소 권한 원칙에 기반하여 관리</li> </ul>
기술이전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협력 시 기술 범위·제공자료·보안 수단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li> </ul>
시스템 접근 및 시설 출입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계정, 연구시설 방문, 소프트웨어 접근 등과 관련하여 사전 보안 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li> </ul>
출국 및 출장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으로 미국 내 국방 또는 에너지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경우,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요구됨</li> </ul>

**참고 미국 연구보안 주요 공통 정의 및 요구사항**

- 미국 연구보안 정책 관련 상위 법령·지침인 국가안보대통령교서-33 (NSPM-33), NSPM-33 연방기관 이행 지침, 2022년 CHIPS 및 과학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보안 관련 용어 및 요구사항 등을 다음과 같음
- **소속(Affiliation)**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술적·전문적·기관적 임명 또는 직위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 연계 기관과의 관계를 포함
  - 전일제, 시간제, 자원봉사(겸임, 방문, 박사후 과정, 명예직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연계(Association)**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술적·전문적·기관적 임명 또는 직위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 연계 기관과의 관계를 포함하나,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나 대가성 의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인물(Covered Individual 또는 Senior/Key Personnel)**
  - 법률 제10638조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
    - 연방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과제에 대해 과학적 개발 또는 수행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자
    - 해당 연방 연구기관이 '해당 인물'로 별도로 지정한 자 (기관별로 사명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
  - NSPM-3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PI), 주요 연구자, 그리고 연방 연구기관 실험실/시설 소속 연구자 (내부 연구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정부 소유·민간 운영(GOCO) 실험실 및 시설 소속 인력도 포함됨
- **우려 국가(Foreign Countries of Concern, FCO)**
  - 미국 정부가 연방법(10 U.S.C. 4872(d))에 따라 지정한 우려 국가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포함됨
- **선물(Gift)**
  -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례금, 호의, 할인, 오락, 환대, 대출, 관용, 라이선스, 특별 접근, 장비 시간, 샘플, 연구 데이터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타 항목 포함
  - 현물, 티켓 구매, 선불 또는 비용이 발생한 후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교통, 지역 여행, 숙박, 식사, 연구 시간 등의 서비스와 선물도 포함
-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 FTRP)**
  - 외국 정부 또는 연계 기관 주관의 프로그램, 직위 또는 활동으로서 아래 형태의 보상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됨. 해당 보상은 국가 차원(중앙/지방) 또는 대리 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보상이 서면 계약·문서 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포함
    - 현금 보상, 현물 보상 (연구비 포함), 향후 보상 약속, 무료 해외여행, 비경미성(non de minimis) 물품, 명예직 또는 직위, 경력 발전 기회 등
  - **FTRP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협력 활동은 다음과 같음** (단,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따른 특정 리스트에 포함된 제재기관 주관일 경우 제외) :

- 과학 정보의 학술 발표 및 출판 (법령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경우)
- 상호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교류가 있는 국제 회의, 교류, 프로젝트 참여
- 외국 유학생에 대한 조언 및 추천서 제공
- 다음과 같은 국제 활동 참여 :
  1. 미국 정부 일부가 후원한 이사회 활동(예 : 미-이스라엘 공동과학기금)
  2. 국제기술기구, 표준화기구, 다자과학기구 활동
  3. 풀브라이트 등 공공재정 국제교류 프로그램
  4. 국제 학회, 학술원(예 : 로열 소사이어티 등) 활동
  5. 방문학자, 안식년, 박사 또는 전문자격 취득 관련 학술 활동
  6. 연구개발 업적에 따른 국제상 수상 (예 : 노벨상)
- 악성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 MFTRP)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악성 외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MFTRP)으로 간주**
    - 외국 정부 또는 그 연계 기관으로부터 현금·현물·명예직·경력 기회 등을 수령하고
    - 이에 더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 :
      1. 지식재산, 데이터,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외국 정부 또는 기관에 이전
      2. 타 연구자 또는 학생의 MFTRP 참여 모집
      3. 외국에서의 실험실 설립, 교수직 수락, 회사 설립 등 수행 (연방 R&D 계약 위반 시 해당)
      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조건
      5. 해당 활동으로 인한 미국 연구 활동 수행 능력 제한 또는 중복 수행 유도
      6. 외국 정부 자금 신청 의무
      7. 본인 소속기관 또는 연방연구기관의 명시를 고의로 생략하도록 요구
      8. 본 프로그램 참여 사실을 본인 고용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보고하지 않도록 요구
      9. 보조금 이해 상충 또는 책임 상충을 유발
  - MFTRP로 간주되는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우려국가 또는 그 연계 기관에서 운영 또는 후원
    - 국방수권법 제1286조(c)(8), (9)상 '문제 기관'으로 분류
    - 외국 인재 프로그램 명단에 포함된 프로그램
  - **MFTRP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과학 정보 발표 및 출판 (법률 통제 대상 제외)
    - 국제 회의·연구 프로젝트 등 상호 정보 교류 기반 협력
    - 외국 유학생에 대한 지도 및 추천서 제공 요청 응답

## 2 에너지부(DOE)

### ▲ 개요

»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제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지향함과 동시에,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운영 중임

- DOE는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외국 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력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보 전략, 산업경쟁력, 정보보호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 단순한 기술 통제나 계약 심사를 넘어서, 개인·기술·제도 전반에 걸친 선제적 통제 체계를 운영
- 연구자의 이력, 기술의 민감도, 기관 협력의 전략적 정합성, 산업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력 여부를 승인

### 참고 DOE의 주요 연구보안 규정

- 외국 정부 후원 또는 제휴 활동 : DOE Order 486.1A,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
- DOE 국립 연구소와의 해외 교류 : DOE Policy 485.1A,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 협동연구개발계약 : DOE Order 483.1B Change 2,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CRADA)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DOE Order 481.1E Change 1,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SPPs)
- 비밀이 아닌 외국인 접근 프로그램 : DOE Order 142.3B, Unclassified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 공식 외국 출장 : DOE Order 550.1 Change 1 (LtdChg), Official Travel
- 과학기술 위험 매트릭스 : Science & Technology Risk Matrix

### ▲ DOE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연구보안 접근

» DOE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연구보안 접근의 특성은 ①개인 기반 관리, ②사업·기술 기반 관리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 가능

#### ① (개인 기반 관리) 개인 신원 및 외국 연계 활동의 선제적 식별·통제

※ (관련 규정) DOE O 486.1A(외국 정부 후원 또는 제휴 활동), DOE O 142.3B(비밀이 아닌 외국인 접근 프로그램), DOE O 550.1 Chg 1 (공식 외국 출장)

- DOE는 연구자의 국적, 경력, 외국 정부와의 관계, 외국 자금 수령 또는 직위 수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
- 특히 외국 정부 인재 유치 프로그램(FTRP) 참여 이력이나 외국 기관과의 관계는 협력 제한 또는 사전 보고·승인 대상이 됨

**②(사업·기술 기반 관리) 국제공동연구는 미국의 국익 및 DOE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및 기술 민감도 등을 기반으로 승인되며, 기술의 민감도는 S&T Risk Matrix에 따라 등급화**

※ (관련 규정) DOE P 485.1A(DOE 국립연구소와의 해외 교류), DOE O 481.1E Chg 1(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DOE O 483.1B Chg 2(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S&T Risk Matrix(과학기술 위험 분류 기준)

- 국립연구소와의 MOU, CRADA, SPP 등은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미국 산업·외교·안보 전략과의 일치 여부가 검토되며, DOE 본부(HQ)의 보안·법무·외교 담당 부서의 사전 심사를 통해 승인
-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y)에 대해서는 DOE의 S&T Risk Matrix를 활용하여 Red, Yellow, Green 등급으로 사전 분류하며, 민감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인 접근 제한 및 면제 절차 적용 요구

| 표 2 | DOE 연구보안 접근 차원별 관련 규정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규정
① 개인 기반 관리	외국 정부와의 연계, 인재 프로그램(FTP) 참여, 외국 자금 수령, 외국 직위 수락 여부 등을 사전 식별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O 486.1A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li> <li>DOE O 142.3B (Unclassified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li> <li>DOE O 550.1 Chg 1 (Official Foreign Travel)</li> </ul>
② 사업·기술 기반 관리	신흥 기술을 S&T Risk Matrix에 따라 Red, Yellow, Green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외국인 접근 제한 및 면제 절차 운영, CRADA, SPP, MOU 등 국제공동연구는 미국 국익, DOE 정책 목표, 기술안보, 외교 전략과의 정합성 기반으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mp;T Risk Matrix ('22.12.17.)</li> <li>DOE P 485.1A (Foreign Engagements)</li> <li>DOE O 483.1B (CRADA)</li> <li>DOE O 481.1E (SPP)</li> </ul>

» 본고는 이러한 DOE 연구보안의 접근 세 가지 특성 및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구자 및 기관이 DOE와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본 7개 연구보안 규정은 DOE 및 산하 국립연구소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사항으로, 실제 국제공동연구시 적용되는 연구보안 규정 및 관리 수준은 각 연구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참고** DOE 연구보안 규정이 적용되는 협력 유형

- 국제공동연구 유형 중 일반형\*, 공동기관형\*\*은 상당수 CRADA 체결을 요구하나, 별도과제형(Joint Call)\*\*\*의 경우 CRADA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후술할 연구보안 규정은 CRADA 등을 공식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임에 유의**

\* (일반형)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연구비는 국내 연구기관이 관리하며, 해외 연구자는 연구 협력자로 참여. 연구협약 및 계약 없이 논문 공동 집필, 공동 실험 등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예 : 국내 대학이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여 신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

\*\* (공동기관형) 해외 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비 일부를 직접 수령.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며, 연구성과를 공동 소유. 연구비 집행이 국내외에서 각각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식 협약이 체결됨 (예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국내 연구소와 해외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 (별도과제형) 연구내용은 연계되어 있지만, 연구비 집행 및 연구계획 수립은 각국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 연구비 지원 기관이 국가별로 다르며, 연구결과 공유 방식도 사전에 정의됨 (예 :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 수행 후 연구성과 공유)

**(참고) DOE의 기타 연구보안 관련 규정 및 법령**

※ DOE 연구보안 페이지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연구보안 관련성이 있는 규정 및 법령

• **에너지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 DOE O 205.1D, Department of Energy Cybersecurity Program

- (휴대용 전자기기 보안) 해외 이동(foreign travel) 관련, 승인된 이동 범위 내 민감국가를 방문하는 직원에 대한 출국 전 브리핑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브리핑은 정부지급장비 보관 및 연결에 대한 지침과 분실 장치보고 절차를 제공

• **개인 보안** : DOE O 472.2A, Personnel Security

- (비공식 해외이동 보고) 보안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와 보안 허가/접근 권한을 보유하거나 국가 안보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은 비공식(개인적) 해외이동 전 계획을 해당 인적보안국에 보고해야하며, 특히 민감 국가로 가는 경우, 이동 전 로컬 방첩조직으로부터 적절한 방어적 방첩 브리핑을 받아야 하며, 민감국가 이동일정 변경(deviation) 시 귀국 즉시(근무일 5일 이내) 보고해야함
- (기타 보고 정보) 직계 가족이 민감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사건발생(occurrence)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해당 인적보안국에 서면 보고

• **방첩 프로그램** : DOE O 475.1, Counterintelligence Program

- (방첩(CI) 프로그램 평가) CI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대상 중 하나로, 민감국가 인력들과 전문적, 개인적, 지속적인, 또는 재정적 접촉이 있는 개인들의 CI 브리핑과 보고를 통해 수집, 평가, 기록, 보고된 데이터의 품질 평가
- (신원 확인) 테러리스트 또는 민감국가 인력, 민감주제, 보안구역 방문 관련 미분류(unclassified) 외국인 방문·임무 배치는 접근일 30일 전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야 함
- (이해관계자 책무) △민감국가 인력과 민감주제에 대해 논의 예정 또는 논의한 적이 있는 국가로 공식 방문하는 DOE 직원에 대한 CI 브리핑/보고(회의, 우연한 만남 등 포함), △민감국가 소속(affiliated) 인력과의 전문적/개인적/지속적/재정적 관계 보고, △민감국가 인력과 전문적 접촉 및 관계(발생지 무관) 보고, △외국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이동(민감국가, 비민감국가 포함) 보고 등을 위한 방첩국(OCI) 국장, DOE/ NNSA 현장·연구소·시설관리자, DOE 연방직원 등의 의무 명시

• **50 U.S. Code § 2652 – Restrictions on access to national security laboratories by foreign visitors from sensitive countries**

※ 미국 연방 법률

- DOE 장관/핵안보 청장은 민감국가의 시민/대리인에 대해 배경조사를 먼저 완료하지 않는 한, 국가안보연구소\*, 핵무기생산시설\*\*, 미 해군함정 핵추진 관련 기술·물질의 보호·개발·유지·처분을 직접 지원하는 부지로의 접근을 제한

\* (국가안보연구소) LANL, SNL, LLNL

\*\* (핵무기생산시설) The Kansas City National Security Campus, The Pantex Plant, The Y-12 National Security Complex, The Savannah River Site, The Nevada National Security Site

• 특히, 지정국가(covered foreign nation)\*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해서는 시설 접근 전 30일 이전에 의회에 국가 안보 이익 부합, 기밀·제한 데이터 미공개 등을 증명하는 면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출입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25.4.15 발효)

\* 50 USC § 3059(e)(1)에 근거

## 1 개인 기반 관리

### 관련 DOE 규정

- **외국 정부 후원 또는 제휴 활동** : DOE O 486.1A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 ('20.9.4.)
- **비밀이 아닌 외국인 접근 프로그램** : DOE O 142.3B (Unclassified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21.1.15.)
- **공식 외국 출장** : DOE O 550.1 Chg 1 : Official Travel ('19.5.2.)

#### 1) 위험국가 관련 외국 정부 연계 활동에 대한 통제

※ (관련 규정) DOE O 486.1A

- (FGTRP 금지) DOE 직원(Employee) 및 Contractor Personnel<sup>\*</sup>의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와 관련된 인재 유치 프로그램(FGTRP : Foreign Government-Sponsored Talent Recruitment Program)에 대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Contractor Personnel) CRADA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도 포함됨

※ 위험국가 목록은 DOE 홈페이지 (<https://www.energy.gov/science/countries-risk>)에 명시되어 있으며, 변동 가능.  
'25년 5월 기준 위험국가 목록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벨라루스임

- (기타 외국 정부 연계 활동 제한) DOE 직원(Employee) 및 Contractor Employee<sup>\*</sup>는 위험국가 관련 기타 외국 정부 연계 활동(Other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의 경우, DOE 장관 또는 고위 승인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서만 참여 가능

\* (Contractor Employee) DOE와 고용 관계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국내 기관에 소속되어 CRADA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포함되지 않음

- 외국정부 자금 수령, 외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자문, 겸직, 외국정부 주도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해당
- 외형상 민간 활동이라 해도 자금 출처, 결정 구조, 조직 소속성 등을 통해 외국 정부 연계성이 확인되면 본 조항 적용 대상이 됨

- 이러한 활동은 DOE 본부 윤리책임자(DAEO) 또는 계약책임자가 판단하여 승인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사전 보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협력 중단 및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참고** 본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 (적용 대상) DOE O 486.1A, 제1절(Purpose)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FGTRP 금지) DOE 직원 및 Contractor Personnel은 FGTRP 금지 대상인데, 이 중 **Contractor Personnel은 CRADA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도 포함 가능**
    - (Contractor Personnel) DOE O 486.1A, Attachment 2, 4.c.에 따르면, “CRADA, SPP, ACT 범위 내에서 DOE/NNSA 사이트 또는 임대공간에서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R&D를 수행하는 개인”인 연구자는 “Contractor Personnel”로 간주되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임
    - (Contractor Personnel 예외 조항) DOE O 486.1A, 3. c. 및 Attachment 2의 4. Contractor Personnel 조항 중 예외 조항(d항)에 따르면 ①DOE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② DOE 차원 또는 미국 정부 차원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의 범위 내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의 면제 대상임
  - ※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소속 연구기관 내 계약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거나 DOE 산하 국립연구소 등 협력 상대 기관 측에 문의 권장
  - (기타 외국 정부 연계 활동 제한) DOE 직원 및 Contractor Employee로 **일반적으로 DOE와 고용 관계가 있는 직원에 한정되며, CRADA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는 제외됨**
    - (Contractor Employee) DOE와 CRD(Contractor Requirements Documents)가 포함된 계약 하에서 고용된 계약자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DOE와 고용 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
  -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CRADA 체결은 DOE O 483.1B(CRADA)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해당 규정에 FGTRP 관련 직접 언급은 **없으므로**, DOE나 산하 국립연구소로부터 FGTRP 관련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 CRADA 체결 시 DOE O 483.1B 규정에 따라 **외국 소유·지배·영향 여부(FOCI)** 심사를 실시함
    - 그러나, **DOE O 486.1A** 규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Contractor Personnel)에게도 FGTRP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 필요
    - 따라서 CRADA 체결 시 DOE 또는 산하 국립연구소 측에서 FGTRP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2) 외국인 신원 조사 및 DOE 자산 등 접근 통제

※ (관련 규정) DOE O 142.3B

- 미국 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DOE 시설,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 명시
- 한국을 포함한 모든 **비 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는 DOE와의 협력 또는 방문 시 다음 서류 제출 및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표 3 | DOE O 142.3B에 따른 주요 요구 사항

항목	내용
Access Requ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 필수. FACTS 시스템에 등록 필요</li> </ul>
이력서(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후 모든 경력·학력 포함. 10년 간 공백 없어야 함</li> </ul>
민감 주제(Sensitive Sub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된 민감 기술 분야는 추가 심사 대상</li> </ul>
이민/비자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며, 기간은 협력 기간과 일치해야 함</li> </ul>
국가 위험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untries of Risk” (위험 국가) 소속자는 제한 기술 접근 금지 또는 면제 필요</li> </ul>
테러지원국 출신자(S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ST 국적자는 특별 승인 필요 (DOE 장관급 결정)</li> </ul>
신원 조사(Indices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협력 유형은 사전 CI(정보기관) 검토 필수</li> </ul>
동반자 및 호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DOE 직원 또는 승인된 계약자가 호스트로 지정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 충족 필요</li> </ul>

- **위험국가** 국적자 또는 기관이 **Red 등급 기술**에 접근할 경우 DOE 본부 및 현장 차원의 심사 및 승인 강화

※ (면제 요청 절차) ①DOE 현장 책임자가 승인 의향 여부 확인 → ②면제 사유 및 미국 국익 관련성 서술 → ③PSO, CSO, FOAB 검토 후 Under Secretary 최종 승인 → ④정보기관(IN)의 강화된 배경 심사 필수 (최소 45일 소요)

#### 참고 본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면제 요건

- **(적용 대상)** DOE O 142.3B, 제3절(Applicability) 및 Attachment 1 – CRD에 따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DOE 본부 및 소속 부서)** DOE 본부, 각 본부 부서, 현장 부서, CSOs(Cognizant Secretarial Officers), PSOs(Program Secretarial Officers), Under Secretaries including Science/Energy/Nuclear Security
    - **(NNSA)** NNSA 소속 부서 및 직원
    - **(DOE/NNSA 계약자)** DOE/NNSA가 소유·임대한 장소(site), 정보 또는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계약에 포함하는 계약자
      - DOE O 142.3B Attachment 1 – CRD, Section 4.a에 따르면 Hosting Site는 계약자가 운영하는 국립연구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may include) 명시
    - **(하도급자)** 모든 계약자의 하도급자(Subcontractor)
    - **(외국인)** DOE/NNSA 장소, 정보, 기술에 접근하려는 모든 외국인
      - 협력 유형과 무관하게 DOE/NNSA 장소, 정보, 기술에 접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
  - **(면제 요건)** DOE O 142.3B, 제3절(Applicability) c항(Equivalencies/Exemptions for DOE O 142.3B)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면제 대상으로 별도 승인 없이 접근 가능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 미국 국적 병행 보유자 (dual citizen with U.S.), 공개된 정보만 접근하는 경우, DOE가 참여하는 공식 국제협력 프로젝트 참여자, 공개 행사, 일반접근구역(General Access Areas, GAA) 내에서의 비업무 목적 방문 (개인 친지 방문 등) 등 특정 활동, 비상시 접근이 필요한 외국의 비상 대응인력 및 의료 인력, 미성년자 외국인(만 17세 이하), IAEA 공식 사찰단
- ※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 시 본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면제 요건 등 보안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유의

### 3) DOE 직원의 우리나라 출장 시 유의사항

※ (관련 규정) DOE O 550.1 Chg 1 : Official Travel ('19.5.2.)

※ (참고) DOE 출장 규정은 우리나라가 아닌 DOE 관계자가 준수하는 사항이며, 특히 DOE 산하 국립연구소별로 출장 규정 및 관리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측에서 DOE 및 국립연구소 관계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 또는 요청을 할 필요는 없음을 유의

- DOE 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국가로 출장하거나 외국 기관과 협력 활동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DOE 공식 출장 승인 체계인 FTMS(Foreign Travel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장 내용에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방문 또는 민감 주제(Sensitive Subject)와 관련된 활동(예 : 발표, 협의 등)이 포함될 경우 :

- DOE 정보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IN)의 사전 방첩 브리핑을 필수로 요구하며, 사후 보고 절차 역시 요구될 수 있음
- 사용 예정 자료(발표 슬라이드, 논문 초안 등)가 있는 경우, 파견 전 보안 검토 또는 분류 여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출장 목적, 방문 기관, 접촉 대상자, 협력 주제 등은 FTMS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변경 시 간신 필요

#### 참고 본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면제 요건

- (적용 대상) DOE O 550.1, 제3절(Applicability) a항 및 b항에 따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DOE 부서 전체(All DOE elements)
- NNSA
- DOE 계약자 (DOE와 체결한 site/facility management contract에 Attachment 1에 명시된 Contractor Requirements Document가 포함된 경우\*)

\* 우리나라 기관이 DOE와 체결한 CRADA는 일반적으로 site/facility management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CRD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당해 기관 및 소속 연구자는 DOE O 550.1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DOE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DOE가 개별 협약(CRADA) 체결 시 별도의 계약 조건을 통해 본 지침상의 일부 요건(예: FTMS 등록, 여권 요건, 사전 승인 절차 등)을 협력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 의무로서 이행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별 CRADA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면제 요건) DOE O 550.1, 제3절(Applicability) c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면제 대상임

- 보조금 수혜자(Grantees)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 해군 원자로 프로그램(Naval Reactors)

※ DOE O 550.1에 명시된 출장 규정은 DOE 및 산하 국립연구소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임

※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 시 본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면제 요건 등 보안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유의

**Tip!****DOE와 CRADA를 통해 협력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개인 신원 및 외국 연계 활동의 선제적 식별·통제 관련 유의사항 〉****1. CRADA 체결 시 DOE 또는 산하 국립연구소 측에서 FGTRP 관련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

- CRADA 규정에 FGTRP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으므로 실제 CRADA 체결 시 FGTRP 이력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DOE O 486.1A 규정에 의거하여 FGTRP 이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

**✓ Tip |** DOE 또는 산하 국립연구소 측에서 FGTRP 참여 이력을 요청할 경우, 연구자들의 관련 이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

**2. CRADA 등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DOE 시설 또는 정보 접근 시에는 반드시 “호스트(Host)” 지정 필요**

※ (참고) DOE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일반적 협력 시에도 DOE 시설 또는 정보 접근 시 호스트 지정 필요

- 우리나라 연구자가 DOE 연구소 또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DOE 소속의 직원 또는 승인된 계약자가 반드시 호스트로 지정되어야 함
  - 호스트는 ①방문 목적 및 신원 확인, ②사전 위험도 평가 요청, ③현장 동행 및 정보 접근 통제를 책임
- ✓ Tip |** 협력할 DOE 파트너(연구자 등)가 방문 신청을 도와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호스트 지정 요청

**3. 이력서(CV) 및 개인 정보 제출 요건 유의**

- DOE 방문 신청 시, 요청받은 사항에 부합하는 이력서 제출 필요

※ 개별 국립연구소에 따라 정보 제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 제출 필요

**✓ Tip |** CV는 DOE 포맷 요구사항에 맞춰 사전 작성하고, 비자 정보도 포함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를 권장

**4. Red 기술 접근 시 “면제 절차(waiver)” 필요 가능성**

- 한국은 위험 국가에는 속하지 않지만, 접근하고자 하는 기술이 DOE의 S&T Risk Matrix 상 Red 기술이라면 면제 절차 필요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

**✓ Tip |** 협력 주제가 Red 기술에 해당되는지 DOE 파트너와 함께 사전 검토 및 면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필요시 관련 절차 절차에 맞춰 진행 권장

**5. DOE 출장 규정은 우리나라가 아닌 DOE 관계자가 준수하는 사항임을 유의**

- 민감주제 또는 민감국가, 발표자료 및 기술자료 사전 검토 등 DOE 출장 규정은 우리나라가 아닌 DOE 관계자가 준수하는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측에서 DOE 및 국립연구소 관계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안내 또는 요청을 할 필요는 없음을 유의

- 특히, DOE 산하 국립연구소별로 세부 출장 규정 및 관리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 Tip |** 관련 내용을 인지만 하되, 필요시 증빙 등을 위한 요청이 올 경우 협조

## 그래도 궁금해요!

## DOE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참고) 관련 상세 규정 및 연구보안 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

| 표 4 | DOE O 486.1A 및 DOE O 142.3B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과거 위험국가의 FGTRP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DOE와 CRADA를 체결하여 협력할 수 있나요?	CRADA 규정에 FGTRP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으므로 CRADA 체결 시 FGTRP 이력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 FOCI(외국 영향력) 심사를 거치지만, DOE O 486.1A 규정에 의거하여 FGTRP 이력을 요구할 가능성 존재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서 FGTRP 관련 정보 요청을 할 경우, 연구자들의 관련 이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
DOE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DOE 시설에 접근하려면 FACTS에 신원 등록 및 호스트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FACTS 신원 등록은 DOE 담당자가 수행 ※ 구체적 절차는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장기 체류의 경우 FNAP(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등록 양식을 연구자에게 기입 요청하기도 함	DOE 또는 국립연구소 파트너(예: 국립연구소 PI 등)에게 방문 요청 후 안내받은 절차(예: FNAP 등)를 통해 해당 연구소 담당 직원이 방문자의 신원을 FACTS 등록 및 호스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체적 절차는 개별 국립연구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DOE와 협력하려면 사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이력서, 방문 목적 설명서, 체류 신분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제출	DOE 또는 국립연구소 기준에 맞춘 이력서 및 방문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 시점도 미리 확인
DOE 또는 국립연구소 방문 시 미국 호스트가 꼭 필요하나요?	DOE 또는 국립연구소 호스트가 외국인을 초청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수로 요구	신원이 보장된 DOE 또는 국립연구소 직원 등 명확한 호스트 사전 확보 필요
DOE와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미국 체류를 하려면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미국 내 체류를 수반할 경우 유효한 비자와 체류 신분 증명이 반드시 필요	방문 또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F, J, B 등)를 확인하고 사전 신청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할 경우 승인받을 수 있나요?	원칙상 방문 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DOE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보류할 수 있음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 시 설명서를 첨부
SST(테러지원국) 국적자와 함께 협력하면 문제가 되나요?	SST 국적자와의 공동연구 또는 동반 시 DOE HQ 및 정보기관의 특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력자가 SST 국적자인 경우 DOE에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검토를 요청

## 2 사업·기술 기반 관리

### 관련 DOE 규정

- **과학기술 위험 분류 매트릭스** : Science & Technology (S&T) Risk Matrix ('22.12.17.)
- **국립연구소의 외국기관과의 협력지침** : DOE P 485.1A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2022.10.7.)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 DOE O 483.1B Chg 2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2020.10.21.)
-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 DOE O 481.1E Chg 1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2022.3.4.)

### 1) 신흥기술의 위험 등급 분류 및 별도 보안관리 조치

※ (관련 규정) **Science & Technology (S&T) Risk Matrix**

- DOE는 기존의 수출통제나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신흥기술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S&T Risk Matrix를 운용
- 이 매트릭스는 기존 수출통제 제도(ITAR, EAR)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까지 포함하여, **3단계 등급(Red, Yellow, Green)으로 민감도를 구분함**

| 표 5 | Red, Yellow, Green 기술등급 정의 및 조치

등급	정의	조치
Red	미국의 경제적 또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적절한 심사와 승인 없이 '위험국가 (Country of Risk)'에 공유될 경우,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신흥 기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기술(restricted)"로 분류</li> <li>• 위험국가 소속자 또는 기관의 접근은 DOE 본부(HQ) 및 현장 기관(field)의 강화된 심사 및 사전 승인을 필수로 요구</li> </ul>
Yellow	경제적 또는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향후 Red(제한 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강화된 주의가 요구되는 신흥 기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된 모니터링 필요</li> <li>• 위험국가 또는 외국인의 접근 시, 조건부 승인 또는 면제 절차 적용 가능성 있음</li> </ul>
Green	경제적 또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특별한 민감성이 없는 신흥 기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제한 없음</li> <li>•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가능</li> </ul>

#### ① Red

- **경제적·국제적 경쟁력과 관련된 민감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술이 적절한 심사 및 승인 없이 위험국가 (Country of Risk)에 공유될 경우,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신흥 기술 주제**
- 이러한 Red 주제들은 다양한 DOE 명령(DOE Orders)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위험국 또는 그 소속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강화된 심사 및 통제를 적용받는 "제한 기술(restricted)"로 간주됨
- Red 기술에 접근하려는 위험국가 소속 개인 또는 기관은 DOE 본부(HQ) 및 현장 기관(Field) 양측에서 강화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 DOE 산하 연구소는 다음을 포함하는 **접근관리계획(Access Management Plan)**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정기적 감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1. 제한으로 분류된 연구의 세부 설명
2. 책임 있는 주요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3. DOE O 471.7(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CUI)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제한 기술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행정적 접근 통제 절차
4.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조치 및 공개 또는 출판 전에 관련자에게 적절히 통지하는 절차
5. 미국 내에서라도 Export License 없이 정보 공유 불가 (Deemed Export)
6. DOE O 241.1B는 과학기술정보(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STI)를 적절히 식별·분류·배포·보존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이의 세부 요구사항은 계약자 요구문서(CRD)에 명시되어 있음. 각 연구소는 CRD에 따라 자체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에는 제한 기술 주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② Yellow

- 경제적·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향후 Red(제한 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강화된 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는 신흥 기술 주제를 의미
- Yellow 기술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가능 :
  1. Yellow 등급 기술 주제는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2. Yellow 주제는 일종의 “관심 목록(watch list)”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연구소는 Yellow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3. 기술 분야에 따라 Yellow 기술은 명확한 기술적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고, 또는 기술/보안 분야 전문가 (SME)의 판단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4. 연구소는 필요 시 Red 등급 기술에 요구되는 접근관리계획(Access Management Plan)의 요소를 참고하여 Yellow 등급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5. 가능하면 기존의 보호조치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통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6. Yellow 주제의 경우, 위험국(Country of Risk) 출신 인물과의 정보 공유나 공동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 및 관리자에게 별도의 교육 또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coaching/awareness training)이 요구될 수 있음

## ③ Green

- 경제적 및/또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특별한 민감성이 없는 신흥 기술 주제를 의미함.
- 기초 과학 연구나 기술 성숙도 수준(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이 낮은 기술은 일반적으로 Green 등급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 Green 등급 기술은 기준에 마련된 통제체계 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현재 운용 중인 관리 체계에 따라 처리됨

## 2) DOE 및 산하 국립연구소의 외국기관과의 협력 지침

※ (관련 규정) 외국기관과의 협력지침 : DOE P 485.1A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2022.10.7.)

- (검토 사항) DOE는 외국 기관과의 협력이 DOE 및 연구소의 미션과 정합되고, 연구소의 주요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며, 외국 기관과의 협력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 미국의 전략적 이익 및 외교 정책과의 일치 여부
  - 미국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예 : ITAR, EAR, 10 CFR Part 810 등)
  - 국가정보 및 안보 관련 고려사항 반영 여부
  - DOE 연구 및 기술 공유에 따른 리스크 평가 포함 여부
- **(검토 대상 협력)** 이러한 검토 범위는 ①양해각서(MOU) 및 유사 문서 (LOI, Statement of Intent 등), ②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구 Work for Others), ③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④기술상용화 협정(ACT), ⑤기타 외국 기관과의 계약적 법적 문서 등에 적용
- ※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은 **후술할 별도의 규정 운영 중**
- **(검토 절차)** 모든 협력안은 **DOE 본부 차원의 사전 검토\***를 거치며, 모든 MOU 및 계약 문서는 **최소 5년마다 본부에서 재검토하여 정책 및 국가안보 기준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유의
- \* CSO (Cognizant Secretarial Office), PSO (Program Secretarial Office), DOE 국제협력국(IA), 법무실(GC), 정보보안/국가정보국(IN), 비확산 담당 부서(NA-20), 분류정보 담당 부서(AU-60, 필요시)의 검토 수행
- **(제한 사항)** S&T Risk Matrix에서 제한(restricted) 기술로 지정된 분야(예 : Red 기술)에 대해,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와의 협력은 사전 면제\*가 없는 한 금지됨.
- \* 면제 요청은 현장 책임 부서(Field Element)가 연구소와 협의하여 제출 가능하며, FOAB(Federal Oversight Advisory Body)의 검토를 거쳐 관련 차관(Under Secretary)의 최종 승인 필요

### 3)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체결 시 외국기관 참여 요건

※ (관련 규정) DOE O 483.1B Chg 2

- **(승인 요건)** DOE는 외국 기관과의 CRADA 체결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필요
- DOE의 프로그램 및 시설 미션과 일치해야 하며, 민간 참여자는 단순 자금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 기술 협력에 기여해야 함
  - 미국 내 기술 활용 우선 조건(U.S. Competitiveness Clause)을 충족해야 함
  - 수출통제, 기밀정보, 지식재산권(IP) 관련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간 보호 가능
  - 참여기관이 외국 소유·지배·영향(FOCI)을 받는 경우, FOCI 검토를 통과해야 함
- **(승인 관련 조치)** 외국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DOE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
- 자금 출처 확인 (미국 정부 자금일 경우 특별 검토)
  - 지식재산권(IP) 권리 명확화
  - DOE 및 계약기관이 CRADA 참여자의 FOCI(외국 소유·지배·영향 여부) 검토 가능
- **(승인 관련 추가 절차)** 해당 협력이 위험국가 소속 외국 기관과의 협력이거나, S&T Risk Matrix 상의 제한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 DOE 현장(Field Element)은 사전 심사를 통해 Red 기술 여부를 검토.
  - Red 기술로 확인되면, 면제 요청서(exemption request)를 작성하여 CSO, PSO, FOAB를 거쳐 Under Secretary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4)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SPP) 승인 요건

※ (관련 규정)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DOE O 481.1E Chg 1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SPP)

- **(정의)** DOE 또는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국립핵안보청) 시설이 외부 기관(미국 내·외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자금을 받아 연구·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DOE 예산이 아닌 외부 자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기술 프로젝트
- **(목적)**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기술/시설 활용 제공, DOE 기술의 산업 이전 및 상업화 촉진, DOE/NNSA 연구소의 기술 기반 강화, 정부기관 간 협력 또는 민간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 **(SPP 승인 요건)** SPP 체결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협력 과제는 DOE 또는 NNSA의 미션과 일치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소의 **기준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SPP는 **미국 민간 부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됨**
  - 과도한 리소스 소모 또는 **미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모든 DOE 지침, 보안, 수출통제,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위험국가는** 제안된 기술이 S&T Risk Matrix상 Red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FOAB의 심사 및 DOE Under Secretary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S&T Risk Matrix 기술 분류 예시 ('22.12.17. 분류 기준)

###### ① 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양자정보과학기술)

※ 아래 기술들은 기밀정보, 수출통제, NDA(비공개 계약) 등에 의해 이미 보호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개 전에는 개별 사례별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1) 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Computing and Simulation)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SQ 이후 시대를 위한 고정밀 큐비트 기술 개발</li> <li>• 고대역폭 및 극저온 제어 기술</li> <li>• 오류 완화 기술 및 로직 큐비트 개발</li> <li>• 오류 수정 코드 부분 실행 실험</li> <li>• 50~100 큐비트 실험 장치</li> <li>• 4.2K 이하에서 장시간 동작 가능한 대형 냉동기</li> <li>• 향후 양자컴퓨팅 기술 구현 로드맵 작성</li> <li>• 오류 수정 없이는 결함 허용 불가한 큐비트 시연</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역학과 정보이론의 기초 원리 탐구</li> <li>• 새로운 큐비트 기술 개념</li> <li>• 환경이 큐비트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li>• 고대역폭 제어용 실온 전자장치</li> <li>• 양자 무작위 수 생성기 개발</li> <li>• 디지털/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션</li> <li>• 화학/물리/AI용 양자 알고리즘 개발</li> <li>• NISQ 장치 운영용 소프트웨어</li> <li>• 아키텍처 중립적 오류 수정 기초연구</li> </ul>

## (2) 센싱, 시계, 계측 (Sensing, Clocks, and Metrolog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얽힘 광자 기반 원거리 이미징 기술</li> <li>정확도 <math>ps/day</math>를 초과하는 양자 시계 개발</li> <li>100m 오차 수준의 양자 항법 시스템</li> <li>현장 적용 가능한 양자 센서용 시스템 구성요소 개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연구 목적의 일반적인 양자 센싱</li> <li>원자 시계 및 네트워크 시계에 대한 연구</li> <li>양자 기반 고해상도 실험용 현미경</li> </ul>

## (3) 통신 (Communication)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용적 속도로 얹힘 전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기술</li> <li>양자 키 분배 외의 양자 사이버보안 기술</li> <li>양자 반복기를 활용한 오류 수정 기반 양자 통신 실험</li> <li>다자간 또는 다노드 얹힘 전송 시연</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 네트워크 기본 구성요소 개발 (단일/얽힘 광자 소스, 검출기, 양자 메모리 등)</li> <li>양자 반복기(Quantum Repeater) 기초연구</li> <li>기초과학 또는 센싱 응용 목적의 양자 네트워크 사례 연구</li> </ul>

## (4) 재료 및 제작 (Materials and Fabrication)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 제어 없이 큐비트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실험 기술</li> <li>QIST에 관련된 재료에 대한 동위원소 농축 기술 개발</li> <li>양자 디바이스 성능 예측용 재료 모델링 기술</li> <li>마요라나 모드 조작이 가능한 위상 양자재료 연구</li> <li>양자컴퓨터용 농축 안정 동위원소 연구</li> <li>미세한 공정 기술 요소 개발 (원자 트랩, 리소그래피 등)</li> <li>NISQ 이후 시대를 위한 신소재 기반 양자 디바이스 평가 기술</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리켈빈 온도에서 양자재료/큐비트 재료 연구</li> <li>2차원 위상재료·그래핀 나노리본 등 양자 디바이스용 재료 탐색</li> <li>양자재료의 속성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실험 기술 개발</li> </ul>

## ② 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컴퓨팅)

※ 주의 : HPC 기술이 다른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경우,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HPC 자체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이미 기밀, 수출통제, NDA(비공개 계약) 하에 보호되고 있는 정보는 아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 공개 또는 활용 전 사례별로 규제 준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 (1) HPC 시스템 R&amp;D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까지 식별된 항목 없음 (다만 일부는 수출통제 또는 기밀로 보호 중)</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시스템과 무관한 일반 R&amp;D</li> <li>(예 : 복원력, 에너지 효율 관련 시스템 관리 연구, 시스템 상태 감시 및 성능 네트워크와 런타임 소프트웨어 통합 연구 등)</li> </ul>

## (2) 벤더 하드웨어 구성요소(공동 설계 포함)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동설계 제안 사항</li> <li>제품 설계 반영 전의 공동설계 제안</li> </ul> <p>※ 사전 공개되지 않은 성능 데이터는 NDA로 보호되어야 함</p>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DA에 해당하지 않는 사후 공개된 설계 정보</li> <li>공개된 프로세서 아키텍처(ISA), 성능 특성</li> <li>메모리/저장장치 성능, 인터페이스</li> <li>사용자 수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li> </ul>

## (3) HPC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술에 대한 연구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전이지만 설계도를 통해 복제 가능한 상세 설계</li> <li>DOE 또는 미 정부 활용 가치가 있어 특히 전 단계의 기술</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PC 시스템 또는 센서의 개념 설계</li> <li>이와 관련된 예측, 모델링, 분석 등</li> <li>특허로 등록된 연구소 기술 성과</li> </ul>

## (4) HPC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까지 식별된 항목 없음 (단, 일부는 보호 조치 중)</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소가 개발한 범용 시스템 소프트웨어</li> <li>연구소가 사용하거나 수정한 오픈소스 시스템 소프트웨어</li> </ul>

## (5) HPC 응용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통제, 기밀, 지식재산권, 타 기술 분야 또는 타 통제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모듈</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li> </ul>

## ③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Intelligence (기계학습 / 인공지능)

※ 아래 내용은 이미 기밀 지정, 수출통제, 비공개 계약(NDA) 등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 정보 공개 전에는 사례별로 해당 규제와의 관련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 (1) 기초 알고리즘 및 기초 연구 (Foundational Algorithms and Basic Research)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ellow 등급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결과물은 자동으로 Yellow로 간주됨 (데이터가 Yellow → 결과도 Yellow)</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L 알고리즘 및 방법론에 대한 기초 연구</li> <li>시뮬레이션과 머신러닝 결합 방법 연구</li> </ul>

## (2) 제어 시스템 관련 연구 (Control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격리와 중요 인프라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보안 다중 계층 제어 시스템</li> <li>NIST/FISMA 기준을 적용한 기술·관리 통제 조치</li> <li>연례 감사 및 테스트 대상 보안 시스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ML을 활용한 제어 시스템의 기초 연구</li> </ul>

## (3) 사회 응용 분야 (Societal Application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체인식(Biometrics) 또는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을 포함한 응용</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한 ML/AI 기술</li> <li>보건 응용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설계</li> <li>- 질병 탐지 및 분류</li> <li>- 치료/개입/개인맞춤 의학</li> <li>- 프라이버시 기초 연구</li> </ul> </li> </ul>

## (4) 국가안보 응용 (National Securit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 보안용 AI/ML 기술 (공격 은폐용 정상 활동 모방 등)</li> <li>역AI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기의 적대적 입력 탐지</li> <li>- 학습데이터 특성 추론용 역공학 기법</li> <li>- 모델 보호 또는 악용 기법</li> </ul> </li> <li>학습 데이터 조작, 결정경계 왜곡 기법</li> <li>문서 분류 자동화</li> <li>생성형 AI를 통한 콘텐츠 생성 및 검토 기술 (Red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지(edge) 환경에서의 ML 알고리즘 보안 연구</li> </ul>

## (5) 에너지 분야 응용 (Energ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까지 보호 조치 외에 별도로 식별된 Yellow 항목 없음</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형 에너지 시스템</li> <li>분자 설계</li> <li>에너지 예측용 알고리즘 개발</li> <li>지하 시스템 거동 분석</li> <li>자동 특성 식별 및 고해상도 데이터 생성/활용 기법</li> </ul>

#### ④ Battery Science & Technology (배터리 과학기술)

※ 아래 항목에는 이미 기밀, 수출통제, NDA(비공개 계약) 등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보의 공개 또는 활용 전에 사례별로 적절한 규제와의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항상 Green으로 간주되는 항목

- 분석/진단/측정 기법 및 해당 도구의 연구 개발
- 기초 연구 수준의 시뮬레이션/계산 도구
- 신규 소재 고속 탐색(high throughput discovery)
- 기초 수준의 반응 메커니즘, 구조-물성 관계 연구

##### (1) 양극(Cathode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200mAh/g 이상 용량 또는 2.0~4.5V 동작 가능성이 있는 상용 양극재의 수정·분석
Green	상용 양극재의 열화/고장 메커니즘 분석

##### (2) 음극(Anode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용량이 1000mAh/cm <sup>3</sup> 이상인 상용 음극재의 수정·분석
Green	상용 음극재의 열화/고장 메커니즘 분석

##### (3) 리튬(Lithium)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스트리핑·도금 안정화 및 고체전해질 계면 안정화 연구
Green	Li 금속 음극 관련 기초 고장 메커니즘 이해

##### (4) 고체 전해질

등급	예시 기술
Yellow	계면 안정화 기술 개발 및 수정 연구
Green	기존 고체전해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분석

##### (5) 충전 속도

등급	예시 기술
Yellow	10분 이내 2.5mAh/cm <sup>2</sup> 이상 수용 가능한 빠른 충전 기술
Green	고속 충전이 셀 성능·수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6) 에너지 저장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설치비 \$200/kWh 이하 달성 가능한 고정형 저장 기술 또는 제조비 \$80/kWh 이하 달성 기술
Green	개념 단계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

## (7) 재활용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정제 없이 양극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 가능한 재활용 제품 생성 방식
Green	배터리 등급 미만의 금속 회수 방식

## (8) 열폭주(Thermal Runawa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열폭주 상황(과전압, 온도상승 등)에서도 셀 간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Green	개념 수준의 열폭주 대응 시스템

## (9) 수명(Lifetime)

등급	예시 기술
Yellow	실험 데이터 없이도 특정 열화 메커니즘을 분류할 수 있는 범용 추정 방식, ML 기반 소재 탐색 초기 연구 포함
Green	셀 설계 없이 상용 셀 대상 단순 열화 추정 방식

## (10) 기술경제성(Technoeconomic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현재까지는 별도로 식별된 Yellow 항목 없음
Green	에너지 저장 구성품·시스템에 대한 생애주기 및 경제성 평가

## ⑤ Bioscience &amp; Biotechnology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 기밀정보, 수출통제정보, 비공개 계약정보(NDA) 등은 제외하며, 정보 공개·배포 전 별도 검토 필요

## (1)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용 상업화 최적화</li> <li>민감국가에서 입수 불가능한 장비 또는 시약</li> <li>유전체 크기 증가, 바이러스 전달효율 향상 등 전략 기술 발전이 포함된 경우</li> <li>합성 바이러스 부활(rescue), 유전자 구동 기술 등</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nBank, DIVA 등 공개 DNA/단백질 정보 DB 사용</li> <li>비병원성 균주에 대한 기초연구 목적의 유전자 조작</li> <li>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dCas9 등 기초도구 사용</li> </ul>

(2) 오믹스 및 자동화 기술 (Omics & Automation Technologie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장 유전체 시퀀싱 센터 보호 대책 개발</li> <li>오믹스 자동화 장비의 오용 방지 시스템</li> <li>국방/정보목적의 실시간 측정 가능한 오믹스 장비</li> <li>인간개입 없이 생체샘플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기술 기반 기초 연구</li> <li>복수의 분석장비를 조합한 표준 연구</li> <li>단일 오믹스 측정 또는 메커니즘 분석용</li> </ul>

(3) 데이터 및 고급 계산생물학 (Data & Advanced Computational Biology)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상무부 수출통제목록 대상 생물정보 DB 가공</li> <li>클라우드 생물데이터 보안 체계 개발</li> <li>MCM 예측모델용 통제된 데이터셋 활용</li> <li>비공개 유전체 검색 소프트웨어/워크플로우, 생물학적 위협인자 탐지 시스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 데이터 기반 계산생물학 연구</li> <li>기초 메커니즘 규명 목적의 모델링/시뮬레이션</li> </ul>

(4) 바이오제조 및 바이오소재 (Biomanufacturing & Biomaterial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안보 또는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상용화 목적 미생물 경로 최적화</li> <li>희토류 채굴용 유전자 조작 미생물 개발</li> <li>상업 규모의 추출 및 정제 공정</li> <li>다효소반응을 위한 효소 고정화 또는 서브스트레이트 채널링 기술</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적 단백질 발현 시스템 및 배양 기술</li> <li>조직 수준의 공정 및 추출기술</li> <li>공정 시뮬레이션 및 진단 기술</li> </ul>

(5) 농업 및 환경기술 (Agricultural & Environmental Technologie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드시험 기반 전환기술 검증</li> <li>고효율 작물 전환기술의 파일럿 규모 적용</li> <li>바이오에너지작물 처리 기술의 파일럿 개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된 germplasm 기반 유전자-형질 연구</li> <li>마커기반 육종 및 실험실 기반 유전체 분석</li> <li>수직농장,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3D 프린팅 식품 연구 등</li> </ul>

## (6) 생의학 연구 및 기술 (Biomedical Research &amp; Technologies)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체 내 전달 시스템 개발 (예 : 나노소재, 뇌혈관 장벽 통과)</li> <li>혈액 대체물 또는 조직 재생물질의 고기능화</li> <li>신경공학 기술, 뇌파 기반 인터페이스(BCI) 연구</li> <li>산업 수준 의약품 공정 설계 및 최적화</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포 메커니즘, 방사선 반응 등 생물학적 기초 연구</li> <li>바이오이미징, 유전체 분석을 포함한 진단도구 개발</li> <li>AI 기반 임상 최적화 시스템</li> </ul>

## ⑥ Accelerator Science &amp; Technology (가속기 과학기술)

※ 타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에 가속기 기술이 기여할 경우, 해당 분야의 S&T 위험 매트릭스 가이드를 따라 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함

※ 이미 분류(Classification) 또는 수출통제(Export Control), 혹은 공급사 NDA로 보호되는 정보는 본 매트릭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개 전 사안별로 통제 여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함

## (1) 초전도 라디오 주파수(Superconducting Radio Frequency, SRF) 기술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 Q값 또는 고 그라디언트를 가진 크라이오모듈 개발 (예 : 1300 MHz, 50 MV/m 이상 등)</li> <li>산업·의료·안보 응용을 위한 전도 냉각형 SRF 시스템 개발</li> <li>좁은 주파수 대역폭에 맞춘 공명 제어 기술 개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연구용 SRF 가속기 설계 및 활용</li> <li>희귀 동위원소 연구, 중성미자 시설, 미래의 고에너지/핵 물리 콜라이더 등에서 사용 예정인 가속기에 대한 일반적인 SRF 연구</li> <li>나이오븀 표면 처리, 새로운 재료 및 코팅 기술 관련 연구 (특정 프로젝트와 무관할 경우)</li> <li>청정실 조립기술, 공통적 크라이오모듈 설계기술 등</li> <li>4K 이상의 온도에서 전도 냉각되는 SRF 시스템 개발</li> </ul>

## (2) 레이저 및 플라즈마 웨이크필드 가속기 기술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실 단계를 넘은 통합 시스템으로 5년 이내 시장 가능성 있는 경우</li> <li>고에너지 물리 콜라이더, MeV 광자 소스, 자유전자 레이저 등 응용 가능성 높은 시스템</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연구용 플라즈마 가스 밸브, 레이저 이온화 시스템 등 (상용 부품 기반)</li> <li>물리 개념 수준의 입자 주입·빔 제어 기술</li> <li>방사선 진단 기술 개발</li> </ul>

## (3) 초전도 자석 기술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온 초전도체(&gt;10K), 고임계자기장(&gt;15T) 재료 개발</li> <li>12T 이상 고자기장 자석 기술(상업용 응용 전제)</li> <li>비공개 설계도구 및 고급 시뮬레이션 기법</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연구 목적의 자석 설계 및 피드백 분석</li> <li>NbTi 자석 제작기술 개발</li> <li>기초과학용 고자기장 자석 개발</li> </ul>

(4) 극저온 플랜트 설계 및 운영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 (현재는 별도 제한 없음)</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온에서의 재료 물성 연구</li> <li>극저온 장비 최적화 설계</li> </ul>

(5) 첨단 광원 기술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프로젝트 적용을 위한 통합 설계 구현</li> <li>FEL(자유전자 레이저) 최적화용 신형 광전자 음극 개발</li> <li>차세대 초전도 언듈레이터 개발 등</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연구 및 장기 개발 중인 기술</li> <li>초고속 펄스 전자기기, 저장 링 일반 설계, 비선형 광학 등</li> <li>전자 빔 위치 모니터 등 고정밀 진단기기 개발</li> </ul>

(6) 고전류 전자/하드론 빔 기술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0 MW급 고출력 양성자 빔 기술</li> <li>자율 제어 시스템 설계, 머신러닝 기반 안정성 향상 연구 등</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회수형 선형가속기(ERL) 및 전자소스 관련 기본 연구</li> <li>하드론(양성자 등) 빔 소스 연구 (중간 전류, 기본 밀도)</li> </ul>

(7) 가속기 기반 핵시스템 및 동위원소 생산

등급	예시 기술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없음 (현재는 별도 제한 없음)</li> </ul>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물리 연구 또는 핵분리 최적화 이전 단계의 방사화학 연구</li> </ul>

**Tip!****DOE와 공동연구를 계획 중인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S&T Risk Matrix 관련 유의사항 〉****1. Red 기술 포함 시 협력 절차가 강화됨**

- Red 등급 기술은 “restricted topic”으로 간주되며, DOE는 위험국가(Country of Risk) 소속자뿐 아니라, 해당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제3국 연구자와의 협력에도 강화된 검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위험국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위험국가에 준하는 강화된 제약을 받지는 않으나, 위험국가 국적자(예 : 포닥 등)가 참여연구원에 포함 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음
- 위험국가 여부와 무관하게 Red 기술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
  - 해당 기술의 등급 분류에 관한 기술 설명서(technical narrative) 또는 분류 요청 문서 제출
  - DOE 본부의 Cognizant Secretarial Office(CSO) 또는 Program Secretarial Office(PSO)의 사전 승인
  - DOE 정보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IN)의 강화된 보안 심사(enhanced vetting)
  - CUI(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보호계획, 정보 보호 및 공개 제한 절차 수립

**Tip** | DOE 또는 산하 국립연구소 측에서 Red 기술 관련 별도의 사항을 요청 시 조율

**2. Yellow 기술은 사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Yellow 기술은 향후 Red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DOE는 특정 상황 또는 위험국가 소속자와의 협력 여부에 따라 추가 보호조치나 문서화된 통제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별 연구소 자체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 자료 공유 범위 제한 또는 협력자별 정보 접근 제한
  - 논문, 발표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
  - DOE 시설 내부 접근(동행 조건 등) 또는 실험 장비 단독 사용 제한
  - Access Plan, Export Control 확인서, 인식제고 교육(Coaching/Awareness Training) 이수 등

**Tip** | DOE 또는 산하 국립연구소 측에서 Yellow 기술 관련 별도의 사항을 요청 시 조율

**3. 기술적 민감도는 다양한 협력 방식에도 영향을 미침**

- S&T Risk Matrix는 연구 주제뿐 아니라, 해당 기술이 사용·공유되는 방식 전반에 걸쳐 위험도를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민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연구 수행 장소가 DOE 내부 시설인지 또는 외부 연구기관인지 여부
  - 실험 중 생성되거나 논문에 포함될 수 있는 민감 정보 또는 기술자료
  - 논문 공동저자에 위험국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DOE의 장비, 알고리즘, 데이터 또는 시뮬레이터 등의 사용 여부

**Tip** | 협력 주제뿐만 아니라, 공동실험, 데이터 공유, 출판 등의 협력 방식 자체가 민감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을 권장

#### 4. S&T Risk Matrix는 다양한 DOE 정책들과 연계되어 적용됨

- DOE는 S&T Risk Matrix를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술 등급에 따라 협력 승인 또는 제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

정책	연계 방식
DOE O 142.3B	외국인의 DOE 시설 접근 및 협력 시, Red/Yellow 기술 포함 여부에 따라 추가 승인 또는 면제 필요
DOE O 483.1B	외국 기관과 CRADA 체결 전, S&T Risk Matrix 기반 기술 민감도 평가 수행
DOE O 481.1E	외국 기관과 SPP 체결 전, S&T Risk Matrix 기반 기술 민감도 평가 수행
DOE O 550.1	민감 기술이 포함된 DOE 직원의 해외출장 시, FTMS 등록 및 보안 관련 부서 사전 심사 연계
DOE P 485.1A	DOE의 대외 파트너십 활동 관리 시, S&T Risk Matrix를 통해 제한 기술 구분 및 대응 방안 수립

Tip | DOE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위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 준비

#### 〈 DOE 국립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 체결 시 공통 유의사항 〉

##### 1. 협력 형식에 따라 사전 승인 필요

- 연구기관이 DOE 연구소와 아래 형식으로 협력하려면 DOE 본부(HQ)의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요
  - 양해각서(MOU, LOI 등),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SPP), CRADA(공동연구개발협정), ACT(기술상용화 계약), 기타 외국 기관이 DOE 연구소에 연구를 요청하는 계약

Tip | DOE는 사전 승인 없이 협의되거나 체결된 비공식 MOU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함

##### 2. MOU 또는 계약 체결 시 DOE 본부 내 부서 검토 필요

- DOE가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려면, 관련 부서(CSO, PSO, IA, GC, IN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Tip | DOE 측 파트너 기관이 내부 검토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예 : 기관 정보, 공동 연구 목적, 기술 분야, 미국 내 기여 등)

##### 3. S&T Risk Matrix 위험 분야 포함 여부 확인

- DOE는 위험 국가(Countries of Risk)와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과학기술 위험 매트릭스(S&T Risk Matrix)을 운영
- 협력 주제가 S&T Risk Matrix 상 제한 기술(Red)로 분류된 경우, 위험국가 국적자와의 협력이 아니더라도 DOE 내부 정책에 따라 사전 면제 승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

Tip | 우리나라는 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험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준비

#### 〈 CRADA 체결 시 유의사항 〉

##### 1. DOE의 사명(Mission)에 부합해야 함

- 공동연구 주제는 DOE의 과학, 에너지, 안보 등의 미션과 관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기관도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단순한 자금 지원은 인정되지 않음)

Tip | 필요시 공동연구 목적이 DOE의 미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술할 것을 권장

##### 2. 외국 기관 참여는 S&T Risk Matrix 사전 검토 대상

- DOE는 신흥 분야 관련, S&T Risk Matrix상 제한 기술에 해당할 경우 사전 승인 및 면제 요청 절차를 규정
- Tip | 우리나라는 위험 국가는 아니지만, 협력 기술이 제한 분야일 경우에는 면제 절차를 요청받을 수 있음

### 3. 미국 우선 조항(U.S. Competitiveness Clause) 적용 여부 등 지식재산권(IP) 및 데이터 권리 사전 협의 필요

- 공동 연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발명품에 대해 DOE는 미국 우선 사용권을 가지므로 한국 기관이 IP 공유 또는 상용화를 원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계약 명시 필요

Tip | 우리나라 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예 : 특허출원, 제품화 등)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해당 내용을 CRADA에 명시

### 4. 자금 출처 및 소유 구조 정보 요구

- DOE는 CRADA 참여자의 자금 출처(국가 자금 여부), 소유·지배 구조(FOCI : Foreign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를 요청할 수 있음

Tip | FOCI 관련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5. CRADA 전 공동 작업 계획서(JWS) 제출 필수

- DOE에 제출할 Joint Work Statement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 연구 목적 및 범위, 참여 기관별 역할, 예상 산출물 및 일정, 민감 기술 여부 및 IP 분배 계획
- Tip | 필요시 사전에 미국 측 파트너와 조율하여 공동 작성 필요

#### 〈 SPP 체결 시 유의사항 〉

### 1. SPP는 외국 기관도 참여 가능하나 사전 심사 필요

- DOE는 모든 외국 기관과의 SPP에 대해 보안, 기술, 외교적 관점에서 HQ 다부처 검토 실시
- Tip | DOE 측 파트너가 요구하는 문서(기관 개요, 자금 출처, 협력 목적 등) 준비

### 2. SPP 활동은 DOE의 사명과 부합해야 함

- SPP는 DOE의 과학·에너지·안보 미션을 지원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협력 과제는 DOE 또는 NNSA의 미션과 일치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SPP는 미국 민간 부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됨
  - 과도한 리소스 소모 또는 미래에 부담이 될 가능성성이 없어야 함
  - 모든 DOE 지침, 보안, 수출통제,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위험국가는 제안된 기술이 S&T Risk Matrix상 Red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FOAB의 심사 및 DOE Under Secretary의 승인을 받아야 함

Tip | 필요시 공동연구 목적이 DOE의 미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술할 것을 권장

### 3. 미국 우선 조항(U.S. Competitiveness Clause) 적용 여부 등 지식재산권(IP) 및 데이터 권리 명확화

- SPP 결과물에 대해 DOE는 데이터 및 기술 보호 요건을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미국 우선 사용권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가 지재권 확보나 상용화를 고려할 경우,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Tip | 필요시 IP 및 데이터 권리 명확화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필요

## 그래도 궁금해요!

## DOE와 공동연구를 계획 중인 연구자를 위한 FAQ

※ (참고) 관련 상세 규정 및 연구보안 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

| 표 6 | S&amp;T Risk Matrix 및 DOE P 485.1A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우리 연구팀에 위험국가 국적의 포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OE와 Red 기술 관련하여 DOE.O 485.1A에 명시된 협력(MOU, CRADA, SPP, ACT 등)이 가능한가요?	Red 기술은 위험국가 국적자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강화된 심사 및 DOE 본부 승인 요건이 적용됨. 따라서 위험국가 국적의 포닥이 포함된 연구팀이 Red 기술 협력에 참여할 경우, 강화된 제한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협력 체결 전,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 기술 주제가 Red에 해당하는지 확인 위험국가 국적 포닥의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 요청 심사 소요 기간(보통 45일 이상)을 고려하여 일정 여유 확보 PI와 협력하여 접근관리계획(AMP) 포함 여부 확인 및 준비
Red 기술에 해당하면 DOE 협력이 불가능한가요?	기술 특성에 따라 협력이 불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보안 요구 발생 가능. 위험국가 국적자 포함 시 강화된 제한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 해당 Red 기술의 기밀, 수출통제, CUI 포함 여부를 문의 후 협력 주제에 대한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히 조율
Yellow 기술은 항상 제한되나요?	Yellow 기술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이며, 사례에 따라 일부 제한 또는 보안조치 요구 가능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에 해당 Yellow 기술의 보안관리 수준을 문의 후, 필요 시 협력 범위와 자료 공유 수준을 명확히 정리
우리 연구팀에 위험국가 국적의 포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OE와 Yellow 기술 관련하여 DOE.O 485.1A에 명시된 협력(MOU, CRADA, SPP, ACT 등)이 가능한가요?	Yellow 기술에 위험국가 국적자가 포함될 경우, DOE 연구소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정보 공유 제한, 역할 제한, 보안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해당 위험국가 국적 포닥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 민감도에 따라 참여 조정 DOE 또는 국립연구소 측과 참여 가능 범위 및 관리방안 사전 협의 권장
Green 기술은 자유롭게 협력 가능한가요?	Green 기술은 일반 협력, 정보 공유, 출판에 특별한 제약이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DOE 본부 검토 절차만 거치면 협력 가능하며 면제는 불필요	기초 연구, 공개 정보 중심으로 협력
기술 등급은 누가 판단하나요?	DOE 기술 담당자, 보안 담당자, 정보기관이 공동 판단	S&T Risk Matrix 상 기술 등급(Red/Yellow/Green)에 대한 분류 여부를 DOE 기술 담당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기술 등급에 따라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술 등급에 따라 DOE 본부 승인, 정보기관 심사, 보호계획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프로젝트 개요, 기술 분류요청서, S&T 등급 판단 근거자료, 정보보호 관련 계획(CUI 등)을 사전 문서화해 준비

### 참고 DOE의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및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관련 조치사항

#### 1. 위험국가 정의 및 관련 조치

※ (근거 규정) DOE O 486.1A

- (위험국가 정의) 국가정보국장실(DNI)의 『세계 위협 평가(World Wide Threat Assessment)』 및 『미국 국가 방첩 전략(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등을 고려하여, 과학차관이 에너지 차관, 핵안보 차관, 정보·방첩실과 협의한 후 지정한 위험 외국(foreign country of risk)을 의미함
- (위험국가 목록) 현재 DOE 지정 위험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벨라루스 5개국이며('25.5월 기준) 변동 가능

※ (근거) 美 DOE 홈페이지 ( <https://www.energy.gov/science/countries-risk> )

- (위험국가 관련 조치) DOE의 위험국가 관련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7 | DOE의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관련 조치사항

주요 이슈	관련 규정	주요 조치사항
1. 제한기술 접근 관련 심사 강화	DOE O 14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국가 국적자 또는 기관이 Red 등급 기술에 접근할 경우 DOE 본부 및 현장 차원의 심사 및 승인 강화</li> </ul>
2. 위험국가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금지	DOE O 486.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직원 및 Contractor Personnel의 위험국가의 외국 정부 후원 인재 유치 프로그램(FGTRP)에 참여 금지</li> <li>DOE 직원 및 고용 관계가 있는 Contractor Employee의 위험국가의 기타 외국 정부 후원 또는 연계 활동(Other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에 대한 참여도 제한</li> </ul>
3. 국립연구소와 위험국가 간 제한기술 협력 금지	DOE P 485.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국립연구소는 위험국가와 S&amp;T Risk Matrix상 Red 기술이 포함된 협력 (MOU, CRADA, SPP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수행을 위해서는 FOAB 검토 및 DOE 차관 사전 면제 승인 필요</li> </ul>
4. CRADA 제한	DOE O 483.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국가 기관과 CRADA 체결 추진 시 해당 기술이 S&amp;T Risk Matrix 상 Red 분야인 경우 FOAB을 통해 관할 차관 또는 지정자의 사전 예외 승인 필요</li> </ul>
5. SPP 제한	DOE O 481.1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국가 기관과 SPP 체결 추진 시 해당 기술이 S&amp;T Risk Matrix 상 Red 분야인 경우 FOAB을 통해 관할 차관 또는 지정자의 사전 예외 승인 필요</li> </ul>

#### 2. 민감국가 정의 및 관련 조치

- (민감국가 정의)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 대상이 되는 국가를 의미함. 이러한 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안보 위협 또는 테러 지원 등의 사유로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y list)에 포함될 수 있음
- (민감국가 목록) 현재 민감국가 목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참고〉 DOE 민감국가 관련 안내문 전문 ('25년 5월 기준)

(<https://www.energy.gov/science/what-doe-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

#### 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 미국 에너지부(DOE)는 내부적으로 “민감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ies List)” 또는 “SCL”로 알려져 있음. 이 목록은 DOE가 직접 작성, 유지, 활용하며, 외국인과의 접촉에 관한 부처의 정책 및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됨.
- **SCL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됨 :**
  1. 외국인의 DOE 시설, 정보 또는 기술에 대한 접근 시, 추가적인 DOE 내부 검토 및 승인 필요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
  2. 공식 해외출장의 검토 및 승인 절차에서 DOE 정책과 함께 적용
  3. 비공식 해외출장에 대한 보고 요건을 DOE 직원이 따를 수 있도록 안내
- 이 목록은 등급화된 검토 및 승인 기준을 국가별로 적용하며, **DOE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며, 미국 정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음**
- **SCL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지 않음 :**
  1. 국제 과학기술 협력
  2. 기타 국제적 또는 학술적 교류 활동
  3. DOE 직원의 해당 국가 방문 또는 접촉
  4.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외국인이 DOE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5.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기업의 일반적인 대외활동

- (민감국가 관련 조치) DOE 내부 규정상 민감국가 관련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 8 | DOE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관련 조치사항

주요 이슈	관련 규정	주요 조치사항
1. 국립연구소와 민감국가 간 협력 사전 검토	DOE P 485.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국가 국적자 또는 기관과의 협력 시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의 DOE 연구소, 연구 활동,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여부를 고려하여 <b>사전 평가 수행</b></li> </ul>
2. CRADA 체결 시 계약·재정 정보 보고	DOE O 483.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E와 CRADA를 체결하려는 외국 기관이 <b>민감국가와 계약·수익(총 수입 gross income)의 10% 이상) 보유</b> 등 외국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b>FOCI* (외국 소유·통제 영향) 심사 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ign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li> <li>※ 심사 결과에 따라 완화조치(Mitigation Measures) 요구 가능하며 여기에는 ①보안통제계획(SCP) 수립, ②기술통제계획(TCP) 수립, ③경영·의결권 등 구조 개혁, ④외국 이해관계자 배제 조치 등 포함</li> </ul> </li> <li>• 민감국가로부터 수익이 있는 경우 <b>국가별 금액, 계약성격, 수출통제 준수 여부 등 상세 기재</b></li> <li>• CRADA 체결기관이 <b>민감국가의 소유·지배·영향</b>을 받을 경우 <b>협력 제한 또는 해지 가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CI 상태 변경 시 즉시 보고, 5년 경과 시 재평가</li> </ul> </li> </ul>

주요 이슈	관련 규정	주요 조치사항
3. DOE 연구소 및 기술 등 접근 제한	DOE O 14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국가 국적자의 NNSA 연구소 접근 시 <b>사전 신원 조사(인덱스 조회)</b> 필수</li> <li>비민감 주제 접근 시에도 <b>인덱스 조회</b> 필요 (사전 완료는 불필요)</li> </ul> <p>※ <b>인덱스 조회</b>는 정보·방첩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IN)이 주관하며, FACTS(외국인 접근 중앙추적시스템) 내 접근 요청 기록을 통해 신청</p> <p>※ 신원조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b>접근 시작일 최소 45일 전까지 FACTS에 입력</b> 권장</p> <p>※ 인덱스 조회 결과는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는 FACTS를 통해 자동으로 갱신 요청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국가 출신·소속 외국인(언론인 포함)의 출입 시 <b>사전 접근 심사 및 승인</b> 필수이며, 해당 기록은 FACTS 시스템에 기록</li> </ul>
4. DOE 직원의 민감국가 관련 해외출장 시 방첩 브리핑	DOE O 550.1 Chg 1, DOE O 4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직원이 <b>민감국가 출장</b> 또는 <b>민감국가 국적자 접촉</b> 시 <b>사전 방첩 브리핑</b> 필수이며, 귀국 후에는 <b>사후 브리핑</b>도 IN*(정보·방첩국) 재량으로 실시 가능</li> </ul> <p>* 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p> <p>※ 위 절차는 보안 인가(Security Clearance)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 대상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직원은 <b>민감국가 출신 인물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해외출장</b> 시 정보·방첩국 재량에 따라 <b>사전 브리핑</b> 및 <b>사후 브리핑</b> 수행</li> <li>민감국가 국적자의 방문 요청은 최소 30일 전에 인덱스 조회 필수</li> </ul>
5. DOE 직원의 민감국가 비공식 여행 관련 절차	DOE O 472.2A, Chg. 1 (LtdCh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 직원이 <b>민감국가로 여행</b>할 경우, 출발 전 현지 DOE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b>사전 방첩 브리핑</b>을 받아야 하며, 귀국 후에는 <b>사후 브리핑</b>도 실시 가능</li> <li>민감국가 여행 중 경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b>귀국 후 5일 이내 보고</b></li> <li>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민감국가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3일 이내에 보고</li> </ul>
6. DOE 방첩 프로그램 성과 평가	DOE O 4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E의 방첩 프로그램 성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b>민감국가 외국인과의 접촉 기록의 품질, 정확성, 시의성</b>이 포함됨</li> </ul>

※ 위 사항은 총괄 원칙으로, 민감국가 관련 세부 규정이나 보안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유의

### 참고 DOE 산하 국립연구소 파견 시 연구보안 유의사항 관련 파견 유경험자 인터뷰 결과

※ (참고) 연구보안 관련 상세 규정 및 보안관리 수준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인터뷰 내용은 모든 국립연구소에 일반 적용되는 사항은 아님을 유의

#### 1. 노트북에 핸드폰 연결 시 보안자료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연결 금지 또는 유의

- 보안 관리가 엄격한 연구소의 경우 노트북에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도록 안내받았는데, 이는 핸드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노트북에 있는 중요한 보안 관련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충전 목적으로도 노트북에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 2. 이메일 전송 시 기술 민감도에 따라 사전에 여러 단계의 보안 검토를 거칠 수 있음

- 민감한 기술의 경우 국립연구소뿐만 아니라 NNSA 등 상위 기관의 보안 검토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첨부파일 전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이메일 전송 시 OOU(Official Use Only), CUI(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등 별도의 보안 표시를 하도록 안내받음
- 민감도가 낮은 경우 국립연구소 내부 검토만 거치거나 내부 검토 없이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3. 일부 연구소에서는 출입증이나 내부 사진을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

- 보안 관리가 엄격한 연구소의 경우 출입증이나 내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도 함

#### 4. 보안 시설의 경우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도록 통제

- 모든 연구소나 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출입 기록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은 한 명이 문을 잡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보안시설 무단 출입에 따른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5. 보안 업데이트를 위해 노트북을 두고 가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을 수 있음

- 연구소 내부에서만 보안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정해진 날에는 노트북을 연구소에 두고 퇴근하도록 안내받음

#### 6. 무작위로 보안 관련 검문이 있을 수 있음

- 보안 관리가 엄격한 연구소의 경우 출퇴근 또는 업무 시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대해 불시 보안 검문을 하곤 함

#### 7. 연구보안 관련 규정이나 요구사항 및 유의사항은 개별 국립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음

- NNSA 산하 국립연구소처럼 보안관리 수준이 매우 높은 연구소는 타 국립연구소에 비해 보안관리 규정이 엄격할 수 있음
- 기초연구 위주로 수행하는 국립연구소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연구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음

### 3 국립과학재단(NSF)

#### △ 개요

» (개요) NSF는 외국 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국 영향, 이해충돌(COI), 중복 자금 수혜(duplicate funding)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보안 규정을 강화해 왔으며,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와의 협력은 강화된 심사 및 검토 대상임

» (연구보안 규정) NSF는 PAPPG\* 24-1 개정('24.5.20.) 등을 통해 연구보안 관련 주요 요구사항 명시

\* NSF PAPPG(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제안 및 수상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임

#### △ 주요 공개 및 인증 의무사항 (NSF PAPPG 24-1 기준) ('24.5.20.)

| 표 9 | 주요 공개 및 인증 의무사항

항목	기재 위치	필수 기재 내용	비고
외국 자금	Current & Pending Support	• 외국 정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 장비, 인력 등 직접·간접적 지원	SciENcv 양식 필수
외국 기관 무보수 기여	Current & Pending Support	• 외국 기관이 제공한 인력, 공간, 장비, 데이터 등 현물(in-kind) 기여 포함	무보수 공동연구 포함
외국 임용·자문·직위	Biosketch	• 외국 기관과의 임용, 자문, 겸직, 방문연구 등 모든 직위 (보수 여부 무관)	SciENcv 양식 필수
외국 협력자	COA (Collaborators & Other Affiliations)	• 공동연구자, 공동저자, 지도교수 또는 제자 관계 (최근 48개월 기준)	NSF 제공 Excel 양식 사용 필수

#### ① 약력 스케치 : Biographical Sketch (Biosketch)

※ NSF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모든 관계(자문, 명예직, 방문연구 등)을 공개해야 하며, NSPM-33 이행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무관하게 기재 필요

- 약력 스케치는 SciENcv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학력, 직무 경력, 대표 연구업적(최대 5건), 외국 기관과의 모든 임용·직위 관계를 기재

• 특히, 외국 기관 관련 자문, 겸직, 방문연구 등은 보수가 없더라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이는 NSPM-33의 이행 요구사항과도 일치함

#### ② 현재 및 보류 중인 (기타) 지원 : Current and Pending (Other) Support

- 현재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모든 과제는 연방·비연방 자금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해야 하며, 외국 기관이 제공한 자금 외에도 장비, 인력, 공간, 데이터 등 무보수 형태의 연구 기여 또한 포함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이후 관련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Research.gov를 통해 갱신해야 하며, 기재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③ 협력자 및 기타 제휴 : Collaborators & Other Affiliations (COA)

- 공동연구자, 공동저자, 학위 지도교수 또는 제자 등과의 관계는 과거 4년간의 이력을 기준으로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이 정보는 NSF의 심사위원(Peer Reviewer) 배정 시 이해충돌(COI) 여부 판단에 활용됨
- SciENcv 양식이 아닌 별도의 Excel 템플릿을 사용해야 하며, 서식 누락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됨

### ▶ 악성외국인재유치프로그램 금지 : Prohibition on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s (MFTRP)

- ▶ 2024년 5월 20일 이후 제출되는 제안서부터, 모든 Senior/Key Personnel은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 MFTRP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개별적으로 인증(Certification) 해야 함
  - 해당 인증은 기관 차원의 인증과는 별도로 각 개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
- ▶ MFTRP는 주로 우려국가(Foreign Countries of Concern)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MFTRP 참여로 간주
  - 미공개 기술·자료·성과의 외국 이전 요구, 외국 기관의 기금 수령 강제, 이중 소속 또는 겸직 강요, 미국 소속기관 표시 제한, 참여 계약의 종료 제한
- ▶ MFTRP 참여자는 NSF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기재 또는 미공개 시 NSF OIG 조사 및 연방 기금 수혜 제한 등 제재 가능

### ▶ (기관 요건) 연구보안계획 자체 인증 : Certification of Research Security Plan

- ▶ NSF로부터 총 50만 달러(\$500,000) 이상을 수혜받는 기관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연구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인증(Certify) 해야 함
  - 공식 연구보안 프로그램(Research Security Program)
  - 연구의 책임 있는 수행(RC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교육 제공
  - 사이버보안, 외국 영향, 데이터 관리 정책 포함
- ▶ 본 인증은 NSF에 의해 별도 심사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완전한 제출이 전제되며, 허위로 인증할 경우 연방 차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연구보안 규정 위반 시 조치 (NSF PAPPG 기준)

| 표 10 | 위반 시 조치

위반 유형	예시	조치
누락 기재	외국 자금, 무보수 협력 등 미기재	제안서 반려, 협력 철회
허위 기재	외국 자금 은폐, 관계 은폐	수상 취소, 향후 자격 제한, NSF OIG 조사
MFTRP 관련 불성실 신고	과거 참여 이력 은폐	NSF OIG 조사 및 연방 기금 수혜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Tip!****NSF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NSF 연구보안 규정 관련, 국제공동연구시 유의사항 〉****1. 외국 협력의 공개 범위가 큰 폭으로 확장된 것에 유의**

- NSF는 외국 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지원, 자문, 협력관계를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연구자가 미국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도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됨 :
  -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연구공간, 인력, 장비, 데이터를 제공받은 경우
  - 미국 연구자와 공동 논문 또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 중인 경우
  - 미국 측 연구책임자(PI)가 우리나라 기관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 중일 경우

**Tip** | 미국 연구자의 제안서에 본인의 이름, 소속, 역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관 정보, 역할, 기여 내용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제공하고, 해당 내용이 NSF 제출 문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사전 확인 필요

**2. 무보수 활동도 Disclosure 대상임**

- NSF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실질적 연구 기여가 있는 관계”는 Current & Pending Support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연구자가 미국 측 연구에 단순 조언을 하거나 공동 실험을 제공한 경우,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NSF 측에서는 자원 제공 또는 연구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음
- Tip** | 무보수라 하더라도 실질적 연구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Disclosure 대상일 수 있으므로, 기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미국 측 PI에 전달

**3. 협력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규정이 간접 적용될 가능성에 유의**

- 우리나라 기관이 NSF 과제의 하위 수혜기관(subrecipient) 또는 공동연구 참여기관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미국 측 기관이 총 50만 달러(\$500,000) 이상의 연구비를 수혜받는 경우, 기관 차원의 연구보안 프로그램 인증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미국 측 기관은 협력기관에 보안관리, 연구윤리 교육, 외국 영향 통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Tip** | 본인 소속 기관이 NSF와 직접 계약하지 않더라도, 미국 측 기관으로부터 보안 관련 요구사항(서약서 제출, 교육 이수, 연구자산 관리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필요

**4. MFTRP(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 관련 각별한 주의 필요**

- NSF는 모든 연구책임자(PI) 및 Senior Personnel에게 자신이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요건은 NSF 제안서 제출 시점뿐 아니라, 과제 수상 이후에도 매년 재확인 절차가 요구됨
- Tip** | 과거 해외 정부 또는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예직, 자문 역할을 부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가 MFTRP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미국 측 PI와 함께 설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음

## 그래도 궁금해요!

## NSF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표 11 | NSF 연구보안 규정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외국 기관으로부터 무보수로 지원받은 공간이나 인력도 공개해야 하나요?	무보수라도 외국 기관으로부터 연구자원(공간, 장비, 인력 등)을 제공받았으면 공개 대상임	외국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외국 연구자와 공동 저자로 논문을 썼다면 Disclosure 해야 하나요?	4년 이내 공동저자인 경우 COA 양식에 포함될 수 있음	공동저자 관계가 있다면 미국 측에 알려 COA 양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우리나라 연구자도 MFTRP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NSF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Senior Personnel은 MFTRP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과거 MFTRP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 필요
우리나라 기관은 \$500,000 이상 프로젝트에도 보안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기관은 직접 수혜기관은 아니더라도 Subaward로 참여 시 요구받을 수 있음	보안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미국 측과 사전 협의해 템플릿을 공유받아 대응 필요
Disclosure 정보 누락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보 누락은 NSF 수상 취소, 감사, 수사, 향후 제안 제한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정보 제출 전 NSF PI와 교차 검토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 설명서를 첨부

## 4

## 국립보건원(NIH)

## △ 개요

» (개요) 국립보건원(NIH)은 미국 내 생물의학 연구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 연구자 및 기관이 외국 활동을 포함한 모든 연구 자원, 과학적 협력, 그리고 재정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

- 과학적, 예산적, 업무적 중복(overlap)을 방지하고, 국제 협력 속에서도 미국 연구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

» (연구보안 규정) 재정적 이해 상충 및 외국 구성 요소 관련 기타 지원에 대한 NIH 정책 알림\*을 통해 기준 정책을 재강조

\* Reminders of NIH Policies on Other Support and on Policies related t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Foreign Components [NOT-OD-19-114 (2019.7.10.)]

※ 2018년 NIH는 생의학 연구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고, 국제 협력은 장려하되 투명성과 충돌 방지가 핵심임을 강조함. 해당 공지는 기존 정책의 재강조이며, 새로운 정책 변경이 아님

## △ 주요 공개 항목 및 의무 사항

## ① 기타 지원 (Other Support)

- 정의 :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금, 자원, 인력 지원 등 (금전 여부 불문)
  - 보고 대상 :
    - 외국 및 국내 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실험실 인력 지원
    - 고가 장비, 공간, 생물자원, 실험 재료 등 현물(in-kind) 지원
    -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 참여
  - 요구사항 :
    - Senior/Key Personnel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인력 기여(person-months), 총 지원 금액, 자원 출처 등을 포함
    - 제안서 제출 전에는 Just-in-Time(JIT) 단계에서 보고
    - 수상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연례 RPPR 보고서 제출 또는 NIH에 사전 승인 요청
- ※ (예) 한국 기관이 미국 PI에게 실험 인력과 실험 공간을 제공할 경우 NIH에는 Other Support로 보고 필요

## ② 외국 구성요소 (Foreign Components)

- 정의 : NIH 지원 연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미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과학적 요소 또는 세그먼트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Foreign Component로 간주됨
    - 연구자 또는 수혜자가 미국 외부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자가 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보고 필요 시점 :
    - 최초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과제 수행 도중 Foreign Component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NIH의 사전 승인 필요 (NIHGPS §8.1.2)
- ※ (예) 미국 PI의 NIH 과제에서 한국 연구자가 일부 실험을 한국에서 수행할 경우 Foreign Component로 간주되어 사전 승인 필요하며, 단순한 공동저자 관계나 협의성 출장 등은 Foreign Component로 간주되지 않음

### ③ 재정적 이해충돌 (FCOI,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법적 근거 : 42 CFR Part 50, Subpart F (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규정)
- 보고 대상 : 외국 기관에서 발생한 중대한 재정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 보고 방식 :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FCOI를 공개하고, 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NIH에 보고  
※ 연구자가 NIH에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NIH에 보고하는 형식임을 유의
- 기타 사항 :
  - FCOI는 Other Support 및 Foreign Component와는 별개의 독립된 보고 체계임
  - 기관의 자체 정책이 NIH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해당 기관 기준을 우선 적용

| 표 12 | NIH에 보고가 필요한 사례 예시

사례	기타 지원 (Other Support)	외국 구성요소 (Foreign Components)	재정적 이해충돌 (FCOI)
한국 기관에서 장비 제공	○	X	X
한국 연구자가 실험 수행	○	○	X
외국 기업 지분 보유	X	X	○
외국 기관 자문직 (무보수)	○	X	조건에 따라 필요*

\* 자문 활동이 향후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거나, 판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FCOI로 간주될 수 있음.

### » 보고 시점 및 방식

- 기타 지원(Other Support) :
  - 제안서 제출 직전 : Just-in-Time(JIT) 단계에서 제출
  - 수상 후 변경 발생 시 : RPPR 또는 사전 승인 요청 필요
- 외국 구성요소(Foreign Component) :
  - 제안서 제출 시 또는 연구 도중 추가되는 경우 NIH의 사전 승인 필수
- 재정적 이해충돌(FCOI) :
  - 기관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하며, NIH에 보고 의무 발생 시 통지

**Tip!****NIH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NIH 연구보안 규정 관련, 국제공동연구 시 유의사항 〉****1. 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은 NIH에 공개 대상임을 인지할 필요**

- NIH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에 대해,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제공된 모든 자원을 Other Support(기타 지원) 항목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외국 기관이 제공한 실험 공간, 고가의 실험 장비, 인력(예 : 기술 인력, 박사후연구원 등), 실험 물질 등도 모두 포함
- ✓ Tip |** 우리나라 기관이 NIH 과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에서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면 NIH에 Other Support로 보고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공 내역을 문서화하고 공유

**2.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다면 Foreign Component로 보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NIH는 연구의 일부가 미국 외 지역(예 : 우리나라 등)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Foreign Component(외국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NIH 자금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연구자가 실질적인 실험 수행을 한다면 Foreign Component로 간주
- ✓ Tip |** 공동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경우, 수혜기관이 이를 Foreign Component로 판단하고 NIH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해야 하므로, 해당 연구활동의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에 협의할 필요

**3. 외국 기관과 관련된 임용·자문·인재 프로그램 참여는 반드시 공개 대상임을 유의**

- 연구자가 외국 기관에서 직위(정규직, 자문, 명예직 포함)를 보유하거나 인재 프로그램(예 :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은 NIH의 Other Support 문서 또는 Biosketch에 공개해야 함
  -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활동이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공개 대상임을 유의해야 함
- ✓ Tip |** 우리나라 연구자가 NIH 과제에 Senior/Key Personnel로 포함될 경우, 외국 관련 모든 관련 직위 및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개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

**4. 재정적 이해충돌(FCOI)은 기관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외국 재정도 포함됨**

- NIH는 별도의 규정(42 CFR Part 50, Subpart F)에 따라, 연구자가 보유한 외국 기업·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이익도 소속 기관을 통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해당 보고는 Other Support와는 별도로 관리되며, 소속 기관의 자체 기준이 NIH보다 더 엄격할 경우 소속 기관 기준을 준용
- ✓ Tip |** NIH 과제 수행 중 외국 자금, 주식, 지분 보유, 기업 계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속 기관의 FCOI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관을 통해 사전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5. NIH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수상 전·후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즉시 NIH에 통지 필요**

- Other Support는 NIH 제안 제출 시점뿐만 아니라, 수상 직전(JIT), 수상 후 연례보고(RPPR), 그리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모두 반영되어야 함
- ✓ Tip |** 공동연구 진행 중 외국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이 추가될 경우, NIH에 통지 필요

## 그래도 궁금해요!

## NIH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표 13 | NIH 연구보안 규정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우리나라 연구자의 외국 기관 겸직이나 자문 활동도 공개해야 하나요?	무보수라도 외국 임용·자문 등은 공개 대상임	외국 기관과의 관계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NIH에 투명하게 공개 필요
우리나라 연구자가 NIH 자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정보 공개 대상인가요?	간접 참여라도 Senior/Key Personnel으로 지정되면 정보 공개 대상	Senior/Key Personnel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정보 공개 범위 내역을 정리
공동연구 중 새롭게 지원이 추가되면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나요?	수상 전후에도 계속 갱신되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통지할 필요	연구 중 지원 추가 시 즉시 미국 측에 알리고 관련 정보 갱신 요청
정보 누락 시 불이익이 있나요?	연구비 환수, 지원 중단, 법적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문서 제출 전후로 내용을 교차 검토하고,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자료를 마련해 대응 필요
FCOI는 Other Support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FCOI는 외국 재정 이해관계 공개 의무로,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이 NIH에 별도로 보고해야 함	FCOI는 기관 기준에 따라 별도 보고되므로 기관 정책도 함께 검토

## 5

## 항공우주국(NASA)

### ▣ 개요

- » (개요) NASA의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Manual (GCAM)은 보조금 및 협력 협정과 관련된 정책 지침을 제공하며, 연구보안, 수출통제, 외국 참여자 관리 등 기술 보호와 관련 주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 NASA의 연구보안 및 기술 보호 관련 조항

※ GCAM(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Manual, 2025년 3월판)에 명시

#### ① 수출통제 (Export Control)

※ GCAM §16.7-§16.9

- (16.7 Export Control) 외국 기관 또는 외국 국적자의 참여가 포함된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법(ITAR, EAR 등)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수혜 기관은 관련 법규 준수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16.8 Export-Control Guidelines for Foreign Participation) 제안서에 외국 참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기술지원협정(TAA) 또는 수출허가 보유 여부
  - 기술이전통제계획(TTCP, Technology Transfer Control Plan)
- (16.9 Export-Controlled Material in Proposals) 수출통제 대상 기술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하나, 제안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NASA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신중한 검토 필요

- 문서 상단에 수출통제 고지문(예: “This document contains export-controlled information subject to [법령명]”)를 삽입
- 관련 내용은 별도 구분 및 식별 처리

#### ② 보안 및 연구 부정행위(Security & Research Misconduct)

※ GCAM §16.12, §16.15

- (16.12 Security) 보안 요건이 수반되는 경우 NASA의 보안정책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의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
- (16.15 Research Misconduct) 14 CFR Part 1275에 따라 위조, 변조, 표절 등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NASA OIG(감찰실)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③ 악성외국인재유치프로그램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s (MFTRP))

※ GCAM §16.16

-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10631에 따라, MFTRP 참여자는 NASA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적용 대상 :
  - PI(연구책임자), Co-PI(공동연구책임자)
  - 연간 참여율 10% 이상인 Co-Investigator(Co-I, 참여연구원)
- 모든 해당 인력은 제안서 제출 시 및 매년 MFTRP에 해당되지 않음을 자가 인증해야 하며, 수혜기관은 관련 문서 보관 의무가 있음

#### ④ 외국 참여 명시 요건

※ GCAM §10.8.4, §10.11

- (10.8.4 Foreign Proposals) 외국인·외국 기관 참여 시, 소속, 역할, 자금흐름, 기술 접근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관련 서류(LOI 등) 첨부 필수
- (10.11 Data Management Plan(DMP)) 데이터 접근권, 보존방식, 외국인 접근 여부 등을 계획서에 기술해야 하며, 제한 기술인 경우 별도의 보호 계획 요구됨

### △ NASA의 Foreign Participation (외국 참여자) 관련 정책

※ NASA FAR Supplement(2025년 1월판)에 명시

#### ① 정의 및 범위

- 외국 참여자(Foreign Participants)는 다음을 포함하며, 우리나라 국적자 및 기관 모두 포함됨 :
  - 미국 외 지역에 설립된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 미국 내에 소재하나 외국 소유 또는 통제 기관
  - 외국 국적자

※ 정의는 NASA FAR Supplement(NFS) §1835.016-70, §1852.235-72, §1852.225-70 및 NPR 1600.4A 등에서 명시됨

#### ② 사전 검토 및 제한 원칙

- NASA Guidebook for Proposers에 따라 외국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공개해야 함 :
  - 소속 및 역할, NASA 펀딩 지원 여부 및 해당 예산 항목, 특정 외국 정부와의 연계 또는 협력 여부 등
- 정보 누락 시 NASA는 제안서 자체를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수상 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③ NASA FAR Supplement (NFS) 관련 조항

- NASA 계약/협약의 기준이 되는 NASA FAR Supplement (NFS)는 외국 참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명시 :
  - (NFS 1835.016-70) 외국 참여자 참여 시 NASA 계약관리자의 사전 승인 필요
  - (NFS 1852.235-72) 외국 참여자의 역할과 접근 권한을 명시하는 계약 조항 삽입
  - (NFS 1852.225-70) Foreign Nationals employed by NASA Contractors – 외국인 고용 시 보고 및 승인 의무

참고 국제공동연구시 NASA 연구보안 규정 적용 범위

- NASA는 비미국 기관(non-U.S. organizations)과의 공동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전 교환 없는 협력 (no-exchange-of-funds basis)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는 한 보조금 규정(GCAM)과 조달 규정(NFS) 모두 적용되지 않음 (GCAM § 5.4 Proposals Involving Non-U.S. Organizations)
  - ※ "NASA does not normally fund foreign research proposals from foreign organizations ..." (2 CFR § 1800.3(c))
  - ※ 단, 해당 규정(GCAM § 5.4.)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면 보조금 등 금전 교환을 포함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 NASA 산하 연구소(예: JPL 등)들은 개별 연구소마다 계약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따라서 NASA와 국제공동연구시 보조금/조달 형식을 제외하고 GCAM 또는 NFS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GCAM은 주로 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적용되며, NFS는 조달 계약자에 적용됨
- NASA와의 국제공동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또는 MOU에 따라 관리됨. 제안이 선정되면, NASA는 법무실(OGC) 및 국제 관계실(OIIR)과 협의하여 해당 공동 연구를 "외국 기관 또는 후원 기관 간의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을 통해 이행 여부 결정 및 추진
  - ※ NASA와 국제 협정(IA) 체결 시 GCAM 또는 NFS 일부 표준 조항 준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Tip!

NASA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 NASA GCAM 연구보안 규정 관련, 국제공동연구 시 유의사항 〉

1. 외국 참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식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 NASA는 미국 외의 국적을 가진 연구자 및 기관을 Foreign Participant로 간주하므로 우리나라 국적 연구자나 기관은 NASA와 협업 시, 자신이 외국 참여자임을 전제로 하고, GCAM 10.8.4 및 16.8에 따라 역할, 책임, 기술 접근 범위, 특정 외국 정부와의 관계(소유·자금 지원) 등을 사전에 명시해야 함

Tip | 자신의 신분, 소속 기관, 연구 기여 내용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제안서에 반영되도록 협의

2. 수출통제(Export Control) 대상 기술 포함 여부를 사전 검토

- GCAM 16.7~16.9에 따르면, NASA와의 협력 연구 중 ITAR(무기 수출통제법) 또는 EAR(상무부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 포함될 경우, 외국 참여자는 해당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음

Tip | 필요시 연구참여 내용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 후 관련 통제계획 수립 협력

3. 악성 외국 인재 프로그램(MFTRP) 참여 경력이 있다면 NASA와의 협력에 제한될 수 있음

- GCAM 16.16에 따르면,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MFTRP)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NASA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심사·수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Tip | 과거 악성 외국 인재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사유 등을 해명

## 그래도 궁금해요!

## NASA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표 14 | NASA GCAM 연구보안 규정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우리나라 연구자가 NASA의 보안시설에 접근할 수 있나요?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거나 사전 보안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접근 권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NDA 또는 접근 제한 문서에 서명
과거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NASA 과제 참여에 제한이 있나요?	NASA GCAM은 MFTRP 참여자에 대한 협력 제한을 명시	참여 이력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세부 내용에 대해 해명
연구 결과물이 한국 측 연구자에게도 귀속되나요?	공동 개발 기술은 NASA 조건에 따라 NASA 또는 공동기관에 귀속될 수 있음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기술 귀속 및 사용권 조항을 명확히 포함
제안서에 외국 참여자 정보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기재 시 제안서 평가 제외 또는 협력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외국 참여자 항목은 제안서 내 필수 항목 이므로 누락 없이 기재
연구 보안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NASA OIG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혜 제한,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보안 교육 이수 및 모든 관련 정보 사전 공유·문서화 체계를 갖출 것

## 6 전쟁부(DoW)

### ▲ 개요

- » (개요) 전쟁부(DoW)는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외국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연구의 무결성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인재 프로그램 대응, 민감정보 보호, 핵심 인력 보호, 기술유출 방지를 포함한 연구보안 정책을 운영
-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FY2019)」 제1286조(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cademic Researchers)는 국방부 장관(現 전쟁부 장관)에게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
  - 이에 따라 국방부(現 전쟁부)는 2019년 3월 20일, 「연구보호 조치 관련 메모(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olled Information, Key Personnel and Critical Technologies)」를 발행하여 외국 참여자에 대한 공개(disclosure) 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발표

### ▲ 외국 자금·활동·관계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 » 2019년 3월 20일 메모(March 20, 2019 Memo)를 통해, 전쟁부가 발행하는 모든 새로운 연구지원 공고(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NFO)에 다음과 같은 'Current and Pending Support(현행 및 예정된 지원)' 정보 제출 의무를 포함
- 연구자가 현재 수행 중이거나 신청 중인 모든 과제 내역
  - 각 과제의 제목 및 목표
  - 각 과제에 연구자가 연간 투입하는 비율(시간 기준)
  - 각 과제의 전체 지원 금액
  - 지원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과제의 수행 기간
- » 이 정보는 해당 연구 과제에서 핵심 인력(Key Personnel)으로 지정된 모든 인물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

### ▲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 금지 조항

- » NDAA FY2019 제1286조는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
- 국가안보와 관련된 학술 연구자의 보호(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cademic Researchers)를 위한 제도화
  -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Foreign Talent Programs) 등 외국 정부 주도의 불법적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 방위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내 기관의 지식재산(IP), 통제정보(CUI), 핵심 인력, 민감 기술 보호 시스템 확립

- 특히, 2024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MFTRP 참여 인력이 포함된 과제, 또는 MFTRP 관련 내부 정책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DoD로부터 기초연구 자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

※ (근거) 「Countering Unwanted Foreign Influence in Department-Funded Research」

- 각 참여기관은 연 1회 RPPR(Research Performance Progress Report)를 통해 참여자 전원의 MFTRP 관련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보안심사로 인해 제안서가 반려되는 경우, DoD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제안기관은 DoD의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실(OUSD(R&E))에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음. 해당 사안은 중앙조정기구가 검토 후 결정 변경 여부 판단

## ▲ 외국 영향 평가를 위한 보안심사 및 참여 제한

- 2023년 6월 「Countering Unwanted Foreign Influence in Department-Funded Research」를 통해 모든 기초연구(fundamental research) 과제 제안서에 대한 보안심사(Security Review)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술적 평가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외국 영향 요소에 대한 위험기반 심사(Risk-Based Security Review)를 진행하는 절차임

- “의사결정 매트릭스(Decision Matrix)”를 통해 외국 영향 관련 행동을 4가지 주요 요소로 평가하며, 보안심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외국 관련 지표가 포함됨 :
  -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FTRP, MFTRP) 참여
  - 우려국가(FCOC)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수령
  - 특히 출원/보유 내역 (특히 미국보다 외국 선출원 여부)
  - 미국 상무부 BIS(Entity List 등)에 등재된 기관과의 연관성
- 보안심사 결과는 다음 4단계 조치로 구분됨 :
  - 금지(Prohibited) : MFTRP 참여자 등은 원천적 수혜 금지
  - 제한 또는 완화(Mitigation required) : 위험 요소 있음 → 보완조치 조건부 수혜 가능
  - 정보제공 필요(Disclosure only) : 정보 제출 의무
  - 무조치(No action) : 위험 없음

**Tip!****DoW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DoW 연구보안 규정 관련, 국제공동연구시 유의사항 〉****1. 악성 외국 인재 프로그램(MFTRP) 참여 이력이 있다면 협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악성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s, MFTRPs) 참여자를 연구 협력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

**☒ Tip** | 과거 외국 인재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다면, 참여 시기, 내용, 현재 종료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 시 해명문서 또는 서면 설명을 미국 측에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함

**3. 연구자가 받은 모든 외국 자원, 소속, 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 자금의 출처, 인적 자원의 제공, 외국 기관 겸직, 명예직, 공동저자 활동 등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시킴
- 금전적 가치가 없어도, 연구 수행과 관련된 자원은 모두 공개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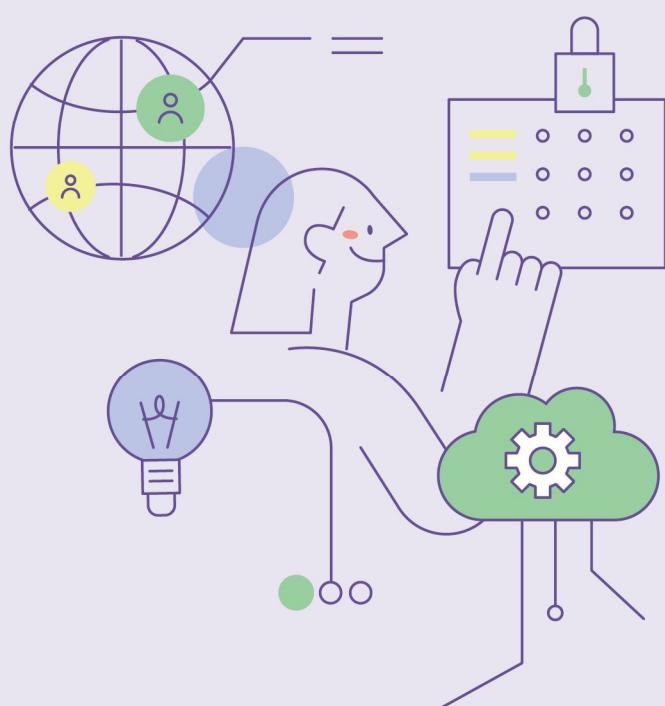
**☒ Tip** | 우리나라 연구자가 외국으로부터 인건비, 공간, 실험장비 등의 자원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그래도 궁금해요!****DoW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표 15 | DoW 연구보안 규정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 방안
과거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RP) 참여 이력이 있으면 제한되나요?	과거 MFTRP 참여자는 정보 공개 또는 협력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참여 사실과 내용을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사전 설명을 준비
국외 수혜 관련, 어떤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외국 기관 소속, 자금, 직위, 자원, 명예직 등 모든 외국 관련 사항을 포함	국외 수혜 항목을 정기적으로 갱신

# 제4장

---





## • EU 연구보안 주요 제도 · · 규정 및 유의사항

1. 개요
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 제4장. EU 연구보안 주요 제도·규정 및 유의사항

### 1 개요

#### ▶ EU 이사회의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 도출('24.5.)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4, May 23).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

##### » 개요

- EU 이사회는 2024년 5월 23일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을 채택
  - 이는 EU 경제안보전략(2023.6) 및 2024년 1월 경제안보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국제협력 확대 속에서 증가하는 연구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구속적(soft law) 정책 권고임
  - 권고안은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라는 원칙 아래 연구·혁신(R&I) 분야의 개방성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

##### » EU의 문제 인식

- EU는 국제협력과 개방성이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악의적 외국 영향력 증가로 인해 다음의 연구보안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
  - 민감 지식·기술의 비의도적·악의적 이전
  - 외국 정부 또는 외부 행위자의 개입·압력
  - EU 가치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지식 활용
  - EU 연구자의 은밀·기만적 방식의 악용 사례 증가
  - 개별 연구기관(RPO·RFO)이 스스로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 EU의 최근 대응 동향

- 최근 EU는 연구보안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음
  - 2021 Global Approach에서 개방형 국제협력과 위험 관리의 병행을 명시
  - Horizon Europe 내 보안 관련 심사·조항 명시
  - ERA 정책 어젠다에 외국 간섭 대응 포함
  - AI·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 경제안보전략(2023.6) 및 경제안보 패키지(2024.1)의 후속으로 권고안 채택(2024.5)

## ▶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의 연구보안 관련 주요 개념 정의 및 정책설계 원칙

### » 목적

- 권고안은 국제 공동 R&I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다음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회원국에 권고
  - 비의도적 기술이전
  - 외국의 불순 영향(악의적 영향력)
  - 윤리·정직성·EU 기본가치 침해

### » 연구보안 관련 주요 개념 정의

| 표 16 | 주요 개념 및 정의

개념	정의
연구보안 (Research security)	<p>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p> <p>(a) <b>(핵심 지식 및 기술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전)</b> 제3국으로의 이전을 통해 유럽연합(EU) 및 회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로, 군사 또는 정보 목적에 활용되는 사례를 포함</p> <p>(b) <b>(악의적 영향력)</b> 제3국에 의해 또는 제3국으로부터 연구에 가해지는 개입으로, 허위 정보 생성, 자기검열 유도 등을 통해 학문적 자유와 연구 무결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p> <p>(c) <b>(윤리적·무결성 위반)</b> 지식이나 기술이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된 가치와 기본권을 억압하거나 침해,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p>
연구혁신 부문 (R&I sector)	<p>EU 내의 모든 연구수행기관(RPO, 연구를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 포함), 연구지원기관(RFO) 및 연구 인프라, 그리고 연구 및 혁신 생태계 전반에 속하는 모든 행위자 포함</p> <p>본 권고의 일부 요소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기업의 연구보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참여 방식과 지원 체계가 요구됨</p>
연구수행기관 (Research performing organisation)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p>“EU 내에 설립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지원기관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개별 연구자”와 “EU 외부에 설립된 기관(기업 포함) 또는 그 기관의 자금을 지원받는 개별 연구자” 간의 협력을 포함</p> <p>EU 내에 설립되어 있더라도 유럽연합 외부로부터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관 또는 기업과의 협력 역시,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p>
위험평가 (Risk appraisal)	<p>국제 공동연구 또는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절차로,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p> <p>(a) 협력에 참여하는 EU 조직의 위험 프로파일: 조직의 강점 및 취약성,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의존성 등</p> <p>(b) 연구 및 혁신 분야의 민감도: 보안, EU 가치 및 기본권 관점에서 민감하게 간주되는 지식, 기술, 방법론, 데이터, 연구 인프라 포함 여부</p> <p>(c) 협력 상대국의 특성: 해당 국가가 EU 제재 대상인지, 법치 및 인권 보호 수준은 어떤지, 민·군 융합 전략을 추진 중인지, 학문 자유가 보장되는지 등</p> <p>(d) 협력 대상 기관의 특성: 제재 대상 여부, 군사 관련성, 연구자 및 직원의 소속, 연구결과의 최종 활용 목적에 대한 실사 필요 여부 등</p>
핵심 지식 및 기술 (Crit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p>EU 및 그 회원국의 경제 경쟁력, 사회복지,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p> <p>이는 신항 또는 혁신적 기술 분야를 포함하며, 과도한 제3국 의존이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으로 간주. 해당 분야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위험 환경을 반영해 식별되며, 이중용도(dual-use) 가능성을 지닌 연구도 포함</p>
제3국 (Third countries)	EU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를 의미

### » 국제협력과 연구보안을 병행하기 위한 정책설계 원칙

- (a) 학문적 자유와 제도적 자율성 존중
- (b)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
- (c) 비례성과 필요성에 기반한 최소한의 조치
- (d) 보호주의 회피 및 EU 핵심 가치 보호
- (e) 연구기관의 자율적 위험관리 역량 강화
- (f)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 (g) 특정 국가가 아닌 위험 기반(country-agnostic risk-based) 접근
- (h) 차별 및 낙인 방지
- (i) 정책의 유연한 조정과 지속적 학습 기반의 접근

## △ EU 회원국 대상 연구보안 권고사항

### » 정책 수립 및 지원 구조

-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정책·지침·프레임워크 수립
- 정보 제공, 교육·훈련, 위험 자문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위협 분석 역량 강화
- 연구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소통·연계 채널 구축
- 교육, 안보, 외교, 무역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 정기적인 복원력(resilience)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실시
- 민감 기술(예: AI, 양자, 반도체, 바이오) 협력 시 추가 관리·검토

### » 제도적 준수

- 수출통제 규정(EU 2021/821) 및 제재 규정의 국내 이행 강화
- 외국 간섭 대응 플랫폼(one-stop-shop)을 통한 자료 공유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 » 연구자 이동도 고려 대상

- 위험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 이동 관련 활동에도 본 권고안의 조치 적용 가능

## △ 기타 연구보안 권고사항

### » 연구기금기관(RFOs) 대상 권고

- 연구보안 요소를 과제 신청 단계부터 반영
- 고위험 과제에 대해 비례적 리스크 평가 및 보완조치 마련

- 해외 협력 MOU 체결 시 EU 가치 명시 및 위반 시 탈퇴 조항 포함
- EU 편당 기준과의 일관성 유지(이중기준 방지)
- 고위험 프로젝트의 경우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확약서 확보
-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사건 추적 및 비위 발생 시 즉각 대응

#### » 연구수행기관(RPOs) 대상 권고

- 사례 공유, 정보 교환, 동료 학습 활성화 및 내부 위험관리 체계 구축
- 해외 협력 시 사전 실사 및 MOU에 위험 요소 반영
- 외국 정부 후원 연구인력·장학생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 평가
-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및 사이버 보안 위생(cyber hygiene) 강화
- 민감 분야 연구직 채용 시 검증 체계 마련
- 연구 성과 발표 시 자금 출처 및 소속의 투명성 확보
- 민감 연구 분야에 대한 물리적·디지털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적용
- 외국산 장비·인프라에 대한 위험성 분석 수행
- 디아스포라 탄압, 자기검열 방지 및 사건 보고 체계 구축

#### » 유럽위원회(EC) 대상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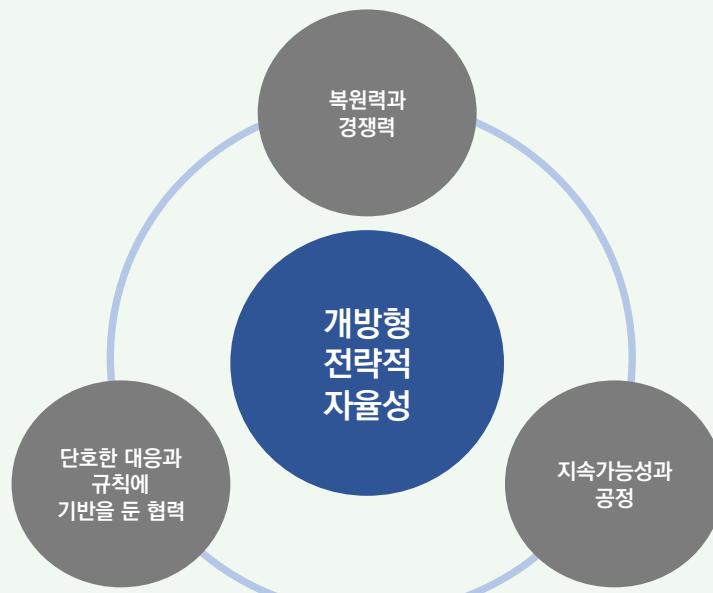
- ERA 거버넌스를 통한 본 권고안의 이행 촉진
- 외국 간섭 대응 포털(one-stop-shop) 구축 및 운영
-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연구보안 전문센터 설립 검토
- 복원력 테스트 방법론 개발 및 회원국과 공유
- 국가 프로그램과 EU 프로그램 간 위험평가의 조화
- 제3국 파트너 대상 실사용 툴킷 개발(국가 특정·국가 중립 모두 포함)
- 2년마다 연구보안 대표 컨퍼런스 개최
- 수출통제, 비자 요건, 오픈사이언스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 연구자 자금 출처와 소속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 다자간 포럼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 모색

#### ▲ 이행 및 평가 체계

- 집행위원회는 ERA 거버넌스 등을 활용해 권고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요청
- 회원국은 관련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장
-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가능

**참고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OSA)” 개념**

- (개요) EU는 연구보안에 대한 접근을 경제안보 전략과 점차 통합하고 있으며, 취약성을 줄이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OSA)**을 달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은 EU가 첨단 기술,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자 자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의 개방적 협력 관계는 지속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의미함
  - 특히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진영화되는 가운데, EU는 내부의 자립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나 공급망 안정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는 국제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조금, 자체 생산 목표 등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 (의의) 이와 같은 전략적 전환은 과거의 ‘책임 있는 국제화(Responsible Internationalisation)’에서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으로의 개념 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EU의 연구보안 접근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시사
  - 과거에는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위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이중용도 기술의 확산 및 비민주적 국가에 의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을 요구
  - 단순한 학술적 자율 거버넌스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핵심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하고 제도화된 정부 주도의 대응체계와 입법 프레임워크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



**[그림 2] EU의 통상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

※ (출처) 강유덕. (2023)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新통상규제. 통하는 세상 통상, 2023 9월호, Vol.136.

참고 유럽 경제 안보 전략(EESS,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 **(배경)** EESS는 2023년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공동으로 채택한 전략으로,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 지정학적 경제적 분열, 그리고 기술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반복되는 주제는 핵심적인 지침 원칙으로 작용하며, EU가 완전한 디커플링이나 보호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 함을 의미
 

※ EU는 내부의 자립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나 공급망 안정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는 국제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조금, 자체 생산 목표 등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 **(주요 개념)** EESS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촉진, Promote)** EU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하고, 단일 시장을 강화하며, 과학,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보호, Protect)** 기존 및 새로운 목표 지향적 수단을 통해 경제 안보 위협으로부터 EU를 보호
  - **(협력, Partner)** 우려 사항이나 공동 경제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 **(위험 범주)** EESS가 다루는 주요 위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공급망 탄력성)** 이는 공급망이 혼란에 견디고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핵심 원자재, 기술 부품 및 장비 분야에서 중요
  - **(핵심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에너지망, 운송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필수 인프라를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
  -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핵심 기술의 보호와 민감한 기술·노하우의 무단 이전 또는 상실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며,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과 지식의 특성 포함
  -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및 경제적 강압)**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 행위자에 의해 악용되거나, 특정 정책·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투자, 공급망, 금융 등 경제적 압력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

**참고 EU 외국 간섭 완화 툴박스(EU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FIMI) Toolbox)**

- **(개요)** EU FIMI Toolbox는 외부의 정보 조작과 개입(FIM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프레임워크로,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위협하는 외부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됨
- **(구성요소)** 본 툴박스는 네 가지 핵심 축에 기반
  -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 Rapid Alert System(RAS)을 통해 위협 탐지 및 데이터 공유를 수행  
※ **(세부 요소)** Common Framework & Methodology (공통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Monitoring & Detection (모니터링 및 탐지), OSINT Investigations (공개출처 정보 조사),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정보 공유 및 분석), Impact Assessment (영향 평가)
  - **회복력 구축(Resilience Building)**
    - 시민사회 강화, 독립 언론 지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을 포함  
※ **(세부 요소)** Strategic Communications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Policy Responses and Strategy (정책 대응 및 전략), Inter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내부 조직 구조), Rapid Alert System (신속 경보 시스템), Awareness Raising and Exposure (인식 제고 및 노출), Capacity Building (역량 강화), Digit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디지털·미디어·정보 리터러시), Strengthening Independent Media (독립 언론 강화), Empowering Civil Society (시민사회 역량 강화), Fact-checking (팩트체킹)
  - **차단 및 규제(Disruption & Regulation)**
    - Digital Services Act와 같은 제도를 통해 유해 정보의 확산을 기계적으로 차단 또는 제한  
※ **(세부 요소)**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서비스법),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허위정보 실천 강령), European Media Freedom Act (유럽 언론 자유법), Transparency (투명성 제고), Addressing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AI 및 신흥기술 대응), Other Legislation and Regulation (기타 입법 및 규제), Engaging with the Private Sector (민간 부문과의 협력),
  - **외교적 대응(Externeal Action)**
    - CFSP(공동외교안보정책), G7 Rapid Response Mechanism, 제재 조치 등 외교적 대응 수단 포함  
※ **(세부 요소)** Restrictive Measures (제재 조치), Political Attribution (정치적 귀속/책임 규명),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국제 규범 및 원칙), Diplomatic Responses (외교적 대응), G7 Rapid Response Mechanism and Others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 등),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국제 및 다자 협력)
  - **(기능 및 운영 방식)** 정보 공유 센터 설립, 정의·탐지·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정책 조율 및 대응 강화 등
    - **(정보 공유 센터 설립)** FIMI-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re) 설립을 통해 EU 회원국, 기관, 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 커뮤니티 구축
    - **(정의·탐지·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EEAS 내에서 체계적 정의·탐지·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Strategic Compass 2022 등을 기반으로)
    - **(정책 조율 및 대응 강화)** EU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적용, 분석 프레임 공유 등 집단 안보 수준의 대응 가능



[그림 3] EU FIMI Toolbox 개념도

※ (출처)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025). Information integrity and countering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FIMI). [https://www.eeas.europa.eu/eeas/information-integrity-and-countering-foreign-information-manipulation-interference-fimi\\_en](https://www.eeas.europa.eu/eeas/information-integrity-and-countering-foreign-information-manipulation-interference-fimi_en)

## 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 ▶ Horizon Europe의 연구보안 주요 규정

#### 1) Horizon Europe 개요

- **(프로그램 개요)** Horizon Europe (Regulation (EU) 2021/695)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의 핵심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935억 유로 규모의 예산 배정
  - 과학기술 기반 강화, 지식 확산·이전 촉진, 혁신 육성, SDGs 및 파리협정 등 글로벌 도전 대응, 유럽 연구 공간(ERA)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기둥(Pillar)으로 구성됨: ① 우수 과학(Excellent Science), ② 글로벌 도전 및 유럽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Pillar II), ③ 혁신적 유럽(Innovative Europe). 또한 “참여 확대 및 ERA 강화(Widening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ERA)”라는 포괄 영역도 포함
- ※ 우리나라 2025년부터 Pillar II에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로 참여
- 프로그램 집행은 결정(EU) 2021/764(특정프로그램)에 근거하며, Regulation (EU) 2021/819(EIT 재정 기여)와 별도 규정인 Regulation (EU) 2021/697(유럽방위기금, EDF)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이행

#### 2) Horizon Europe 연구보안 주요 규정 구조

- **(규정 개요)** Horizon Europe의 연구보안 규정 체계는 **상위 규정과 집행 문서**의 위계적 구조로 구성되며, 수혜자 간 계약 사항들을 명시한 **내부 계약 문서**도 준수 필요. 기타 **EU 일반 규정**도 적용 가능
  - **(Regulation (EU) 2021/695)** Horizon Europe의 **상위 규정**으로, 연구보안 대원칙 포함
    - ※ Horizon Europe Regulation (2021/695)에는 연구보안이라는 단어 자체(research security)가 법적 정의로 명시되어 있진 않음. 다만 security와 strategic autonomy, Union interest 보호의 문맥 속 조항들(Art. 20, 22, 40 등)이 연구보안의 법적 기반으로 작동
  - **(Work Programme)** 연도별 공모와 공통 조건에서 사례별 참여 제한(예: “MS only”) 및 추가 보안 요건을 규정
  - **(Model Grant Agreement (MGA))** 수혜자와 체결되는 보조금 계약으로, 보안(Art.13)과 연구성과 이전·라이선스 절차(Art.16~19 등) 같은 세부 의무를 명시
  - **(Programme Guide)** 신청·평가·윤리·보안 절차에 대한 운영 안내 성격의 문서
- **(상위 규정) Regulation (EU) 2021/695 제20·22·40조**는 Horizon Europe 규정에서 연구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조항으로, Horizon Europe 연구보안의 대원칙 제시
  - ※ (자료) 한-EU연구협력센터(KERC). (2024) 「유럽 연구보안 정책」, How do EU do, 2024-1.
  - **(제20조(보안))** 연구 수행 단계에서 보안 원칙 준수,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 처리 요건 (Commission Decision 2015/444\* 참조), EU 외부 협력 시 보안협정 필요성 등 규정
    - \* (자료) European Union. (2015).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on the security rules for protecting EU classified information (EUCI).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from <https://eur-lex.europa.eu/eli/dec/2015/444/oj>
  - **(제22조(참여))** 일반적 개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EU의 전략적 자산·이익·자율성·안보 관련 활동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제시(예: MS only 조건)

- **(제40조(연구성과 통제))** 연구성과(Result)의 이전·라이선스 시 사전 통보 및 타 수혜자의 이의 제기 권리, 비연합 제3국 대상 이전/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의권 규정
- **(집행 문서)** Regulation의 하위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절차 등을 제시
  -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EU 기밀정보(EUCI)의 정의, 등급, 처리 방식 규정
    - ※ Commission Decision 2015/444는 EUCI 처리 전체 프레임워크이지, Horizon Europe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Horizon Europe 과제가 Classified를 포함하면 적용되는 구조임
  -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 Regulation 제22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연도별 공모마다 구체적인 참여 제한(예: “Member States only”)이나 보안 관련 추가 조건을 부과함. 일반 규정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특정 토픽별 요건을 명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보조금 협약 (Model Grant Agreement, MGA))** 제안 단계 규칙과는 별도로, 계약상 보안 의무(Art.13)와 성과 이전 절차를 명시
    - ※ (예) 연구성과 이전 시 사전 통보(통상 45일), 타 수혜자의 이의권(통상 30일), 독점 라이선스 부여 시 접근권 포기 필요, 비연합 제3국 대상 이전/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의권
    - ※ MGA 조항 중 “성과 이전 시 사전 통보”는 특정 조건(예: non-EU entity로 technology/IP 이전) 하에서의 절차적 통제임 따라서 단순히 모든 성과 이전에 무조건 통보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님(조건부 적용)
  - **(Programme Guide)** 연도별 공모마다 구체적으로 참여 제한(예: “MS(EU 회원국) only”)이나 보안 관련 조건을 부가
- **(내부 계약 문서)** 수혜자 간 내부 계약 사항을 규율
  - **(컨소시엄 협약 (Consortium Agreement, CA))** 수혜자 간 내부 계약으로, 컨소시엄 내부의 역할, 책임, 지식재산권(IPR), 기밀정보, 데이터, 제3자 활용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을 규정하는 문서
    - ※ CA는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하는 MGA와는 별개이며, DESCA 등이 표준모델로 사용됨. 컨소시엄별로 조정·수정 가능
  - **(타 EU 일반 규정)** Horizon Europe 자체 규정과 동일 체계는 아니지만, 연구보안과 밀접히 연계되어 과제 수행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EU 규정
    - **(Regulation (EU) 2021/821 (이중용도 규제))**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수출·이전 규제
    - **(Regulation (EU) 2019/452 (FDI Screening))** EU의 안보·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4조와 Recital 10 등에서 심사 대상 요소로 핵심 인프라(에너지, 통신, 데이터 등), 핵심 및 이중용도 기술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민감정보 접근, 언론자유 보장 요소 등을 예시
      - ※ Regulation 본문(Art. 4 및 Recital 10 등)에 따르면, FDI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기술·자산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핵심 인프라) 에너지, 운송, 수도, 보건, 통신, 데이터 처리·저장, 우주·항공 인프라, 금융 인프라 등
        - ② (핵심 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반도체,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배터리), 원자력 기술, 양자 기술, 핵심 원자재, 바이오기술 등
        - ③ (민감한 데이터) EU 내 정보주체나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 접근 권한
        - ④ (언론의 자유 및 다원성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
    - **(Regulation (EU) 2016/679 (GDPR))**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 표 17 | Horizon Europe 주요 연구보안 규정 요약

구분	문서명	성격	법적 효력	적용 대상	연구보안 주요 내용
상위 규정	Regulation (EU) 2021/695	Horizon Europe 기본 규정 (프로그램 근거법)	법적 구속력 강함 (프로그램 특별 규정)	EU 회원국 (조약상 자동 적용)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ies): EU와 체결한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동일 규칙을 수용	제20조(보안), 제22조(참여 제한), 제40조 (성과 이전·라이선스) 등 연구보안의 대원칙 규정
세부 조건	Work Programme	연도별 공모 조건	Regulation 위임에 따른 집행 규정	회원국 + 준회원국 신청자: 해당 연도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 제3국 연구자: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특정 토픽에서는 “MS/AC only” 등 제한 적용	특정 토픽에서 “MS only” 등 참여 제한 및 보안 관련 추가 조건을 부과
집행 문서	Model Grant Agreement (MGA)	수혜자와 체결되는 계약서	계약상 구속력 있음	회원국 + 준회원국 수혜자: 과제에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연구기관 제3국 기관: 직접 수혜자는 아님 (협력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보안 의무(Art.13), EUCI 취급(2015/444 준수), 성과 이전 사전 통보·이의권·독점 라이선스 통제 등 규정
안내 문서	Programme Guide	신청·평가· 운영 가이드	법적 구속력 없음 (참고 문서)	회원국 + 준회원국 + 제3국 신청자 모두: 과제 제안서 제출 시 따라야 할 절차 안내	EUCI 제안서 포함 금지 안내, 평가 절차, 보안 점검(Security scrutiny) 절차 설명
연계 규정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EUCI 관련 결정	법적 구속력 있음 (위원회 결정)	EU 기관, 회원국 및 준회원국 수혜자: EUCI를 다루는 모든 연구자·기관	EUCI 정의·등급·처리 방식 규정
내부 계약 문서	Consortium Agreement(CA)	수혜자 간 내부 계약	법적 구속력 있음 (수혜자 직접 적용)	과제에 선정된 수혜자들(beneficiaries): EC와 Grant Agreement를 체결한 모든 참여기관 간 적용	수혜기관 간 역할, 책임, 재정관리, 자식재산, 기밀정보 보호, 데이터 접근권한, 수출통제 등 내부 보안관리 절차 규정 ※ DESCA를 표준모델로 사용
타 EU 규정 (병행 적용)	①Regulation (EU) 2021/821 (이중용도) ②Regulation (EU) 2019/452 (FDI Screening) ③Regulation (EU) 2016/679 (GDPR)	EU 전역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법적 구속력 강함 (EU 회원국 직접 적용)	회원국: 자동 적용 준회원국: 자국 법으로 자동 적용되진 않음. 그러나 Horizon Europe 과제 참여 시, 계약·협력 관계를 통해 사실상 준수 의무 발생 제3국: 원칙적 적용 없음. 다만 GDPR의 경우,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3국 연구자에게도 역외 적용(Art.3)	이중용도 품목 이전 규제, 전략적 기술·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개인 데이터 처리 규율

## 1 (상위 규정) Horizon Europe 규정(EU) 2021/695\*의 연구보안 주요 조항

\*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참여 및 확산에 대한 규칙을 명시함

- Horizon Europe 규정(EU) 2021/695은 연구보안과 관련하여 제20조(보안 요건), 제22조(참여 가능한 법인), 제40조(이전 및 라이선스)에서 주요 규율을 두고 있음. 개방적 협력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기술과 연구성과의 무단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함

| 표 18 | Horizon Europe 규정(EU) 2021/695의 연구보안 주요 조항 요약 (제20, 22, 40조)

조	항	규정 사항	주요 내용	연구자 유의사항
제20조 (보안)	(1)~ (8)	보안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혜자는 Horizon Europe에서 적용되는 보안 규칙 준수 (Reg. 2021/695, Art.20)</li> <li>제안서에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 포함 불가</li> <li>EU 외 제3국에서 EUCI 취급 시 EU-해당국 간 보안협정(SOIA) 필요</li> <li>미준수 시 활동 제한·종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우리나라는 EU와 포괄적 SOI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EUCI를 직접 취급하는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됨</li> <li>EUCI 관련 연구는 EU 또는 EU-SOIA 체결국의 승인시설을 보유한 파트너에게만 배정 가능</li> <li>제안 단계에서 데이터 성격(공개 가능/민감 여부) 명확히 설명 필요</li> </ul>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1)	일반 참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체의 관할권에 관계없이 참여에 대한 개방성 원칙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는 Pillar II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EU 회원국과 유사한 자격 보유(단, MS only 등 제한·추가요건은 공모별 확인)</li> <li>단, 지금 수혜는 공모별 제한 조건에 따름</li> </ul>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2)	세부 조건 및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상황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예: 안보·정책적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 준비 시 General Annexes 및 공모에서 세부 조건 확인 필요</li> </ul>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5)	전략적 이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전략자산·안보 관련 주제에서는 참여를 EU 회원국 또는 특정국으로 제한 가능</li> <li>비연합 제3국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은 배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도 준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특정 공모에서 “MS only” 제한 시 참여 불가</li> <li>사전에 공모 조건 확인 필요</li> </ul>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6)	추가 적격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요구·과제 성격·법인 형태 등에 따라 추가 적격성 요구 가능 (예: “EU 내 연구시설 보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 단계에서 Eligibility Criteria 세부 확인 필요</li> <li>필요시 시설 요구·법인 형태 등 실무적 대응</li> </ul>
제40조 (이전 및 라이선스)	(1)	결과 소유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혜자는 결과(Result) 소유권을 이전 가능</li> <li>단, 기존 협정상 의무(접근권 보장 등)는 새소유자에게 승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이전 시 MGA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함</li> <li>후속 이전도 동일 규칙 적용</li> </ul>
제40조 (이전 및 라이선스)	(2)	다른 수혜자의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권 이전을 의도하는 수혜자는 접근 권한을 가진 다른 수혜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함</li> <li>다른 수혜자는 이전이 자신의 접근 권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전 진행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이전 전에 컨소시엄 내 협의 필수</li> <li>연구 파트너와 사전 소통하지 않으면 이전 차단 위험</li> </ul>
제40조 (이전 및 라이선스)	(3)	라이선스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혜자는 결과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가능(독점적 라이선스 포함)</li> <li>단, 독점 라이선스의 경우 접근권을 가진 수혜자 모두가 권리 포기를 동의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점 라이선스 협상 전 모든 파트너 동의 확보 필요</li> </ul>
제40조 (이전 및 라이선스)	(4)	위원회/자금 지원 기관의 이의 제기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협정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 자금 지원 기관이 결과의 소유권 이전 또는 독점적 라이선스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포함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혜자가 EU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li> <li>이전/라이선스가 비연합 제3국에 설립된 법인체로 이루어지는 경우</li> <li>이전/라이선스가 연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는 준회원국(AC)이므로 직접적 제한 없음</li> <li>단, 우리나라 연구자가 비연합 제3국 기업과 후속 거래 시 집행위 이의 가능</li> </ul>

## 1) 제20조: 보안 (Security)

- **(핵심 원칙)** Horizon Europe 연구는 적용 가능한 보안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0(1)–(3)
- **(제안서에 EU CI 포함 금지)** 제20조는 Horizon Europe 연구가 “적용 가능한 보안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 \* 이를 통해 실무 지침(MGA)에서 “승인된 보안 시스템에서만 처리 가능한 EU CI를 Funding & Tenders Portal(비승인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 된다고 명시
- **(Regulation (EU) 2021/695 제20조)** “Horizon Europe 연구는 적용 가능한 보안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제3조)** “적용 가능한 보안 규칙”에는 EU 집행위원회(EU, Euratom) 2015/444가 포함되는데, 동 결정은 EU CI를 승인·인가(accredited)된 보안 시스템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
- **(MGA, “Security”섹션)** Funding & Tenders Portal은 승인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제안서에 EU CI 포함 불가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0(1),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Art.3, 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Programme Guide (2023), Section “Security”

### 참고 EU CI(EU Classified Information) 정의 및 보안등급 구분

- **(EUCI 정의)** 유럽연합 기밀정보로, 무단 공개될 경우 EU나 회원국의 안보와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보안등급 구분)** EU CI의 보안등급은 네 단계로 구분됨  
※ (근거)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Annex I
  - **(TOP SECRET)** 극도로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 **(SECRET)**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 **(CONFIDENTIAL)** 피해 발생 가능
  - **(RESTRICTED)**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발생 가능

- **(제한 사항)** EU 외부에서 EU CI를 다루려면 EU와 해당국 간 보안협정(Security Agreement)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EU와 보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구자가 EU CI를 직접 취급할 수 없음
  - 따라서 EU CI 관련 연구는 EU 회원국 또는 EU와 보안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행기관에 주로 배정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0(1);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Art.13
- **(불이행 시 제재)** 보안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제안이 거부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활동이 중단·종료 될 수 있음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0(8)

참고 Horizon Europe 규정 제20조(보안) 전문 번역

제20조 (보안)

1. 본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는 조치는 적용 가능한 보안 규칙, 특히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방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EU 및 국내법 준수가 포함된다. EU 역외에서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EU와 연구가 수행될 제3국 간에 보안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제안서에는 보안 문제를 식별하고 관련 연합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안 자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적절한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 자금 조달 기관은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제안에 대해 보안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4. 적절한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는 조치는 결정(EU, Euratom) 2015/444 및 이를 시행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소송에 참여하는 법인은 소송으로 인해 사용되거나 생성된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활동 개시 전에 관련 국가 안보 당국으로부터 개인 보안 허가 또는 시설 보안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기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를 임명하기 전에 적절한 보안 허가가 필요하다.
7.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 자금 조달 기관은 보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본 조에 따른 보안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언제든지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2)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Entities eligible to participate)

- **(핵심 원칙)** Horizon Europe은 국제적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여, 설립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참여를 허용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2(1)–(4)
-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제한)** EU의 전략적 자산·이익·안보와 관련된 경우, 특정 과제는 EU 회원국 또는 지정된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 법인에 한해 참여 가능함. 또한, 비연합 제3국(Non-associated third country)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은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2(5)
- **(추가 자격 기준 부과 가능성)** 특정 정책 목적이나 과제 성격에 따라, EU는 “EU 내 연구시설 보유” 등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22(6)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이므로 원칙적으로 EU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을 가짐. 다만, 특정 공모에서 “MS only” 조건이 붙으면 참여 불가함
- **(실제 제한 사례)** 2021–2022년 작업프로그램에서는 49개 주제(전체 예산의 약 4%), 2023–2024년에서는 31개 주제(약 3.5%)가 참여 제한을 받았으며, 주로 양자기술, 핵심 원자재, 우주 분야임  
※ (근거) 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1–2022, 2023–2024

**참고 Horizon Europe 규정 제22조(참여 가능한 법인) 전문 번역**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1. 설립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에 명시된 조건이 작업 프로그램이나 제안 요청에 명시된 조건과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2. 작업 프로그램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법인은 컨소시엄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 (a) 회원국에 설립된 최소 하나의 독립 법인 및
  - (b) 각각 다른 회원국 또는 연합국에 설립된 최소 두 개의 다른 독립 법인
3. ERC 프런티어 연구 활동, EIC 활동, 훈련 및 이동 활동 또는 프로그램 공동 기금 활동은 하나 이상의 법인이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 중 하나는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설립되어야 한다.
4. 조정 및 지원 조치는 회원국, 관련 국가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제3국에 설립된 하나 이상의 법인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5. 연합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의 경우, 작업 프로그램은 참여가 회원국에만 설립된 법인 또는 회원국 외에 지정된 준회원국 또는 기타 제3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EEA 회원국인 준회원국에 설립된 법인의 참여 제한은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연합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익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정당화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작업 프로그램은 연합 또는 준회원국에 설립된 법인 중 비연합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 또는 비연합 제3국의 법인의 참여를 개별 제안 요청에서 제외하거나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6. 적절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프로그램은 법인의 수, 법인의 유형 및 설립 장소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책 요건이나 조치의 성격 및 목표를 고려하기 위해 2항부터 5항까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적격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7. 제15조(5)에 따른 금액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소송의 경우, 그 참여는 위임 관리 기관의 관할권 내에 설립된 단일 법인으로 제한되며, 해당 관리 기관과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경우 JRC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9. JRC, 유럽의 국제 연구 기관 및 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소송에 참여하는 다른 법인이 설립된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10. ERC 프런티어 연구 활동, 훈련 및 이동 활동,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에 규정된 경우,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는 해당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는 국제 유럽 연구 기관을 제외한 국제기구는 관련 국가가 아닌 제3국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제40조: 결과의 이전 및 라이선싱 (Transfer and licensing of results)**

- **(소유권 이전 가능)** 수혜자는 연구결과(Result)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 단, 협정에서 규정된 의무(접근권 보장 등)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야 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40(1)

- **(다른 수혜자의 이의 제기권)** 소유권 이전을 의도하는 수혜자는, 해당 결과에 접근권을 가진 다른 수혜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함. 다른 수혜자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될 때까지 이전은 불가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40(2)
- **(라이선스 부여 규정)** 수혜자는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단,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모든 파트너가 접근권 포기에 동의해야 함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40(3)
- **(집행위·자금기관의 이의 제기권)** EU 자금으로 생성된 결과가 비연합 제3국 법인으로 이전되거나 독점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그리고 그 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나 자금 지원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근거) Regulation (EU) 2021/695, Art.40(4)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이므로 직접적 제한은 없으나, 우리나라 연구자가 성과를 제3국 기업과 거래할 경우, EU가 “EU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참고 Horizon Europe 규정 제40조(이전 및 라이선싱) 전문 번역

##### 제40조 (이전 및 라이선싱)

1. 수혜자는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수혜자는 자신의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적용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후의 모든 이전 시 자신의 의무를 이전할 의무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2. 관계사를 포함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3자에 대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수혜자는 결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여전히 보유한 다른 수혜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에는 수혜자가 자신의 접근 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3자(계열사 포함)를 위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다른 수혜자가 결과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양도가 자신의 접근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수혜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보조금 지급 계약에는 이와 관련된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수혜자는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결과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배타적 이용권이 포함된다. 결과에 대한 배타적 라이선스는 관련된 다른 모든 수혜자가 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계약에는 위원회 또는 관련 자금 조달 기관이 다음의 경우 결과 소유권 이전 또는 결과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a) 결과를 창출한 수혜자들은 연합의 자금을 받았음
  - (b) 양도 또는 라이센스가 비연합 제3국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경우
  - (c) 해당 양도나 허가가 연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이의 제기권이 규정된 경우, 수혜자는 결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결과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는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 중인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이전 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권을 포기할 수 있다.

## 2 (집행 문서) Work Programme, MGA 및 Programme Guide

- **(개요)** Regulation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대원칙이라면, 집행 문서들은 세부 사항을 규정함. Work Programme은 연도·토픽별 구체 조건을 제시하고, Model Grant Agreement(MGA)는 계약상 의무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하며, Programme Guide는 연구자 대상 실무 안내서의 역할을 함
- **(Work Programme)** Regulation에 근거하여 매년(또는 다년 주기별로) 채택되는 집행 문서로서, 연도·클러스터·토픽별 구체적 공모 조건을 규정. 이는 법적 규범인 Regulation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각 공모에 직접 적용되는 실질적 기준을 제시
- **(Model Grant Agreement (MGA))** Horizon Europe 과제 수행을 위해 체결되는 표준 계약 문서로서 Regulation과 Work Programme의 원칙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상 의무와 절차로 전환. 개별 과제의 모든 수혜자(beneficiaries)는 MGA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부담
- **(Programme Guide)** Regulation과 MGA의 내용을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공식 실무 안내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C 및 집행기관의 공식 해석 및 행정 관행 반영

| 표 19 | 상위 규정(Regulation)과 집행 문서 간 관계

Regulation (EU) 2021/695 조항	Work Programme	Model Grant Agreement (MGA)	Programme Guide
제20조 (보안)	특정 공모에 대해 보안 자가점검, 보안 심사 및 참여 제한 조건 부과 가능	보안·기밀성·EUCI 취급 의무 및 보안 심사 결과를 계약상 의무로 반영	EUCI 포함 금지 원칙, 보안 자가점검 및 security scrutiny 절차를 연구자 관점에서 설명
제22조 (참여 가능한 법인)	토픽별 참여 제한(MS only, MS/AC only 등) 명시, 세부 조건은 General Annexes에 포함	Work Programme에서 정한 적격성 조건을 충족한 수혜자만 계약 체결	회원국·준회원국·제3국의 참여 및 자격 차이를 신청자 관점에서 설명
제38~41조 (연구성과 및 EU 이익 보호)	특정 공모에서 성과 활용·이전·라이선스에 대한 제한 또는 조건 부과 가능	결과 소유, 활용, 이전, 라이선스, 확산 및 사전 통보·이의 제기 절차를 계약상 의무로 규정	기술이전·라이선스 및 사전 통보·이의권 요건을 실무적으로 해설

### 1) Work Programme

- **(개요)** Work Programme은 Horizon Europe의 연도별 과제 공모를 구체화하는 실행 문서임.
  -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며 공모(Topic/Call)별 조건을 정하며, Regulation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공모에 대해 참여 제한(eligibility/conditions)이나 보안 관련 절차(자가점검·정밀심사 등)를 공모 조건으로 반영 가능
  - General Annexes는 Work Programme에 포함되어 공모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조건(평가, 윤리, 보안, 분류정보 취급 등)을 제시
- **(주요 연구보안 사항)**
  - **(국제 개방성 원칙)** Horizon Europe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법인의 참여 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공모별로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안 조건: Reg. 제20조 연계)** Regulation은 필요 시 제안서 단계에서 security self-assessment를 요구하고 보안 이슈가 있는 제안서에 대해 보안 점검(security scrutiny)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데, Work Programme/General Annexes는 이를 공모 조건 및 세부 절차로 구체화

- (예외적 제한: Reg. 제22조(5)(6) 체계) EU의 전략적 이익·자율성·안보 보호 등을 이유로, Work Programme/Call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제한 유형) ①(MS only) EU 회원국 기관만 참여 가능, ②(MS/AC only)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AC) 기관만 참여 가능 등 추가 요건 부과 가능
- (성과 이전 조건: Reg. 제40조 연계) 성과의 이전/라이선스가 EU의 이익·안보·경쟁력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모 조건 및 계약(MGA/특정 규칙)에서 통지·이의 절차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Pillar II에 준회원국(AC)의 지위가 적용되어 해당 범위 공모에서는 EU 회원국 수준의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나, 특정 공모에 “MS only” 제한이 붙을 경우 참여 불가

## 2) Model Grant Agreement (MGA)

- (개요) Horizon Europe 선정 이후 수혜자와 EU(또는 자금지원기관) 간에 체결되는 표준 계약서
  - Regulation 및 공모 조건(Work Programme/General Annexes)을 계약상 의무·절차로 구체화
- (주요 연구보안 사항)
  - (보안 및 EUCL: MGA Art. 13) 수혜자는 보안·기밀 및 EU Classified Information(EUCL)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EUCL 취급 시 Commission Decision 2015/444 등 적용 법규에 따라 처리
  - (오픈사이언스·DMP·FAIR 등) 디지털 연구데이터에 대해 DMP 수립·갱신, 신뢰 저장소(trusted repository) 기탁, 가능한 범위의 공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 및 정당화 요건 등이 MGA에 의해 요구
  - (성과 이전·독점 라이선스 및 EU 이익 보호) 수혜자가 결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는 경우, 특히 비EU 비 준회원국(non-associated) 소재 법인으로의 이전/독점 라이선스는 EU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자금지원기관이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object) 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조건부 승인 등 절차 규정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 기관이 해당 공모에서 수혜자가 되는 경우, MGA를 체결하며 보안, 오픈사이언스, 성과 관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부담(단, 공모별 추가 조건 등은 Work Programme에 따름)

## 3) Programme Guide

- (개요) Horizon Europe 참여자를 위한 운영 안내 문서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제안서 작성·제출·평가·보안 정밀심사 등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참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
- (주요 연구보안 사항)
  - (제안서에 EUCL 기재 금지) 제안서에는 EUCL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제시
  - (보안 검토 절차 안내) 연구윤리 검토, 연구보안 점검,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필수 검토 항목 안내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제안서 준비·제출 단계에서 Programme Guide가 안내하는 절차·작성 방식 등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 3 (내부 계약 문서) Consortium Agreement(CA)

#### 1) Consortium Agreement

- **(개요)** Horizon Europe 과제에 참여하는 수혜기관(beneficiaries)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내부 계약(internal agreement)으로, EU 집행위원회(또는 집행기관)와 수혜기관들이 체결하는 Grant Agreement/Model Grant Agreement(MGA)를 컨소시엄 내부 운영 규칙으로 구체화·보완하는 계약문서
  - EU 규정(Regulation)이나 MGA와 달리,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직접 구속력을 갖는 민사계약임
  - 통상 DESCA(Development of a Simplified Consortium Agreement) 등 널리 사용되는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컨소시엄 합의로 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보안 사항) DESCA 2.0 기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컨소시엄 내 수혜기관 간 검토를 통해 수정 가능**
  - **(Section 10, 기밀정보 보호)** ①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confidential/sensitive”로 표시(또는 구두 공개 후 서면 확인)할 수 있으며, ②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공개 금지, 프로젝트 목적 외 사용 금지, 내부 공유는 need-to-know 원칙을 전제로 하며, ③ 직원 및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밀유지 의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④ 해당 기밀유지 의무는 통상 최종 지급(final payment) 후 일정 기간(예: 5년) 지속되며, ⑤ 요청 시 기밀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가 요구될 수 있음
  - **(Section 4.3, 제3자 참여)** ① 하도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3자를 프로젝트에 관여시키더라도 해당 Party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수행과 제3자의 CA/Grant Agreement 준수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 ② 제3자 관여는 다른 Parties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③ Grant Agreement/MGA에서 감사·검증·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3자와의 계약에서도 그러한 의무가 충족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조항 반영 필요
  - **(Section 4.4, 데이터 보호)** ①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Regulation (EU) 2016/679) 및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필요 시 Data processing, Data sharing, Joint controller agreement 등 별도 계약을 데이터 처리·공유 전에 체결할 수 있음
  - **(Section 5.5, 수출통제 — Option)** ① 수출입 법령·규정 또는 허가(연장 포함) 지연으로 인해 의무 이행이 제한되는 경우, 합리적 노력과 적시 신청을 전제로 CA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옵션 조항이 포함될 수 있고, ② 당사자는 해당 제한을 General Assembly에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제한의 영향이 6주 내 해소되지 않으면 업무 재배치 여부를 General Assembly가 결정할 수 있음
  - **(Section 8, 연구성과(Result) 관련 조항)** ① 결과(Results)는 원칙적으로 생성한 Party가 소유하고, ② 소유권 이전 시 Grant Agreement의 통지·이의절차를 따르되, ③ 사전에 특정 제3자를 “간소화된 이전(simplified transfer)” 대상으로 목록(Attachment)에 등재하면, 다른 Parties가 사전 통지·이의권을 포기(waive)하는 구조를 둘 수 있음
  - **(Section 4.2, 위반 및 Defaulting Party)** 의무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General Assembly가 Defaulting Party로 선언하고, 업무 재배치·참여 종료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EEAB) 및 NDA(Attachment — Option))** EEAB 설치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와의 비밀유지계약(NDA) 템플릿을 Attachment로 두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Horizon Europe 과제에서 beneficiary 등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CA에 서명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CA 조항은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님. 다만 CA는 DESCA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 Grant Agreement/MGA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컨소시엄 합의로 수정·구체화될 수 있음

## 4 (타 EU 규정) 이중용도 규제, FDI Screening Regulation, GDPR

### 1) Regulation (EU) 2021/821 — 이중용도 규제 (Dual-Use Regulation)

- **(개요)** 이중용도 품목(민수·군수 겸용 기술·장비·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중개, 경유, 기술 지원 및 이전을 통제하는 법령
  - Horizon Europe Regulation의 일부는 아니지만, 전략 기술·민감 기술의 국제 협력·성과 이전 시 병행 적용됨
- **(주요 내용)**
  - **(규제 대상)** EU 이중용도 통제목록(Annex I)에 포함된 품목·소프트웨어·기술
  - **(비가시적 이전)** 전자적 전송(이메일, 클라우드 업로드 등)도 수출로 간주되어 통제 대상
  - **(허가 요건)** 연구자가 EU 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3국 파트너에게 이전하려면, 해당 기술이 목록에 포함된 경우 회원국 당국의 사전 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 **(적용 기술 분야 예시)** 정보보안(암호화), 전자·컴퓨터·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우주, 핵·화학·생명공학, 첨단 소재
  - **(포괄통제(catch-all))**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감시(cyber-surveillance) 품목 등 EU 인권·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 통제 가능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본 규정이 국내법처럼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Horizon Europe 과제 등에서 EU 파트너가 이중용도 기술을 한국 측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EU 수출통제법상 허가 의무가 EU 파트너에게 적용될 수 있음

### 2) Regulation (EU) 2019/452 — FDI Screening Regulation

- **(개요)** EU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EU의 안보·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
  - 연구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EU 전략 기술·자산이 제3국 기업·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 **(주요 내용)**
  - **(회원국 권한)** 최종 심사·승인 권한은 EU 회원국에 있음
  - **(집행위 역할)** 집행위는 회원국 심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최대한 고려해야 함
  - **(심사 고려 요소)** ①핵심 인프라(에너지, 운송, 수도, 보건,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저장, 우주·방위, 금융, 선거 인프라 등), ②핵심 기술(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저장, 원자력, 양자, 나노, 바이오기술 등), ③핵심 투입자(에너지·원자재), ④민감한 정보(개인 데이터 포함) 접근, ⑤언론의 자유와 다원성 보호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 기관 또는 기업이 EU 내 연구·기술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지분 취득, 인수·합병,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EU 기준상 제3국 투자자로 분류되므로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FDI 심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 3) Regulation (EU) 2016/679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개요)** GDPR은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및 이동에 관한 기본 규범을 정한 일반 규정
  - Horizon Europe Regulation과는 별도의 법령이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연구 과제에는 병행 적용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 원칙)** ①적법성·공정성·투명성, ②목적 제한, ③데이터 최소화, ④정확성, ⑤보관 제한, ⑥무결성·기밀성, ⑦책임성(accountability)

- **(역외 적용)** EU 역외 기관이라 하더라도, EU 내 설립된 활동의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내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GDPR이 적용될 수 있음
- **(제재)**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 가능
- **(Horizon Europe 관련 문서 반영)** Horizon Europe Model Grant Agreement(MGA) Article 15 및 EU 집행위원회의 Ethics and Data Protection 관련 가이드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GDPR이 국내법처럼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역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GDPR이 직접 적용될 수 있음

#### 참고 보안 심사(Security Scrutiny) 절차

##### • (적용 대상)

- Horizon Europe 과제 중 민감·전략기술 또는 분류정보(EUCI)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제안(예: 양자·우주, 방위 연계, 핵심 인프라, 이중용도 가능 연구 등)  
※ 보안 민감 토픽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제안 평가 과정에서 screening 결과 보안 이슈 우려가 식별된 제안은 Security scrutiny 대상이 될 수 있음
- 집행위원회 또는 집행기관(REA, HaDEA 등)이 제안 단계에서 보안 관련성을 식별한 경우 보안 심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 (단계별 절차)

###### ① Security self-assessment (신청자 자가점검)

- 보안 이슈가 있는 제안은 Security Issues Table을 작성하여 자가점검을 수행
- 제안 단계에서는 EU 분류정보(EUCI)를 취급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으며, 민감 데이터 또는 이중용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식별

###### ② Security pre-screening (부처/집행기관 1차 사전검토)

- 집행위원회 또는 집행기관(granting authority)이 신청자의 자가점검 내용과 제안서를 1차적으로 검토
- 보안 이슈가 의심되는 경우, 제안은 다음 단계로 이관될 수 있음

###### ③ Security screening (집행위원회 판단 단계)

- 집행위원회는 pre-screening 결과를 바탕으로 Security scrutiny 실시 여부를 결정함.
- 보안 성격에 따라 관련 집행위 부서(DG HOME 등)가 관여할 수 있음

###### ④ Security scrutiny (국가 보안전문가 그룹 정밀심사)

- 집행위원회가 주재하는 Security Scrutiny Group이 정밀 심사를 수행함.
- 해당 그룹은 회원국이 지명한 국가 보안전문가(NSA 등)로 구성되며, 제안의 민감성, EUCI 사용 또는 생성 가능성, 위험 완화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안요건(Security requirements)이 권고될 수 있음

##### •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Regulation (EU) 2021/695 제20조 및 Horizon Europe Programme Guide의 보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Security scrutiny 결과 수혜자에게 추가적인 보안요건이 부과될 수 있음
  - 전달물 분류, 데이터 접근 제한,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계획 제출, 보안인가 취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수혜자가 보안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과제 제한, 과제 종료 또는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Tip!****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Horizon Europe 규정(EU) 2021/695 관련 유의사항 〉****1. Horizon Europe 제안서에는 원칙적으로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을 포함할 수 없음을 유의**

- EUCI를 다루는 연구는 별도의 보안 절차와 보안협정(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SOIA)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EU와 일반적 SOIA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 내에서 EUCI를 직접 취급하는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
- 다만 EUCI가 아닌 민감 데이터·기술이라 하더라도, 안보·이중용도 위험이 있는 경우 보안 심사(Security scrutiny)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안 단계에서 데이터의 성격·출처·사용 범위 및 보호조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 Tip** | 제안서 작성 시 “공개 가능 데이터(public domain data)”임을 명확히 강조하면 불필요한 보안심사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단, 이는 제도적 “면제”가 아니라 평가·심사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

**2. EU는 연합의 전략적 자산·이익·안보와 관련된 특정 분야(예: 양자, 우주, 핵심 원자재 등)에서 ‘MS only’ 또는 ‘MS + 지정된 AC/제3국’ 방식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지**

- 우리나라는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지만, 민감 토픽에서는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허용되더라도 특별 조건이 붙을 수 있음
- ☒ Tip** | 제안서 준비 전 해당 공모 문서에서 제22조(5)(6) 적용 여부와 참여 제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감 분야 참여를 희망한다면 EU 내 파트너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역할·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3. 우리나라 연구자가 Horizon Europe 과제에서 생성된 결과(Result)를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는, 규정 제40조 준수 필요**

- 연구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다른 수혜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과에 접근권을 가진 수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권을 지님
  - 연구성과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다른 수혜자의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혜자의 접근권 포기(waiver)에 대한 동의가 요구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또는 독점 라이선스가 비연합·비 준회원국(Non-associated third country)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EU의 전략적 이익 또는 안보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Tip** | 연구자가 국내 기업·기관과 후속 기술이전·라이선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제안서 단계에서 EU 파트너와 공유하고 컨소시엄 합의서(Consortium Agreement)에 관련 절차와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Horizon Europe 집행 문서 관련 유의사항 〉

#### 1. 과제 제안 전 해당 연도 Work Programme과 General Annexes를 검토하여 참여 조건 확인

- 전략기술·안보 관련 분야는 참여 제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서 사전 점검 권장
  - 우리나라는 Pillar II에 준회원국(AC)으로 참여하여 EU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으나, 특정 공모에 “MS only” 제한이 붙을 경우 참여 불가
  - 보안 심사(Security scrutiny) 등 상위 규정(제20조, 제22조, 제40조)에 따른 요구사항이 Work Programme의 참여 조건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유의
- Tip** | 공모 문서의 “Eligibility/Admissibility conditions” 및 “Security considerations” 항목을 확인하여, 참여 제한 여부를 사전에 판단 가능

#### 2. MGA 보안·성과 관련 조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후속 계약(예: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

- 우리나라는 Pillar II에 준회원국(AC)으로 참여하여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MGA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보안·성과 관리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
  - 기술이전·라이선스 계획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내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비연합 제3국 기업과의 거래에는 집행위의 이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Tip** | 필요시 연구결과의 소유권·접근권·라이선스 조항을 숙지한 뒤, 컨소시엄 합의서(Consortium Agreement)와 후속 기술이전계약에 동일 조항을 반영 필요

#### 3. Programme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Regulation과 MGA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준수 필요

- 제안서에 민감 정보나 EUCI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구과제 수행 중 보안 심사(Security scrutiny)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 고려 필요
- Tip** | 제안서 작성 시 “Ethics and Security Issues” 항목에서 보안 관련 사항을 누락할 경우, 이후 Security scrutiny로 회부되어 평가 또는 협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 〈Consortium Agreement 관련 유의사항〉

#### 1. Consortium Agreement는 수혜자 간 내부 계약으로, 철저한 검토 필요

- Consortium Agreement(CA)는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하는 MGA(보조금계약)와는 별개로, 컨소시엄 내부의 역할·책임·지식재산권·비밀정보·데이터·제3자 관리 등을 규율하는 핵심 문서임
  - DESCA는 대표적인 CA 표준모델로, EU의 호라이즌 과제에서 널리 사용되나 컨소시엄별 수정·추가가 가능
- Tip** | 제안 준비 초기 단계부터 IP 관리, 기밀정보, 데이터 공유, 제3자 관리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입장을 EU 파트너와 사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 〈 타 EU 규정 관련 유의사항 〉

#### 1. EU 이중용도 규제 관련, EU 파트너와 협력 시 연구 주제가 이중용도 기술에 해당할 경우 협력·성과 이전이 지연·

##### 제약될 수 있음을 유의

-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Horizon Europe 과제에서 EU 파트너가 이중용도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에 대해 EU 수출통제 허가 의무가 EU 파트너에게 적용됨을 유의

**Tip** | 연구 착수 전, 해당 기술이 Annex I 또는 포괄통제 대상인지 여부를 EU 파트너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2. FDI 스크리닝 관련, Horizon Europe 과제 결과를 활용해 EU 내 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 해당 기술이 FDI 심사

##### 대상인지 사전 확인 필요

- EU FDI 스크리닝 규정은 외국인 투자가 EU의 안보·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 위한 회원국 중심의 협력 메커니즘이
- 대한민국 기관이 EU 내 기업·연구기관에 투자하거나, 과제 결과를 활용한 합작·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FDI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Tip** | EU 내 투자·합작을 계획할 경우, 사전에 EU 파트너와 투자 심사 절차 적용 가능성과 논의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자문 또는 TTO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3. EU 연구 파트너·참여자의 개인정보(예: 임상시험, 설문 데이터)를 다룰 경우 GDPR 준수 필요

- 대한민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GDPR이 국내법처럼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나,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역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DPR이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
-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위·보관 기간을 제안서 및 데이터 관리 계획(DMP)에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 지정, 데이터 암호화, EU 파트너와의 계약적 보호조치(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등) 마련 가능

**Tip** | 제안서와 DMP에 “개인정보는 GDPR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익명화·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필요 시 EU 파트너와 사전에 SCC 체결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그래도 궁금해요!

##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표 20 | Horizon Europe 연구보안 주요 규정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Horizon Europe 제안서에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을 포함할 수 있나요?	EUCI를 다루는 연구는 별도의 보안협정(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SOIA)과 절차가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EU와 일반적 SOIA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 내에서 EUCI를 직접 취급하는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임	EUCI 불포함 시 제안서에 데이터가 “공개 가능 데이터(public domain data)”임을 명확히 강조해 불필요한 보안심사 위험을 줄이고, 민감 데이터는 출처, 사용 범위 및 보호조치 등을 상세히 기술
우리나라 연구자는 전략적 기술 분야(예: 양자, 우주, 핵심 원자재 등) 공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준회원국으로 EU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지만, EU는 전략적 자산·이익·안보 관련 토픽에 대해 “MS only” 또는 “MS/AC only”와 같은 참여 제한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민감 토픽에서는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특별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제안서 준비 전 공모 문서의 제22조(5)(6) 적용 여부 및 참여 제한 문구를 확인하고, 민감 분야 참여를 희망한다면 EU 내 파트너와 사전 협의해 역할·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
연구성과(Result)를 국내 기업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나요?	<b>(소유권 이전 시)</b> 다른 수혜자에게 사전 통보, 접근권을 가진 수혜자의 이의 제기권 존재(규정 제40조2). <b>(독점 라이선스 부여 시)</b> 모든 수혜자의 접근권 포기 동의 필요(규정 제40조3). <b>(비연합 제3국 기관에 결과를 이전 또는 라이선스할 경우)</b> EU 집행위원회가 EU 이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40조4).	우리나라 기업과의 후속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획은 제안서 단계에서 EU 파트너와 공유하고, 컨소시엄 합의서에 반영을 권장
MGA(Grant Agreement)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IPR), 접근권(Access Rights), 성과 활용·확산·공개 의무, 안보·부정한 외국 영향, 컨소시엄 합의서(CA)와의 정합성 확보 여부 등	MGA의 소유권·접근권·라이선스 조항을 숙지한 뒤, 컨소시엄 합의서와 후속 기술이전계약에 동일하게 반영 ※ 한-EU연구협력센터(KERC)에서 발간한 EU 그랜트 협약서 주석판 한글판 참고 가능
Consortium Agreement(CA)는 꼭 체결해야 하나요?	CA는 컨소시엄 내부의 역할, 책임, 지식재산권(IPR), 기밀정보, 데이터, 제3자 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부 계약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체결하는 MGA와는 별개임. DESC가 표준모델로 널리 활용되며,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수혜자로 참여할 경우 EU 파트너와 동일하게 CA 체결이 요구됨	제안 단계 초기부터 EU 파트너와 CA 주요 조항(지식재산권, 기밀정보, 데이터 공유, 제3자 관리 등)에 관한 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성과 이전·라이선스·국내 기업 협력 등)은 제안서 단계에서 미리 공유하여 CA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장
EU 연구 파트너의 개인정보(예: 임상 데이터)를 다뤄도 되나요?	GDPR은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EU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GDPR을 반드시 준수	제안서 및 데이터 관리계획(DMP)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위·보관 기간을 명확히 기재. 필요시 EU 파트너와는 SCC, DPA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마련

### 참고 Horizon Europe 연구보안 유의사항 관련 유경험자 인터뷰 결과

#### 1. Consortium Agreement 작성 시 DESCA 9.1 및 Attachment 1(Background)에 의거하여 보호가 필요한 Background IP를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

- 보호가 필요한 Background IP는 향후 Access Rights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DESCA Attachment 1에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

#### 2. Consortium Agreement 작성 시 DESCA 8.1·8.2에 의거하여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Joint Ownership 발생 가능성 유의

- DESCA 8.1에 따라 결과물은 이를 생성한 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며, DESCA 8.2에 따라 기여가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joint ownership)가 발생함
-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비상업적 연구 및 교육 목적에 대해 각 기관이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DESCA 8.2 Option 1) 참여 중인 Horizon Europe 과제와 무관한 민감 데이터는 업로드하지 않도록 보안 유의

#### 3. Consortium Agreement 작성 관련,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 필요

- Consortium Agreement 검토 관련, 산학협력단 또는 글로벌정책 담당 부서 등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자문 권장

#### 4. Horizon Europe 신청 시 PIC 등록 및 LEAR 지정 관련 유의사항

- PIC(Participant Identification Code)는 EU Funding & Tenders Portal의 참가자 등록부(Participant Register)에 기관을 등록할 때 부여되는 9자리 고유 식별 코드이며, 모든 Horizon Europe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신규 기관 등록 시에는 기존 등록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색하여 중복 등록을 방지 (예: 동일한 대학에서 산단과 대학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
- LEAR(Legal Entity Appointed Representative)는 기관을 대표하여 포털 상의 조직 정보 관리, 계약·보조금 관련 절차, 비용 청구의 전자 서명 등 기관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식 지정 대리인임. 기관의 중앙 행정 조직에 소속된 직원이 맡으며, 기관의 법무 담당자, 국제협력 부서 책임자 등 '항상 재직 중이며 기관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

#### 5. Horizon Europe의 IP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Horizon Europe IP 헬프데스크 활용 가능

- 해당 헬프데스크 웹사이트 ([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regional-helpdesks/european-ip-helpdesk\\_en](https://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regional-helpdesks/european-ip-helpdesk_en)) 참고하여 활용 가능

#### 6. 컨소시엄 내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보안 이슈 유의

- 일부 유경험자들은 국가별 문화 차이로 인해 사진·영상 촬영, 장비 반입 등에 대한 보안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

### 3 독일

#### ▣ 독일의 연구보안

##### 1) 개요

- 독일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학문적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다층적인 연구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령(수출통제·외국인투자 심사), 비구속 권고(DFG 가이드라인\* 등), 기관별 규정(4대 연구회 코드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음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2023). *Dealing with risk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onn: DFG.

- 독일의 주요 연구보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수출 통제)** EU 이중용도 규정(Regulation (EU) 2021/821)이 직접 적용되며, 독일은 대외경제법(AWG: Außenwirtschaftsgesetz) 및 대외경제령(AWV: Außenwirtschaftsverordnung)을 통해 허가·절차·제재 체계를 운영
- **(외국인 투자 심사)** AWG를 근거로, AWV가 심사 절차와 임계치를 규정. 특히 국방·중요 인프라·IT보안 분야 등에서는 10% 의결권 취득만으로도 심사 대상이 되며, 첨단 기술 분야는 20%, 일반 분야는 25% 임계치가 적용됨.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는 지분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통제권(특수 권리, 이사회 지위 등)도 심사 대상으로 봄
- **(학술 보안 강화)** DFG(2023) 「Dealing with Risk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은 연구자와 기관이 국제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오용·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DFG 지원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 BMBF(2024) 연구보안 포지션 페이퍼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기관의 자율적 보안 체계 강화를 지원. 또한 4대 연구회(MPG, Fraunhofer, Helmholtz, Leibniz)는 각기 자체 규정을 운영하여, 연구자가 파트너 신뢰성·데이터 보호·수출통제 준수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유도

##### 2) 대외경제법(AWG)

- **(주요 내용)** 독일의 대외경제법(AWG)은 수출통제, 제재(엠바고) 이행, 외국인 투자심사 등 대외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국내 기본법으로 기능. EU 이중용도 규정(Regulation (EU) 2021/821)은 EU 규정으로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독일은 AWG 및 그 시행령인 대외경제령(AWV)을 통해 허가 절차, 집행 체계, 위반 시 제재 및 국가 차원의 추가 통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구체화함

※ 이중용도 품목 및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 이전, 중개, 통과 및 기술 지원 행위가 통제 대상이 되며, 관련 행위가 허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AWG 및 AWV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무형 기술 이전)** 문서·소프트웨어·기술적 노하우 등이 이메일, 원격 서버 또는 클라우드·인트라넷 접근 제공 등 전자적 방식으로 EU 역외에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 디지털 형태의 지식이나 데이터 제공 역시 상황에 따라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반에 공개된 정보(public domain) 또는 기초연구 결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디지털 정보가 일률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님

- **(내부 준수 프로그램)**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은 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도 내부 준수 프로그램(Internal Compliance Programme, ICP)의 구축을 적극 권장하여 기관 스스로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관련 위험을 식별·관리하고 자율적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

- **(담당 기관)**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이 중앙 허가기관으로 수출 허가를 담당하며, 관세당국(Zoll) 등과 공조하여 집행과 수사를 수행

### 3) 대외경제령(AWV)

- **(주요 내용)** 독일의 대외투자 심사는 대외경제법(AWG)과 그 시행령인 대외경제령(AWV)에 의해 규율됨. AWV는 외국인 투자자의 독일 기업 인수·지분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대상 범위 및 의결권 임계치를 명시함으로써 투자심사의 실질적 운영 근거로 기능
  - 의결권 취득 비율이 법정 임계치에 미달하더라도, 투자가 거부권(veto rights), 이사회 또는 감독기구의 구성원 지위 확보, 경영·기술·영업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 등 지분율과 불균형한 추가적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형적·실질적 통제력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 경우 의결권 비율뿐 아니라 계약 구조 및 부가적 권리의 내용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됨
- **(적용 대상)** 부문별 심사(국방·방위 및 군수 관련 핵심 분야)는 10% 의결권 취득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되며, 부문횡단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계치가 적용됨
  - 의결권 10%: AWV 제55a조 제1항에서 정한 핵심 인프라(KRITIS) 등 고위험 분야
  - 의결권 20%: 같은 조항에서 정한 첨단·민감 기술 분야
  - 의결권 25%: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일반 기업

※ 일반적으로 부문횡단 심사는 EU·EFTA 역외 투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국방·방위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심사는 EU 투자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적용
- **(기술 지원 통제)** AWV 제5편은 컨설팅, 교육·훈련, 기술 자문 등 무형적 형태의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허가 또는 통지 의무를 부과. 이러한 통제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활동, 군사적 최종용도, 제재 대상 국가·개인과의 연계, 특정 감시·통신감청 기술 등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되나, 일반에 공개된 정보의 제공이나 기초연구 활동 등은 법령상 예외로 인정
- **(심사 절차)** 독일의 투자심사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2단계로 운영
  - 1단계(예비 심사):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현 BMWE)가 거래 통보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심층 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
  - 2단계(심층 심사): 심층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완비된 자료가 제출된 날로부터 통상 최대 4개월 동안 심층 검토 진행. 필요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정보 보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심사 기간이 사실상 정지(stop-the-clock)될 수 있음. BMWK는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에 대해 금지, 조건부 승인 또는 무조건 승인을 결정할 권한을 지님
  - 미신고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

※ (참고)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및 기술 이전 관련 지침으로 Export Control and Academia 매뉴얼을 발간하여 기술 지원·무형 이전에 대한 실무적 해설을 제공

### 4) Dealing with Risk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DFG, 2023)

- **(주요 내용)** 독일연구재단(DFG)은 2023년 「Dealing with Risk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을 발표하여, 국제 공동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윤리적 위험을 연구자와 기관이 사전에 인식·평가·완화하도록 권고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DFG 연구지원 심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연구자가 위험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보류·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 핵심 원칙은 “레드라인(일률적 금지)”이 아니라 사안별·비례적 위험평가와 정당화 책임”임

- (위험평가 범주)

- 파트너 국가 의존성 및 제3자 오용 가능성
- 파트너 기관의 군사 연구 연계 여부
-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가로채기 위험
- 연구 자유·인권 제한 가능성

- (대응 방향)

- 위험이 확인된 경우, 연구 범위 조정·조건부 협력·철회까지 포함해 비례적 조치 권장
- 위험·대응책을 연구제안서 단계부터 기술하도록 요구
- 기관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해 연구자 지원

- (담당 기관) DFG(독일연구재단)이 발간 및 적용 주체이며, 심사·평가 과정에서 권고 준수 여부를 확인. 자문·지원은 DFG가 직접 수행하거나 기관 내 윤리·보안 위원회가 연계 가능

## 5) BMBF(2024) 연구보안 포지션 페이퍼

- (주요 내용)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24년 「Forschungssicherheit im Lichte der Zeitenwende」를 발표하여,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학문 자유와 국가 안보의 균형을 연구보안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함. “가능한 개방적으로(as open as possible), 필요한 만큼 폐쇄적으로(as closed as necessary)”라는 원칙을 통해, 국제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이익과 보안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 위협으로는 연구 성과의 오용, 기술·노하우 유출, 외국 영향력 개입, 연구자 대상 스파이 활동 등이 제시됨

- (정책 방향) 기존 연구보안 체계(가이드·절차)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이를 위해 중앙 정보 플랫폼·클리어링 센터를 구축하여 연구자에게 위험평가 및 사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유럽 차원의 공동 플랫폼 연계도 검토
- (추진 계획) 학계·산업계·보안당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여름까지 연구 보안 공동 선언문과 실행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담당 기관) BMBF(연방교육연구부)가 정책 기획과 전략 방향 설정을 담당하며, 연구기관·산업계·보안당국과 협력하여 실행. 중앙 정보 플랫폼 운영 및 클리어링 센터 신설도 BMBF 주도로 검토 중

## ▣ 독일 4대 연구회의 연구보안 규정

### 1) MPG(막스플랑크협회)

- (개요) MPG는 연구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안보 관련 연구 리스크에 대해 연구자가 스스로 이를 식별·평가·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자율 준수 기반의 규범적 체계(self-regulatory framework)를 운영.

- (연구보안 규정) Guidelines and Rules of the Max Planck Society on a Responsible Approach to Freedom of Research and Research Risks

- (주요 내용)

- 위험 식별·평가: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및 진행 중 잠재적 악용 위험을 스스로 분석·문서화
- 위험 완화: 비례적 조치(접근권한 제한, IT·정보보안, 협력 파트너 제한 등)

- 출판 관련 조정 가능성: 고위험 결과물은 발표 연기·부분 비공개 등 위험 완화 가능
- 윤리위원회(KEF)의 역할: 승인기관이 아닌 공식 자문·권고 기구로서 고위험 연구에 대한 의견·권고 제공

## 2) FhG (프라운호퍼협회)

- **(개요)** FhG는 계약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안 및 대외 이전 리스크를 관리. 연구·위탁·공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장비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해 독일 및 EU의 수출통제법, 제재 규정, 대외무역법 준수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허가 지연 또는 불허가 발생할 경우의 계약상 효과를 사전에 규정
- **(연구보안 규정)**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TC) : 수출통제·외국무역 규정 준수 의무, 수출통제 사유로 인한 지연·불능 시 Fraunhofer의 책임 제한, 외국무역법 준수를 위한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력 의무
  - Principles of Cooperation: 정보보안·IP·수출통제 원칙
  - 별도 Export Control/Compliance 안내 존재
- **(주요 내용)**
  - 수출통제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장비는 허가 없이 이전할 수 없으며, 허가 지연·불허 시 Fraunhofer의 자체·불이행 책임 제한
  - 협력계약(NDA·Research Agreement)에 재이전 금지, 제재리스트 준수, 정보보안·기밀유지, IP 보호 등이 삽입됨

## 3) HGF (헬름홀츠연합)

- **(개요)** HGF는 연합 차원의 단일 연구보안 규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각 헬름홀츠 센터가 자체적인 Code of Conduct 및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운영하는 구조. 각 센터는 연구 수행, 데이터 처리, 대외 이전 전 과정에서 EU 데이터보호 법령 준수, 정보보안, 수출통제, 제재 준수 및 기밀유지를 요구
- **(연구보안 규정)** Helmholtz Munich Code of Conduct (2024)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수집·처리·이전은 EU 데이터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한 적법성·목적 제한·투명성·보안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수출통제는 물품·기술·소프트웨어의 물리·전자·구두 이전까지 모두 포함
  - 연구 성과·영업비밀·기밀 정보는 무단 공개가 금지되며, 내부 규정 및 계약을 통한 보호 조치가 요구됨
  - 이중용도 또는 비민수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국제협력은 사례별(case-by-case) 검토를 통해 협력 조건·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4) WGL (라이프니츠연합)

- **(개요)** WGL은 연합 차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대응 체계로 Leibniz Commission for Research Ethic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안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위원회는 승인기관이 아니라 자문·평가 기구로서 기능
- **(연구보안 규정)**
  - Rules of Procedure of the Leibniz Commission for Research Ethics
  - Risk Management in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 - (주요 내용)

- 고위험 연구는 위원회에 공식 자문 요청 가능하며, 서면 의견 형태로 위험완화 권고(조건·범위 조정 등)
- 국제협력 시 수출통제 분류 및 허가 필요성 검토, 제재리스트 확인, GDPR 및 독일 개인정보보호법(BDSG)이 국제협력 과정에 적용됨을 전제로 검토
- 협력계약에 재이전 금지, Exit 조항, 파트너 신뢰성 및 법규 준수 여부 검증을 포함할 것을 권장
- 위원회 자문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기관 내부 절차 및 계약에 반영될 경우 사실상 준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표 21 | 독일 4대 연구회의 연구보안 규정

4대 연구회	연구보안 관련 문서/규정	주요 사항	상세 내용
MPG (막스플랑크협회)	Guidelines and Rules of the Max Planck Society on a Responsible Approach to Freedom of Research and Research Risks	이중용도·안보 관련 연구 위험성 평가, 자가점검, 법규(수출통제·대외무역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는 연구 착수 전 군사·테러 약용 가능성 자가 점검</li> <li>• 독일·EU 법령 준수</li> <li>• 민감기술 이전 시 정부 허가 요구 가능</li> <li>• 출판 전 위험 평가 및 제한 가능</li> </ul>
		안전성·안보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위원회(KEF) 자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용도 가능성 있는 연구는 윤리위원회(KEF에 위험 자문 가능(승인제 아님)</li> </ul>
FhG (프라운호퍼협회)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TC)	외국무역법·수출통제·제재 규정 준수 및 그로 인한 계약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장비의 국경 간 이전은 독일 및 EU 외국무역법·수출통제·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함</li> <li>• 외국무역법상 금지, 허가 불발 또는 허가 지연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체·불능되는 경우, Fraunhofer의 계약상 책임은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제한됨</li> <li>• 계약 당사자는 외국무역법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를 가짐</li> </ul>
	Principles of Cooperation	정보보안·기밀유지·지식재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DA·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데이터는 제3자 제공·무단 사용 금지, 동일 수준 보호 의무</li> </ul>
HGF (헬름홀츠연합)	각 센터별 Code of Conduct (예: Helmholtz Munich)	데이터 보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데이터보호 관련 법령 준수 명시</li> </ul>
		대외무역법·제재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독일 수출통제, 제재 리스트 준수</li> <li>• 위반 시 협력 종료 가능</li> </ul>
WGL (라이프니츠연합)	Rules of Procedure of the Leibniz Commission for Research Ethics	비민수 목적 협력 원칙적 제한 아님, 사례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목적·이중용도 가능성 있는 경우 사전 심사·조건 부과 가능</li> </ul>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보안·윤리 리스크 연구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이중용도 연구는 위원회 자문·평가 후 의견·조건 권고 (승인제 아님, 연구자 책임)</li> </ul>
	Risk management in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국제협력 사전 위험평가 및 계약상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 착수 전 수출통제, 제재, 데이터보호 (GDPR 등)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점검할 것을 권고</li> <li>• 계약에 재이전 금지 및 종료 조항 포함 권장</li> <li>• 협력 파트너의 신뢰성 및 법규 준수 역량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시</li> </ul>

## 4 영국

### △ 영국의 연구보안

#### 1) 개요

- 영국은 개방적 학술협력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국가안보·경제안보·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응하여 연구보안 체계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 법률(국가안보투자법, 수출통제령, ATAS 제도 등)과 권고 지침(Trusted Research Guidance)을 결합해 연구·투자·기술이전을 다층적으로 관리함
- 영국의 주요 연구보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지침)** 국제협력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위험 식별·완화 지침
  - **(국가안보투자법)**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인수 심사
  - **(수출통제령)** 이중용도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이전 규제
  - **(학술기술승인제도)** 특정 민감 분야 지식·기술 확산 억제

#### 2)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지침(Trusted Research Guidance, NPSA·NCSC, 2021)

- **(주관 기관)** 국가보안청(NPSA),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
- **(주요 내용)** 국제협력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법적·사이버 위험에 대해 기관 및 연구자 단위의 식별·완화를 지원하는 지침. 이 지침의 핵심은 "파트너를 알라(Know your partner)"는 원칙임. 영국에 적대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의 군대나 경찰과의 연관성, 그리고 프로젝트가 군사적 사용, 위해, 억압, 감시 등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강조
  - 협력 파트너 Due Diligence(정부 연계성, 인사·배경 검증) 강화 권고
  - 연구주제 자체의 위험보다 협력자·자금제공자 위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원칙 제시
  - 민감데이터 접근통제, 무단 접근 모니터링, 파트너 보안관행 점검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실천 강조
- **(법적 성격)** 법률 구속력은 없으나, 수출통제·NSI Act와 결합되어 영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사실상 표준 운영 지침으로 기능
- **(적용 대상)** 영국 내 고등교육·연구기관 및 협력 외부 파트너 전반

#### 3)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발효 2022.1.4)

- **(주관 기관)**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 투자보안국(ISU)
- **(주요 내용)**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투자 거래에 대해 정부가 심사·개입할 수 있는 권한 규정
  - 17개 민감 분야(첨단소재, AI, 양자, 위성, 합성생물학, 방위산업 등)에 대한 거래는 의무 통보 대상
 

※ 17개 민감 분야의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AI 및 에너지 분야의 일부 완화 및 중요 광물 분리, 데이터 인프라 확장, 응급 서비스 공급자 세부화, 물(Water) 분야 추가 등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 논의가 진행 중

| 표 22 | 영국 국가안보투자법 적용 대상 17개 민감 분야 (향후 변동 가능)

분야명	상세 내용
첨단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복합재료, 금속 및 합금, 공학 및 기술 폴리머/세라믹, 기술 섬유, 메타물질, 반도체, 광자 및 광전자 재료/장치, 그래핀 및 2D 재료, 나노기술, 핵심 재료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활동. 응용 특정 집적 회로(ASICs) 포함</li> </ul>
첨단 로봇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 있는 자율성 또는 정교한 감시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사용 능력을 갖춘 물리적 기계의 개발 또는 생산. 핵심 부품(센서, 최종 효과기, 제어 시스템 등) 포함</li> </ul>
인공지능(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별 또는 추적, 첨단 로봇공학, 사이버보안에 사용되는 AI 기술(데이터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인지 능력에 근접한 자동 처리로 데이터를 해석하여 권고, 예측 또는 결정을 내리는 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li> </ul>
민간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군사 목적의 원자력 부지 면허 보유, 핵 물질 보유(카테고리 I, II, III), 핵 물질 운송 면허 보유, 원자로 건설 계획, 민감 핵 정보(SNI) 보유 등</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내 연간 매출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공공 전자 통신망/서비스(PECN/S) 또는 관련 시설 제공. 잠수함 케이블 시스템, 케이블 착륙국, 최상위 도메인 이름 레지스트리, DNS 리졸버 서비스 등 포함</li> </ul>
컴퓨팅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 처리 장치(CPU, FPGA, 마이크로컨트롤러, SoC, GPU, AI 특수 프로세서) 및 관련 아키텍처/논리적/물리적 설계,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 저수준 코드, 메모리용 집적 회로 등의 지식재산 소유/생성/공급/활용, 보안 프로비저닝/관리 서비스 제공, 제조 또는 패키징</li> </ul>
정부 핵심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공공 계약 규정 2015에 명시된 계약 당국)와 직접 계약을 맺고 매우 민감한 정부 데이터, 자산 또는 부동산에 접근하는 공급자. SECRET 또는 TOP SECRET 자료 처리/저장, List X 인증 요구, SC(Security Check) 수준 이상의 직원 심사 요구 등</li> </ul>
암호화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을 주 기능으로 하며 암호화를 사용하는 제품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제품</li> </ul>
데이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처리, 전송을 위한 물리적 또는 가상 인프라에 관여하는 활동. 공공 전자 통신망/서비스 간 피어링/상호 연결/교환을 위한 인프라, 잠수함 케이블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등</li> </ul>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연구, 개발, 설계, 생산, 생성 또는 적용에 관여하는 국방부(MOD) 공급자(하도급자 포함). 기밀 자료 취급 대상</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류 석유 및 가스(300만 톤 이상 처리 시설), 하류 가스(송전, 배전, 가스 연결관 면허, 처리/수입/수출 시설), 전기(송전, 배전, 연결관, 발전 면허, 100MW 이상 발전 자산 또는 1GW 이상 총 용량), 하류 석유(연료 공급, 50만 톤 이상 용량 또는 5만 톤 이상 시설)</li> </ul>
군사 및 이중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안보 통제 관련 수출 통제 법규에 따라 통제되는 제한된 물품 또는 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 영국 군사 목록, 영국 이중용도 목록, 영국 방사성 물질 목록, EU 이중용도 목록에 명시된 품목</li> </ul>
양자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 통신, 양자 연결, 양자 이미징/센싱/타이밍/항법, 양자 내성 암호화, 양자 정보 처리/컴퓨팅/시뮬레이션 등 양자 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li> </ul>
위성 및 우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주 잔해 관리, 궤도 내 활동, 위성 통신 링크, 보안 시설(지상 인프라), 우주선/발사체/위성 제조 또는 테스트, 국방 목적의 우주 파생 데이터 사용, 우주 인프라 운영 제어 시설 제공,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SSA) 제공 또는 처리</li> </ul>
응급 서비스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 서비스(국경 수비대, 영국 교통 경찰, 민간 원자력 경찰, 소방 및 구조 당국, 국방부 경찰, 국가 범죄국, 경찰 기관)에 운영 제공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 무인 항공기, 총기, 연료 카드, 보안 접근 제어 시스템, 사설 전자 통신망,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시스템/플랫폼 등</li> </ul>
합성 생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 생물학에 대한 기초 과학 연구, 개발, 또는 이를 이용한 물품 생산. 물질 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합성 생물학 사용, 관련 서비스 제공. 생체 기반 부품 설계/공학, 천연 생물 시스템 재설계, 세포 없는 시스템, 유전자 편집/치료 등</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 항공 및 항공 교통 관제 부문의 핵심 운송 인프라. 특정 처리량 기준을 충족하는 영국 항만/항구, 공항, 또는 영국 내 항로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제공</li> </ul>

- 해외 법인 및 무형자산(데이터베이스, IP, 알고리즘 등)도 적격 법인(Qualifying Entities, QE)/적격 자산(Qualifying Assets, QA)에 포함되어 국가안보투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적격 법인) "적격 법인"은 국가안보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체를 의미하며,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회사, 유한책임 조합, 기타 법인체, 파트너십, 비법인 협회 또는 신탁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 특히, 영국 외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영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영국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NSI Act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 (적격 자산) "적격 자산"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산을 의미. 토지, 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산업적, 상업적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아이디어, 정보, 기술)을 포함. 이는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B), 소스코드, 알고리즘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됨
  - ※ (역외 적용 가능성) NSI Act는 상당한 역외 적용 가능성을 가지는데, 영국 외부에 위치한 법인이나 자산이라도 영국 경제와 충분한 연관성(예: 영국 내 지역 사무소 또는 R&D 시설 운영, 영국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공급)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소수 지분 인수나 간접 통제 방식(예: 이사회 구성원 임명 권한을 통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이는 국제 컨소시엄이나 해외 자회사를 통한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
- 특정 민감 분야(17개)에 속한 '적격 법인'에 대한 인수 관련, 지분율 임계값(25%초과, 50%초과, 75%이상)을 넘을 경우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material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평가 요소: 대상 위험(Target Risk), 인수자 위험(Acquirer Risk), 통제 위험(Control Risk)
- (위반 시 제재) 승인 누락 시 거래 무효, 최대 5년 징역 및 과징금(최대 10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액 5% 부과 가능)

#### 4) 수출통제령 (Export Control Order, 2008 및 2024 개정)

- (주관 기관)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 (주요 내용) 이중용도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및 이전을 규제하여 군사 전용 및 WMD 확산을 방지
  -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본 규정(SI 2024 No. 346)은 수출통제령 2008 및 유럽연합 이중용도 규정(EC No 428/2009)에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자 기술, 극저온 기술, 반도체 기술, 적층제조 장비, 첨단 소재 등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제 목록(PL9013, PL9014, PL9015)이 추가됨. 이들 신규 통제 품목에 대해서는 "전 목적지 허가 필요" 원칙이 적용되어, 목적지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범위가 확대됨. 본 개정은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등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의 최신 업데이트를 반영한 것임
  - (기술 정의) '기술' 정의에 설계도·계획·소스코드·매뉴얼 포함, 전자적(E-mail·클라우드·화상회의) 및 비 전자적(대면 구두) 이전도 모두 수출로 간주
  - (군사 최종사용자 통제(end-use control) 운용) 목록 비해당이라도 군사용 우려 있으면 허가 필요
    - ※ 특정 품목이 통제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사적 최종사용이나 WMD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포괄적 통제" 원칙을 의미. 본 조항은 수출자/연구자에게 최종사용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
  - (2024.4.1. 개정) 양자기술, 극저온,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적층제조, 첨단 소재 등 새로운 분야 통제 추가. EU·미국과 보조를 맞춘 강화 조치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금, 최대 10년 징역(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위반 시), 물품 압류 가능

#### 5) 학술기술승인제도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ATAS, FCDO)

※ (출처) UK Home Office. (n.d.).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ATAS). London: UK Home Office.

- (주관 기관)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 (주요 내용) 특정 국적의 학생·연구자가 영국 내 특정 민감분야 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 시작 전/비자 신청 전 ATAS 증명서 요구

- 연구주제·지도교수·자금 후원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민감분야는 CAH3·SOC 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지정되며 화학·생물학·물리학·공학·컴퓨터과학·AI·재료 등 광범위 포함
- **(적용 대상)** 대학원 과정, 계약직 연구(포닥 포함), 단기 방문 연구자 일부도 포함
- **(행정적 특징)** 처리기간 통상 30영업일 이상, 성수기 지연 가능
  - ※ (우리나라 적용 여부) 우리나라는 ATAS 면제 대상이므로 영국에서 특정 이공계 분야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더라도 ATAS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면제 대상) 영국 영주권(ILR) 소지자, 영국 이민 통제에서 면제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따라 ATAS가 미적용되는 경우(예: Global Talent Visa), 다음 국가 국민 또는 시민권자(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공화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 참고 **브렉시트(Brexit) 이후 EU 연구보안 규정의 영국 내 적용 여부**

- **(개요)** 브렉시트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EU Regulation은 영국 전역에 자동 적용되지 않음. 영국은 관련 분야를 온셔링(onshoring)하여 자체 체계를 운영(예: UK GDPR + DPA 2018, Export Control 법령, NSI Act 2021 등)
  - **(Horizon Europe)** 국내법 효력은 없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준회원국으로서 계약상 준수
  - **(Dual-use(2021/821))** 본토(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 미적용, 북아일랜드 적용
  - **(FDI Screening(2019/452))** 영국 전역 미적용.. 단, 영국 기업이 EU에 투자할 때는 EU 협력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회원국 심사 대상
  - **(GDPR(2016/679))** 영국 국내법으로는 미적용(UK GDPR 시행). 다만 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시 역외 적용됨
- ① **(Horizon Europe 규정 적용 여부)** Horizon Europe 규정은 영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영국은 준회원국 (Associated Country) 지위에 따라 계약상 준수 의무 존재
  - **(영국 전역)** 영국은 2024년 1월 1일부로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Horizon Europe 참여 시 영국 연구자는 프로그램 규칙(Regulation 2021/695, MGA 등)을 계약상 의무로 수용해야 함
    - 이는 국내법 효력은 아니고, 참여 계약(Grant Agreement)을 통한 계약상 의무라는 점이 특징
- ② **(이중용도·수출통제 EU 규정 적용 여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EU 이중용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북아일랜드에서는 적용됨.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2021년 1월 1일 이후 EU 수출통제법은 자동 적용되지 않음. 대신 영국은 자체 법령(Export Control Act 2002, Export Control Order 2008, UK Strategic Export Control Lists)을 근거로 독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Regulation 2021/821이 계속 적용됨.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EU 간 이중용도 품목 이동은 내부 이전(intra-EU transfer)으로 간주

**③ (FDI Screening EU 규정 적용 여부)** EU FDI Screening 규정은 영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영국 전역)** EU FDI Screening Regulation은 영국 내 투자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영국은 2021년 제정된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SI Act)에 따라 독자적인 국가안보 기반 투자 심사 체계를 운영 중
-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협정(북아일랜드 의정서, 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단일시장 '상품 규칙' 일부 (예: 이중용도 수출통제)가 계속 적용되지만, 자본·투자 규율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DI Screening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④ (GDPR EU 규정 적용 여부)** EU GDPR 규정은 영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영국 본토 및 북아일랜드)** 2021년 1월 1일부터 GDPR은 영국에 직접 효력이 없음. 대신 영국은 UK GDPR 및 Data Protection Act 2018을 국내법으로 시행

- **(특정 상황 (역외 적용))** EU GDPR은 역외적용(Art.3)에 따라, 영국 연구기관이 EU 거주자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EU GDPR이 적용됨. 따라서 영국 기관은 UK GDPR과 동시에 EU GDPR(역외)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5 프랑스

### ▶ 프랑스의 연구보안

#### 1) 개요

- 프랑스는 국가의 근본 이익(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에 과학·기술 잠재력을 포함하며, 이를 외국 정부·비국가 행위자의 부당한 영향력, 지식 수집·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행정체계를 운영. 국제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 생태계의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는 균형을 중시  
※ 최근에는 이른바 “개방성 역설”(개방적 학문 환경이 외국 간섭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프랑스 상원/OPECST 보고서(2020–2021), 국가전략검토(Revue nationale stratégique)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
- 프랑스의 주요 연구보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과학기술 잠재력 보호(PPST))**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ZRR 지정·접근 통제·위험평가 체계를 운영
  - **(이중용도 기술·수출통제(EU Reg. 2021/821))** 민감 기술·데이터의 수출·이전·전자적 전송을 통제하며, SBDU/EGIDE를 중심으로 허가 절차를 관리
  - **(IPR(지적재산권) 보호)** 직무발명 기관귀속 체계(L611–7조)와 INPI 중심의 권리 보호·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국가적 보호·사업화를 강화
  -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GDPR, CNIL, ANSSI))** GDPR·정보자유법 기반으로 민감 데이터 보호와 HDS(Hébergement de Données de Santé) 인증, CNIL·ANSSI의 감독·보안체계로 연구 데이터·시스템을 보호

#### 2) 과학기술 잠재력 보호(PPST)

- **(근거)** 프랑스 형법 제413–7조(전략적 지식·기술 보호 관련 규정) 및 「2011–1425호령(2011.11.2.)」, 2012년 각료령·회람을 통해 구체화
- **(주관 기관)** SGDSN(총리실 산하 국가안보 사무국)이 PPST를 총괄, MESR의 HFDS(방위·안전 고위공무원) 및 각 기관의 FSD 네트워크가 ZRR 운영·접근 승인·위험 평가를 수행
- **(주요 내용)** 국가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외국 간섭, 부당한 지식 수집·탈취, 경제·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
  - ZRR(Zone à Régime Restrictif, 제한구역) 지정: 연구기관(대학·연구소 등) 내 특정 실험실·부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ZRR 접근은 국적과 관계없이 사전 인가 필수
  - 위험 기준: 국가 경제·과학적 잠재력 침해, 외국 군사력 강화, 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위능력 약화, 테러 위험 등

#### 3) 이중용도 기술·수출통제 (EU Reg. 2021/821)

- **(근거)** EU 규정(EU) 2021/821(구 428/2009 대체)
- **(주요 내용)** 이중용도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 EU 역내 이전, 중개(brokering), 기술지원, 환승(transit)을 통제
  - 전자적 전송(이메일·화상회의·클라우드 업로드·원격접속 등)도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프랑스에서는 이중용도 품목 허가는 경제부 산하 SBDU가 담당하며, 신청은 EGIDE 플랫폼을 통해 진행
  - 순수 군사품(군사목록)은 국방부(DGA 등)에서 별도 인허가

#### 4) 지적재산권(IPR) 보호

- (주관 기관) INPI(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 (주요 내용) 연구자 고용계약에서 발명이 업무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경우, 프랑스 지식재산법(L611-7조)에 따라 발명 소유권은 기관(대학·연구소)에 귀속되며, 연구자는 추가 보상(rémunération supplémentaire) 받을 수 있음
  - CNRS, École Polytechnique 등 주요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조직(소시에테 드 발로리자시옹)을 통해 특히 이전·스핀오프 설립을 적극 지원
  - IP는 외국 정부·기업의 주요 표적이므로, 보호와 상업화(기술이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국가정책에서도 강조됨

#### 5)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

- (근거) GDPR, 「정보·자유법(Loi Informatique et Libertés)」 개정 체계
- (주관 기관)
  - CNIL(데이터보호위원회): 민감데이터 처리 승인·감독·조사·제재 권한
  - ANSSI(국가사이버보안국):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 인증 정책 관리
- (주요 내용) 건강데이터를 외부에서 호스팅·처리하는 서비스는 공공보건법에 따라 HDS 인증 필요
  - ※ (HDS, Hébergement de Données de Santé) 프랑스 공중보건법에 의거, 프랑스 보건 데이터(개인 의료정보)를 '호스팅'하거나 처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인증
  - 연구 목적의 건강데이터 사용 시 가명처리·익명화 등 고강도 보호조치 요구, 민감 데이터의 경우 CNIL 승인 또는 신고 절차 필요
  - ANSSI는 국가 기반시설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수행하여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감독·지원함

**Tip!**

**독일·영국·프랑스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상세 유의사항**

**〈독일과 국제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1. 대외경제법(AWG)에 의거, 독일과 공동연구시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기술·데이터·소프트웨어·노하우를 EU 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무형 기술 이전으로 간주되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목록 게재 여부·최종용도·행선지·제재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공개·기초연구에 해당하는지 예외 적용 여부도 검토 필요

**☒ Tip |** 제안 단계에서 연구 데이터·기술이 ‘공개 연구(open research)’ 범주에 속함을 명확히 기재하고, 민감성이 있는 경우 BAFA(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

**2. 대외경제령(AWV)에 의거, 독일 기업 지분 인수시 심사 대상이 되거나 독일 기관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수출통제 허가 의무가 발생 가능함을 유의**

- 독일 기업 지분 인수 시 분야별로 10%·20%·25% 임계치가 적용되므로, 민감 분야에서는 낮은 지분 취득이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독일 기관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무형 기술 지원(컨설팅, 교육, 데이터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최종 용도나 상대방 성격에 따라 수출통제 허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협력 전 BAFA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도·대상을 사전에 확인 권장

※ (BAFA 가이드라인)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n.d.). Export control and academia – manual. Eschborn: BAFA

**☒ Tip |** 협력 초기 단계에서 연구 범위·산출물·기술 제공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서에 “재이전 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불필요한 수출통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3. DFG(독일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참여 또는 DFG 지원을 받는 독일 파트너와 협력할 경우, 필요시 위험평가 질문(의존성·오용·군사연계·데이터 보안·학문 자유)에 대해 사전 대응책 준비 필요**

- 단순히 연구 주제의 과학적 가치만이 아니라, “누구와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책임이 요구될 수 있음
- 제안서 단계부터 위험 식별 및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DFG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Tip |** 연구계획서에 ‘리스크 매트릭스(위험–영향–대응방안)’를 포함해 위험을 식별·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DFG 심사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4. 독일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할 경우, 필요시 안보·윤리적 리스크(연구 오용, 기술 유출, 파트너 국가의 정치·군사적 연계성 등)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 제시**

- BMBF가 강조하는 “자율적 위험관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기관의 내부 준수 프로그램(ICP)·연구보안 절차를 구축·연계할 필요

- BMBF 지원사업 참여 시 연구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보류·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

**☒ Tip |** 필요시 제안서에 연구보안 관련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자 차원의 대응방안(예: 데이터 접근 제한, 윤리적 검토, 협력 범위 명확화)을 기재

### 〈 영국과 국제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

#### 1. 국가안보투자법(NSI Act., 2001)에 의거하여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투자 거래에 대해 정부가 심사·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을 유의

- 공동연구로 생성된 IP 이전·라이선스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영국 내 참여 기관·자회사·컨소시엄을 통한 간접적 참여도 NSI 적용 가능

**Tip** | 공동연구 성과(IP·특허·라이선스)가 국가안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 착수 전 영국 파트너의 TTO(기술이전 부서)와 NSI 적용 가능성은 확인하고, 민감 분야(예: AI·양자·방위 관련 기술)는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

#### 2. 수출통제령에 따라 공동연구시 데이터·소스코드·알고리즘 공유도 경우에 따라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협력 체크리스트와 내부승인 절차 필요

**Tip** | 필요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소스코드·알고리즘의 민감성을 컨소시엄 내부에서 체크리스트로 사전 식별하고, 영국 파트너 기관이 운영하는 내부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초기부터 협의 가능

### 〈 프랑스와 국제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

#### 1. ZRR(제한구역) 지정 연구실과의 공동연구 시 출입·접근 통제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프랑스 PPST 제도에 따라 연구소·대학 내 일부 실험실이 ZRR(Zone à Régime Restrictif)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장비·데이터 접근은 국적과 무관하게 사전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연구주제·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민감 연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협력 초기 단계에서 연구내용·실험실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

**Tip** | 공동연구자가 ZRR 인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연구 착수 전 출입 가능 여부·심사 절차·예상 소요 기간을 파트너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

#### 2. 데이터·소스코드·기술 공유가 이중용도 수출통제(EU Reg. 2021/821)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 기술·소스코드·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이메일·클라우드·원격접속 등)은 EU 규정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로 간주될 수 있어, 민감 분야(바이오·반도체·양자 등) 협력 시 Dual-Use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
- 협약 관련 서류(Consortium Agreement·MOU 등)에는 수출통제 준수 조항을 명시하여 양측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Tip** | 프랑스 파트너에게 해당 연구의 Dual-Use 해당 여부·허가 필요성·데이터 이전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Applicable Export Control Compliance” 조항을 명시 권장

#### 3. 공동연구 성과(IP·특허)의 소유권·수익 배분·기술이전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 필요

- 프랑스는 직무발명·공동발명에 관한 명확한 법적 체계(L611-7조 등)를 갖고 있어, 공동특허의 귀속·권리 행사 구조를 협약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
-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법률 검토·기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

**Tip** | 공동특허·IP 배분 구조(ownership, exploitation rights, royalties)를 협약서 단계에서 명시하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전 프랑스 기관의 내부 승인 절차(HFDS, 법무팀 등)를 사전에 확인

#### 4. 건강·개인 데이터 공동연구 시 GDPR 적용이 필수로, 우리나라 IRB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랑스 CNIL의 승인 절차 필요

- GDPR 적용을 받는 건강·민감데이터 공동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RB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 범주에 따라 CNIL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특히 건강·유전정보·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 건강데이터를 외부 서버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프랑스 공공보건법에 따라 HDS 인증 보유가 필요할 수 있음(기관 내부 서버 운영 시에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Tip** | 프랑스와 임상·건강데이터 연구 수행 시 CNIL 승인 필요 여부, 데이터 처리 절차, HDS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DPA(데이터 처리 합의서) 또는 연구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그래도 궁금해요!

## 독일·영국·프랑스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한 FAQ

| 표 23 | 독일과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제도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독일과 공동연구 시, 연구 데이터를 우리나라로 가져와 분석해도 되나요?	대외경제법(AWG)에 따르면, 이중용도 가능성 있는 기술, 데이터,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EU 역외(우리나라 등)로 이전하는 경우 무형 기술 이전으로 간주되어 수출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필요시 목록 게재 여부, 최종 용도, 행선지, 제재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공개·기초연구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 가능	필요시 제안 단계에서 해당 데이터·기술이 '공개 연구(open research)' 범주임을 명확히 기재. 민감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BAFA(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
우리나라 기관이 독일 기업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거나, 독일 연구기관에 기술지원을 제공할 경우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나요?	대외경제령(AWV)에 따르면, 독일 기업 자본 인수 시 10%·20%·25% 임계치가 적용되며, 민감 분야에서는 낮은 지분 취득이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독일 기관과의 연구 협력 과정에서 무형 기술 지원(컨설팅, 교육, 데이터 제공 등)을 할 경우에도 최종 용도나 상대방 성격에 따라 수출 통제 허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협력 초기 단계에서 연구 범위·산출물·기술 제공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시 계약서에 "재이전 금지 조항"을 삽입해 불필요한 수출 통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고려 필요
DFG(독일연구재단) 지원 과제에 참여하거나 DFG 지원을 받는 독일 파트너와 협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DFG 지원사업에서는 연구 주제의 과학적 가치뿐 아니라, 연구의 오용 가능성, 군사연계, 데이터 보안, 학문 자유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 위험평가가 요구될 수 있음. "누구와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책임이 중요하며, 제안 단계에서 위험 식별과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연구계획서에 연구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DFG 심사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BMBF(연방교육연구부) 지원사업에 제안할 때 연구보안 요건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BMBF는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조하며, 단순한 학문적 가치 외에도 안보·윤리적 리스크(연구 오용, 기술 유출, 파트너 국가의 군사·정치적 연계성 등)를 평가할 것을 요구	필요시 제안서에 연구자 차원의 대응방안 (예: 데이터 접근 제한, 윤리 검토, 협력 범위 명확화)을 명시해 잠재적 리스크를 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 가능

| 표 24 | 영국과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제도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영국과 공동연구 시, 국가안보투자법(NSI Act)에 따라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인수 거래를 심사·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공동연구에서 생성된 지식재산(IP), 특히, 라이선스 이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영국 내 참여 기관·자회사·컨소시엄을 통한 간접적 참여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연구 착수 전 영국 파트너 기관의 TTO(기술 이전 부서)와 NSI 적용 가능성을 확인. 특히 AI, 양자, 방위 관련 기술 등 민감 분야는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
영국과 공동연구에서 데이터나 소스코드 공유도 수출로 간주되나요?	영국 수출통제령에 따르면 공동연구에서 공유되는 데이터·소스코드·알고리즘도 무형 기술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 통제 허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필요시 컨소시엄 내부에서 공유될 데이터·소스코드·알고리즘의 민감성을 체크리스트로 사전 식별 가능. 이후 영국 파트너 기관의 내부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초기부터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표 25 | 프랑스와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제도 관련 FAQ

질문	설명	대응방안
프랑스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면 ZRR 지정 연구실 출입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p>프랑스는 PPS에 따라 일부 연구실·시설을 ZRR로 지정하며, ZRR로 지정된 공간은 국적과 무관하게 사전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p> <p>ZRR 지정은 양자·첨단소재·방위 관련 분야 등 민감 연구와 연계될 수 있으며, 해당 실험실에 참여할 경우 접근 승인 절차가 요구</p>	<p>연구 시작 전 파트너 기관에 특정 연구실이 ZRR인지 여부, 개별 연구자의 출입 가능성, 인가 소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p> <p>제안서 단계에서 연구 성격·체류 기간·연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면 ZRR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음</p>
공동연구에서 데이터나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것도 '수출'에 해당하나요?	<p>연구 데이터·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은 해당 기술이 EU Dual-Use 규정 (2021/821) 상 통제대상이고 EU 외로 이전되는 경우, 무형 기술 수출로 간주될 수 있음</p> <p>특히 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사전 검토 필요</p>	<p>프랑스 파트너에게 해당 연구가 dual-use 목록 또는 통제대상 기술인지 사전에 확인 권장</p> <p>허가 필요한 기술에 해당함에도 허가 없이 데이터를 이전하면 프랑스·EU 수출통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p>
프랑스 파트너와 공동연구 중 발생한 특허·IP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p>공동 연구성과(IP, 특허 등)의 소유권·수익 배분·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있음</p> <p>성과물의 민감도에 따라 프랑스 공공연구 기관(CNRS 등)의 내부 규정(PPST·보안 심사)이나 수출통제, 투자심사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 심사나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p>	<p>컨소시엄 협약서 단계에서 소유권·수익 배분·권리행사 구조를 반드시 명확히 규정</p> <p>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는 프랑스 기관 내부 승인 절차와 관련 법률요건을 사전에 확인 권장</p>
프랑스와 건강·개인 데이터 연구를 하면 GDPR만 지키면 되나요?	<p>GDPR 준수는 필수이나, 프랑스에서는 건강·민감데이터 연구의 경우 연구 유형에 따라 CNIL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p> <p>또한 건강데이터를 외부 서버에서 호스팅·처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HDS 인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p>	<p>공동연구 계획 단계에서 CNIL 승인 필요 여부, 데이터 처리 방식, HDS 인증 여부를 확인</p> <p>데이터 저장·이전 관련 요건은 계약서 (DPA·연구협약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p>

# 제5장



-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가상 사례



## 제5장. 국제공동연구시 연구보안 가상 사례

※ 본 사례는 실제 공개된 규정, 정책, 보도자료,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해를 돋기 위해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 인물 또는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

### 가상사례 ① (미국) 정보 접근 통제의 중요성 : 접근권한 관리 이슈

#### ▣ 개요

- C연구원은 한국의 D연구소 소속으로, 미국 국립연구소와 CRADA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특정 에너지 재료의 설계 및 해석 관련 기술을 연구 중임. 해당 연구는 민감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미국 측은 이 중 일부를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CUI)로 지정하여 관리
- 초기에는 C연구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연구 진행 중 권한 설정 과정에서 클라우드 기반 폴더에 대한 접근 가능성성이 발생
- C연구원은 사전 정보 없이 해당 폴더를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내려받았으며, 이후 정기적인 시스템 감사 과정에서 이 기록이 식별됨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DOE O 142.3B	외국인의 DOE 관련 시스템·시설 접근은 사전 승인을 포함한 절차에 따라야 함
DOE P 485.1A	외국 연구자와의 협력 시 민감 기술의 범위와 접근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DOE O 471.1 (CUI)	CUI는 사전에 승인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지정된 통제체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함

#### ▣ 연구보안 이슈

- » 외국 연구자의 CUI 접근은 DOE의 보안 절차, 신원확인, 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 등 사전 요건에 기반하여 엄격히 관리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 필요

#### ⚠ 연구자 유의사항

-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연구자는 CUI에 자동적으로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미국 측 협력기관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정보에만 접근해야 함
- DOE 산하 과제에 참여하거나 CRADA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사전에 DOE 또는 미국 국립연구소 측에서 요청하는 보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본인의 접근 권한 범위와 제한 조건을 인지

## 가상사례 ②

## (미국) 기술 특성에 따른 접근 제한… 사전 인지가 필요

## ▣ 개요

- H연구원은 한국의 A소재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특정 소재 개발 과제에 참여 중임. 해당 과제는 DOE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하에 수행되었으며, 미국 측 연구기관은 관련 기술을 Science & Technology (S&T) Risk Matrix에서 Yellow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Yellow 등급 기술은 기술적 복잡성과 응용 가능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안보 고려가 필요한 분야로, 외국 국적 참여자의 기술 접근에는 추가적인 검토 및 통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 과제 초기에는 H연구원이 협력 범위 내에서 참여했으나, 기술 범위가 확대되며 기술 민감도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일부 실험 설계 및 분석 작업에 대한 참여 조정이 이루어짐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DOE Science & Technology Risk Matrix	기술 민감도에 따라 Red, Yellow, Green 등급으로 구분. Yellow는 특정 조건에서 외국인 접근 시 사전 검토 및 보안조치 필요
DOE O 142.3B	외국인 연구자의 DOE 시설·정보·기술 접근은 사전 심사 및 승인 대상임

## ▣ 연구보안 이슈

- » S&T Risk Matrix 상 Yellow 등급 기술은 기본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해당 기술의 민감도와 국가 안보 관련성 평가에 따라 외국인의 기술 접근은 사전 검토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선별적 정보 접근, 역할 조정, 보안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협력이 추진되며, 이는 연구보안 정책의 일환임



## 연구자 유의사항

- Yellow 기술로 안내받은 경우, 특정 조건에서 보안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
- 기술 등급 또는 보안 검토 결과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

### 가상사례 ③

### (미국) 논문에 빠진 한 줄 : 외국 자금 누락의 교훈

#### ▣ 개요

- J박사는 한국의 L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CRADA 체결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 해당 연구는 DOE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J박사는 제1저자로 국제 학술지에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함
  - 그러나 논문 게재 이후, 연구성과에 일부 기여한 외국의 재원이 적절히 표기되지 않았다는 외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해당 연구의 자금 출처 명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DOE O 483.1B	체결된 CRADA 내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제안된 서면 및 구두 출판물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 놓을 필요
DOE P 485.1A	외국 재정·기술 협력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공동연구 시 Disclosure가 요구됨
NSPM-33 Implementation Guidance	논문·특허·성과 발표 시 모든 연구비·자금·기여 요소의 공개 요구를 포함

#### ▣ 연구보안 이슈

- 본 사례는 성과물 발표 전 연구비 출처 및 외부 지원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했던 경우에 해당하며, 미국 연방정부 자금이 포함된 연구에서 투명성과 연구 무결성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협력 정보 누락은 의도와 관계없이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로, 협력 기관 간의 조율 부족, 자금 출처의 경계 불명확성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가능



#### 연구자 유의사항

- 논문, 특허, 보고서 등 모든 연구성과물에는 내·외국 자금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임
- 보안 관련하여 자금 출처 등의 외부 비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공개 필요
- 연구자의 성과물에 외부 자금 및 협력 내용을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가상사례 ④

## (미국) 외국 참여자 명시 누락, 공동 제안서의 아쉬운 결과

## ▣ 개요

- W교수는 한국 X대학교 소속으로, 미국 Y대학교와 함께 NASA 연구 과제에 공동 제안서를 제출. 이 제안은 Y대학교가 주관기관(Lead Institution)으로 참여하고, W교수는 공동연구자(Co-Investigator)로 협력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NASA의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W교수가 현재 특정 외국 공공기관에서 겸직 직위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사전 Disclosure 문서에 누락되어 있었음
  - 제안서 본문에서도 'Foreign Participation' 항목의 기술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해당 외국 협력자의 역할, 기술 접근 범위, 소속 기관의 특성 등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NASA GCAM (2025년 3월판)	외국 협력자의 참여 여부, 역할, 자원 접근 범위, 소속기관의 특성 등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NASA FAR Supplement (2025년 1월판)	NASA 지원 과제에 포함되는 외국 연구자 및 기관은 전 단계에서 명확한 Disclosure가 요구됨
NPR 1080.1B Chapter 3	

## ▣ 연구보안 이슈

- ▶ 본 사례는 특정 외국 협력자의 정보 누락이 제안서의 절차적 완성도 미비로 해석되어 향후 평가 배제 등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NASA는 외국 국적자의 과제 참여 시, 단순 명시를 넘어서 협력자의 역할, 기술 접근 권한, 기관의 성격(공공/민간),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형식적 요건 충족을 요구
- ▶ Disclosure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보안 리스크보다는 연방 기관의 과제 제안 절차상 요건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행정적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연구자 유의사항

- NASA 과제에 제안자로 참여할 경우, 특정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기관이 포함될 경우 관련 사항을 공개
- 특정 외국인 연구자의 역할 및 기술 접근 범위가 민감 분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측 협력 기관과 함께 사전 검토 권장

## 가상사례 ⑤

### (미국) 협력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요청과 기술 보안 검토의 균형

#### ▣ 개요

- 한국의 B대학교 소속 N교수는 미국 국립연구소와 CRADA 체결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 이 과제는 DOE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연구 후반에는 시제품 생산 공정 일부에 대한 해석과 시뮬레이션도 포함
- 미국 국립연구소 측은 해당 정보가 기술적 민감도에 따라 보안 관련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DOE의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외국인 연구자의 정보 접근에는 제한이나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
- 그러나, 과제 수행 중 N교수는 실험 조건 재현 및 계산 모델 개선을 위해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 특정 문서 공유를 요청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DOE O 142.3B	외국인의 시설 및 기술정보 접근은 정보 분류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제한 가능

#### ▣ 연구보안 이슈

- 본 사례는 공동연구 중 기술적 민감도에 따른 정보 접근 요청이 발생했을 때, 미국 측 보안 기준 및 정책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 및 절차가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줌
- DOE와의 공동연구에서 우리나라 연구자는 수출통제 기술 및 민감 정보(CUI 등)의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 필요

#### ⚠ 연구자 유의사항

- DOE와의 공동연구에서 특정 문서는 기술 등급에 따라 제한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요청하기 전 정보의 보안등급 및 접근 허용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
- 모든 정보 요청은 공식 채널과 문서 기반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구두 요청 또는 비공식 전달 방식은 지양

## 가상사례 ⑥

## (미국) 연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한 협의… 보안 요건 반영한 국제협력 절차의 이해

## ▣ 개요

- Y연구원은 한국의 공공연구기관 소속으로, 미국 DOE 산하 국립연구소와 CRADA 체결 없이 협력 수행 중
- Y연구원은 미국 측 연구시설의 실험환경과 장비 구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요청함
- 그러나 해당 실험구역은 안전성과 보안 수준이 높게 설정된 구역으로, 외국 국적자의 출입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 보안 심사 및 별도 승인이 필요한 구역이었음.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DOE O 142.3B (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외국 국적자의 DOE 시설 방문 시, 사전 승인 및 보안 절차 이행 필요. 보안 수준이 높은 구역은 별도의 심사 절차 적용 가능

## ▣ 연구보안 이슈

- ▶ 본 사례는 물리적 실험시설에 대한 접근 보안 요건과 관련된 국제협력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사례임
- ▶ DOE 산하 국립연구소는 시설 특성상 일부 구역에 대해 보안 심사 및 제한 접근을 운영 중이며, 이는 CRADA 체결 등 협력 유형과는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됨
- ▶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제한적으로 승인되더라도, 협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닌 법령 및 규정상 요구사항의 반영임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함

## ▣ 연구자 유의사항

- 고위험 또는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을 포함하는 연구 협력의 경우, 현장 방문 또는 장비 활용 가능 여부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
- 방문 요청 전에는 해당 시설의 보안 요건, 방문절차, 등록 시기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가능한 경우 최소 수개월 전 준비를 시작
- 해당 규정은 CRADA 등 협력 유형과 무관하게 DOE 기술,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적용됨을 유의

## 가상사례 ⑦

## (EU) 협력의 경계를 넘은 기술이전: 사전 통보 절차의 중요성

## △ 개요

- 한국의 K대학교는 유럽 소재 연구소들과 함께 Horizon Europe Pillar II 내 특정 과제를 수행
  - 프로젝트 종료 후 K대학은 공동 연구성과를 를 비연계 제3국(Non-associated third country) 소재 기업에 독점 라이선스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수혜자 및 집행기관(granting authority)에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체결
  - 이후 EU 집행위원회(REA) 감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발견되었고, 타 수혜자의 접근권 침해 및 EU 이익(EU interest) 저해 가능성이 제기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Regulation (EU) 2021/695, Art. 40(1)–(4)	성과(Result)의 소유권 이전 및 라이선스 절차 규정. 수혜자는 의무 승계를 보장해야 하며, 다른 수혜자의 접근권이 있을 경우 이전 전 사전 통보 및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함. 비연계 제3국에 대한 이전 또는 독점 라이선스가 EU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행기관은 이의 제기(objection) 권한을 가짐
Model Grant Agreement (MGA) Annex 5 — Transfer and licensing of results	① 다른 수혜자가 접근권을 보유한 경우 최소 45일 전 사전 통보, ②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 가능, ③ 배타적 라이선스는 모든 수혜자의 접근권 포기 시만 가능, ④ 비연계 제3국 대상 이전·독점 라이선스가 EU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행기관은 종료 후 최대 4년 내 이의 제기 가능. 수혜자는 사전 통보 시 EU 이익 영향에 대한 합리적 평가(reasoned assessment)를 제출

## △ 연구보안 이슈

- 성과 이전은 Horizon Europe에서 기술 유출 및 EU 이익 침해 위험과 직결되는 보안 이슈
- 비연계 제3국 기관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는 EU의 전략적 자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Art. 40(4) 및 MGA Annex 5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후 이의 결과에 따라 계약 이행 정지 또는 보조금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전 통보 절차가 누락되면 다른 수혜자의 접근권 침해로 평가되어 협력 신뢰 훼손 및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구자 유의사항

- 성과 이전 또는 독점 라이선스 체결 전, 다른 수혜자에게 최소 45일 전 통보하고 이의 제기 기한 30일을 부여. 집행기관에는 이전 또는 라이선스 의도를 사전에 통보하고, EU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리적 평가서 제출
- 비연계 제3국 법인으로의 이전 또는 독점 라이선스는 집행기관의 이의권(Objection right) 적용 대상이므로, 사전에 EU 이익과의 정합성을 검토
- 집행기관의 이의권은 프로젝트 종료 후 최대 4년까지 행사 가능함을 유의

## 가상사례 ⑧

## (EU) EU 기밀정보(EUCI) 관리의 올바른 접근

## ▣ 개요

- 한국 M연구소는 EU 회원국 소재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M연구소 소속 P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 과제에서 생산된 일부 데이터를 별도 표시 없이 제안서에 첨부
  -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EU 기준상 EU Classified Information(EUCI) 등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안서는 보안규정 위반 가능성으로 평가 제외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제기됨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Regulation (EU) 2021/695, Article 20(1)	모든 연구활동은 “적용 가능한 보안규칙(applicable security rules)”을 준수해야 함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Articles 3·13 및 Annex I	EUCI는 승인된 보안시스템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며, EU와 보안 협정(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비회원국 연구자는 EUCI를 직접 취급할 수 없음.

## ▣ 연구보안 이슈

- 우리나라 EU와 포괄적 보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EUCI 자료를 직접 다루거나 제출할 수 없음
- Art.20은 보안규정 위반 시 자금 중단 또는 제재 가능성을 명시

## ▣ 연구자 유의사항

- EUCI 등급 자료는 EU 승인시설 또는 EUCI 취급 자격 보유기관을 통해서만 관리됨을 인지
- 제안서에는 보안 등급 자료를 포함하지 말고, 보안자체평가(Security Self-Assessment) 첨부 권장 (Horizon Europe Programme Guide 중 Security 섹션에 의거, 모든 제안서는 Security Self-Assessment Form을 통해 “보안 영향이 없음 또는 있음”을 명시해야 함)
 

※ EU Grants “How to handle security-sensitive projects” 참고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how-to-handle-security-sensitive-projects\\_en.pdf](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how-to-handle-security-sensitive-projects_en.pdf) )
- 수행 중 EUCI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프로젝트 보안담당자(Security Officer)에게 신고하고 조치 절차 협의

## 가상사례 ⑨

## (EU) 비연계 제3국 통제기관 참여 제한: 전략적 자율성 보호의 경계

## ▣ 개요

- 한국 S대학교는 반도체 공정기술 관련 과제로 EU 회원국, 일본, 독일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orizon Europe 제안서를 제출
  - 그러나 파트너 중 일부 기업이 본 컨소시엄과 무관한 비연계 제3국(Non-associated third country) 국영기업의 100% 자회사로 확인됨
  - 이에 집행위원회는 제안 접수 단계에서 비연계 제3국 통제기관 참여 제한 규정(Art. 22(5))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해당 파트너의 참여 또는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통보
- ※ (참고) 본 사례는 현행 규정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특정 기관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

## ▣ 적용 가능 규정 예시

규정/지침	주요 내용
Regulation (EU) 2021/695, Art. 22(5)	EU의 전략적 자산·이익·전략적 자율성·안보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비연계 제3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control)하는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
Regulation (EU) 2021/695, Art. 22(6)	EU는 필요한 경우 “EU 내 연구시설 보유” 등 추가 자격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5 – General Annex B (Eligibility)	Art. 22(5)를 구체화하여, 전략적 자산·이익·자율성·안보 관련 활동의 경우 특정 공모/주제 조건에서 참여를 EU 회원국 또는 특정 준회원국으로 제한하거나, 비연계 제3국이 통제하는 법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

## ▣ 연구보안 이슈

- » Art. 22(5)는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안보 관련 분야에서 비연계 제3국 통제기관의 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 Annex B (Eligibility)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개별 콜 또는 토픽 조건에 명시될 수 있으며, 비연계 제3국이 직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은 참여 또는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연구자 유의사항

- 전략기술·안보 주제 관련, 제안 단계에서 파트너 기관의 지배구조(ownership) 및 모기업 관계(control) 사전 점검 권장
- 각 공모 문서의 Eligibility 조건(예: “MS/AC only”)을 사전 검토하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한국은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으로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비연계 제3국이 통제하는 기관이 포함될 경우 해당 파트너의 참여 또는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적격성에 영향 발생 가능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유덕. (2023).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신통상규제. 통하는 세상 통상, 9월호(Vol.1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EU연구협력센터(KERC). (2024) 「유럽 연구보안 정책」, How do EU do, 2024-1.
-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n.d.). Export control and academia – manual. Eschborn: BAFA.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4, May 23).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 Brussels: Council of the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_2024\\_03510](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_2024_03510)
-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2021). DFARS 252.204-7012 : Safeguarding covered defense information and cyber incident reporting. <https://www.acquisition.gov/dfars/252.204-7012-safeguarding-covered-defense-information-and-cyber-incident-reporting>.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2023). Dealing with risk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onn: DFG.
- European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EAS). (2023).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EEES) (JOIN(2023)20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and EEA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3JC0020>
- European Commission.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Regulation (EU) 2016/67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16/679/oj>
- European Commission. (2019). Regulation (EU) 2019/4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452/oj>
- European Commission. (2021). Regulation (EU) 2021/695 establish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695/oj>
- European Commission. (2021). Regulation (EU) 2021/8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Dual-Use Regul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821/oj>
- European Commission. (2021, June 25). Horizon Europe Programme Security Instruction (PSI), Version 1.0.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horizon/guidance/psi\\_he\\_en.pdf](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horizon/guidance/psi_he_e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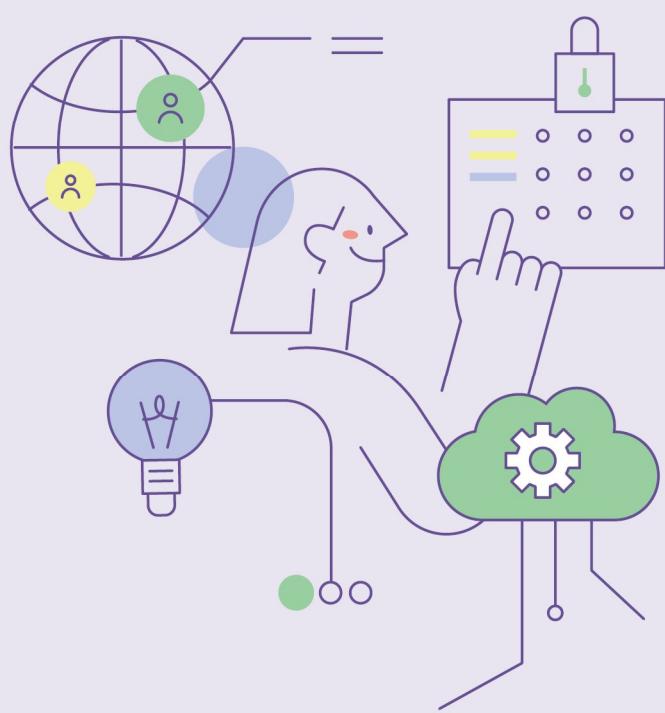
- European Commission. (2024, January 23).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 (COM(2024)26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788-2024-INIT/en/pdf>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2025). Information Integrity and Countering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 Interference (FIMI). Brussels: EEAS. [https://www.eeas.europa.eu/eeas/information-integrity-and-countering-foreign-information-manipulation-interference-fimi\\_en](https://www.eeas.europa.eu/eeas/information-integrity-and-countering-foreign-information-manipulation-interference-fimi_en)
- European Union. (2015).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15/444 on the security rules for protecting EU classified information (EUCI).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dec/2015/444/oj>
- European Union. (2021). Commission Decision (EU, Euratom) 2021/259 laying down implementing rules on industrial security with regard to classified grant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ex.europa.eu/eli/dec/2021/259/oj>
- Fraunhofer-Gesellschaft (FhG). (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ed to 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Fraunhofer”) Version June 2021. Munich: FhG. <https://www.fraunhofer.de/en/gtc.html>
- Government of Canada. (n.d.). G7 common values and principles on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 integrity. Science.gc.ca. Retrieved April 3, 2025, <https://science.gc.ca/site/science/en/safeguarding-your-research/general-information-research-security/international-research-security-resources/g7-common-values-and-principles-research-security-and-research-integrity>
- Helmholtz Munich. (2024, December 16). Code of Conduct. Munich: Helmholtz Zentrum München. [https://www.helmholtz-munich.de/fileadmin-hh/user\\_upload/About\\_Us/EN\\_CodeofConduct20241216\\_finalclean\\_gez\\_eng.pdf](https://www.helmholtz-munich.de/fileadmin-hh/user_upload/About_Us/EN_CodeofConduct20241216_finalclean_gez_eng.pdf)
- DFG & Leopoldina (2014). Scientific Freedom and Scientific Responsibility: Recommendations for Handling Security-Relevant Research. <https://www.dfg.de/resource/blob/354180/dual-use-empfehlungen-de-en.pdf>
- Leibniz Association (WGL). (2018). Verfahrensordnung Ethik der Forschung (Rules of procedure – Research Ethics Commission). Berlin: WGL. Retrieved from [https://www.leibniz-gemeinschaft.de/fileadmin/user\\_upload/Bilder\\_und\\_Downloads/%C3%9Cber\\_uns/Integrit%C3%A4t/Verfahrensordnung\\_Ethik\\_der\\_Forschung.pdf](https://www.leibniz-gemeinschaft.de/fileadmin/user_upload/Bilder_und_Downloads/%C3%9Cber_uns/Integrit%C3%A4t/Verfahrensordnung_Ethik_der_Forschung.pdf)
- Max-Planck-Gesellschaft (MPG). (2010). Guidelines and rules on a responsible approach to freedom of research and research risks. Munich: MPG. Retrieved from <https://www.mpg.de/197392/guidelines-and-rules-of-the-max-planck-society-on-a-responsible-approach-to-freedom-of-research-and-research-risks.pdf>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025). NASA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Manual (GCAM), March 2025 Edition. <https://www.nasa.gov/>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021).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71 : Protecting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in Nonfederal Systems and Organizations. <https://csrc.nist.gov/>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9). Reminders of NIH policies on other support and on policies related t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foreign components (Notice No. NOT-OD-19-114). <https://grants.nih.gov/>
- National Protective Security Authority (NPSA)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 (2021). Trusted research guidance for academia. London: UK Government. <https://www.npsa.gov.uk/specialised-guidance/trusted-research/trusted-research-academia>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4). NSF Proposal &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PAPPG) 24-1. [https://www.nsf.gov/pubs/policydocs/pappg24\\_1/index.jsp](https://www.nsf.gov/pubs/policydocs/pappg24_1/index.js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22).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 (NSPM-33)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United State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2/01/010422-NSPM-33-Implementation-Guidance.pdf>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22). Guidelines for research security programs at covered institutions.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4/07/OSTP-RSP-Guidelines-Memo.pdf>
-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2019, March 20).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olled information, key personnel and critical technologies. <https://www.aau.edu/sites/default/files/Blind-Links/OUSDResearchProtectionMemo.pdf>
- Sargent, J. F., & Gallo, M. E. (2024, March 27).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unding:FY2025 (CRS Report No. R4830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8307>
-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n.d.). 32 CFR Part 2002 –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https://www.ecfr.gov/current/title-32/part-2002>
- U.S. Congress. (2018).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Pub. L. No. 115-232, § 1286, 132 Stat. 1636 (2018).
- U.S. Congress. (2022).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Pub. L. No. 117-167, 136 Stat. 1366.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June 29). Countering unwanted foreign influence in Department-funded research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Research and Engineering. <https://media.defense.gov/2023/Jun/29/2003251160/-1/-1/1/COUNTERING-UNWANTED-INFLUENCE-IN-DEPARTMENT-FUNDED-RESEARCH-AT-INSTITUTIONS-OF-HIGHER-EDUCATION.PDF>
- U.S. Department of Energy. (2016). DOE Order 550.1 Change 1 (LtdChg):Official Travel.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19). DOE Order 142.3B:Foreign National Access Program.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20). DOE Order 483.1B Change 2 :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CRADAs).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21). DOE Order 481.1E Change 1 :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SPPs).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21). DOE Order 486.1A :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or Affiliated Activities.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21). DOE Policy 485.1A : Foreign Engagements with DOE National Laboratories. <https://www.directives.doe.gov/>
- U.S. Department of Energy. (2022). Department of Energy Research, Technology, and Economic Security Framework for Financial Assistance and Loan Activities. Policy framework. <https://www.energy.gov/sites/default/files/2024-11/DOE%20RTES%20Framework%20Memorandum%2011.26.2024.pdf>
- U.S. Department of Energy. (2022). Introduction to the Science & Technology (S&T) Risk Matrix. <https://www.energy.gov/science/articles/science-technology-risk-matrix>
-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n.d.).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ATAS). GOV.UK. <https://www.gov.uk/guidance/academic-technology-approval-scheme>
- UK Government. (2008). The Export Control Order 2008 (SI 2008/323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8/3231/contents/made>
- UK Parliament. (2002). Export Control Act 2002 (c. 2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28/contents>
- UK Parliament. (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c. 1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contents>
- UK Parliament. (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c. 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25/contents/enacted>

# 부록

---





---

• (연구자 및 기관용) •  
**국제공동연구 단계별  
연구보안 주요 유의사항**



## <부록> (연구자 및 기관용) 국제공동연구 단계별 연구보안 주요 유의사항

※ 본 부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24.2.29.)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기획 시 연구보안 유의사항

#### ▲ 국외기관 선정 시 보안 유의사항

» 국외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연구용역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내부의 연구보안 전담부서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예 검토 기준 대상 예시

- 계약금액이 미화 30만 달러(또는 한화 약 3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식재산권의 소유가 국내 연구기관 단독이 아닌 경우
- 상대 기관이 외국 정부, 군사, 정보기관 또는 그 산하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상대 기관이 전략물자 통제 대상국 또는 국제 제재 대상국에 소재하거나, 해당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
- 과거 기술유출 사고 이력 또는 신뢰성 부족이 공식 문서나 언론보도로 확인된 경우

##### 예 검토 항목 예시

- 상대 기관의 법적 성격 및 소유 구조(정부기관 여부, 국유기업 여부 등)
- 연구 범위 및 공유되는 기술의 민감도
- 정보 보호 체계 및 비밀 유지 이행력
- 과거 협력 실적 및 보안사고 유무
- 파트너십 해지 시 대응방안(지식재산 회수 가능성 등)

##### 예 실무 절차 예시

- [1단계] 연구책임자가 개요서 또는 제안서 작성 시 국외기관 참여 여부 및 위 조건 총족 여부 사전 체크
- [2단계] 기관 내부 보안담당 부서에 사전 검토 의뢰서 제출
- [3단계] 보안 전담부서 또는 연구보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 [4단계] 협력 추진 시 보안계획서 제출 및 연구보안 준수 서약 체결

####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 유의사항

»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민감 정보 교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NDA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 비밀유지 의무 범위 확대

- 상대방 기관의 '직원'뿐 아니라, 피용자, 대리인, 재수탁자, 재수탁자의 피용자 및 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의무 부과

- 위 제3자들로부터 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상대방 기관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제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예 NDA 주요 조항 예시

- 비밀정보의 정의와 범위 (문서, 구두, 전자정보 등)
- 비밀정보의 보관 방식 및 열람 제한
- NDA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조항
- NDA의 유효기간 (연구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 포함)
- 제3자 공유 제한 조항 및 의무 위반 시 통보 절차

### ▶ 보안과제 분류 가능성 사전 검토

#### ▶ 연구기획 초기 단계에서 해당 과제가 향후 보안과제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구 수행 방식을 사전에 설계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가 달라질 경우 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 검토 가능(보안대책 제14조 제1항)

#### 예 보안과제 분류 가능성 관련 검토 기준 예시

- ※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 기타 사전 점검사항

#### ▶ 해외 현지 법률 및 수출통제 규정 확인

- 공동연구 대상국이 수출통제법(ITAR, EAR 등) 또는 연구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 중인 경우, 국내법과 충돌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 필요

#### ▶ 연구기획 문서 내 보안항목 포함 권고

- 연구제안서 및 연구개요서에 '연구보안 계획' 항목 추가
- NDA 체결계획, 보안등급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참여기관 검토 결과 등 기재

## 2 계약 시 연구보안 유의사항

### △ 계약서 작성 시 보안 유의사항

- » 연구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기관의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 주요 보안 관리 요소(6가지)
  - 계약서 작성 시 아래의 핵심 보안 관리 항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

보안 관리 항목	내용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성과물의 소유 주체 명시 (단독소유/공동소유/이전 등)</li> <li>• 개량발명, 파생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범위</li> <li>• 특히 출원 전 정보 비공개 조항</li> </ul>
비밀유지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범위 정의(문서, 대화, 디지털 파일 등)</li> <li>• NDA 별도 체결 여부 및 계약서 내 비밀유지기간 설정</li> <li>• 제3자 공유 제한 및 보안조치 의무</li> </ul>
성과물의 발표 및 공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 보고서, 학회 발표 등 사전 협의 의무</li> <li>• 발표 전 기관 내부 보안 검토 절차 명시</li> </ul>
기술이전 및 해외이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또는 시제품 이전 시 사전 승인 조건</li> <li>• 외국으로의 자료 전송 시 암호화 및 승인 절차 의무화</li> </ul>
참여연구원 등 인력 변경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연구인력 변경 시 사전 통보 및 승인의무</li> <li>• 외부 인력 활용 시 보안교육, 서약서 징구 명시</li> </ul>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조항</li> <li>•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안의무 위반'을 명시</li> </ul>

- » 기타 권장 조항

-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법령 준수 의무
- 연구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 확보 조항
- 자료관리 및 연구노트 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지속

### △ 국제공동연구 계약 시 특별 유의사항

- » 해외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국가별 법률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다음 사항을 신중히 점검

- » 관할 법원 및 준거법 명시

- 분쟁 발생 시 적용될 국가 법률과 재판 관할권을 명확히 합의해야 함

※ (예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수출통제 관련 조항 포함

- 미국, EU 등 수출통제법(ITAR, EAR, Dual-use regulation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및 관련 의무를 계약에 명시

### » 비밀유지 위반 시 실질적 제재방안 확보

- 해당 국가에서 계약의 강제력과 손해배상 효력이 있는지를 법률 검토 후 계약서에 반영

### » 다국어 계약서의 해석 기준 명확화

- 계약서가 한글 및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 해석 상 충돌 발생 시 기준 언어를 지정  
※ (예시) “한글본과 영문본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글본을 우선으로 한다.”

## △ 성과의 소유 및 활용 관련 조항

### »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활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불필요한 외부 공개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 예 지식재산권(IPR) 관련 조항 예시

- “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 “해당 기술은 외국기관에 이전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 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성과물의 활용 시 상대기관은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비밀특약 조항 활용

- 연구성과 중 공개 여부가 불분명한 성과에 대해서는 비밀특약 조항(Confidential Annex)을 별도로 설정하여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

## △ 계약 체결 시 실무 프로세스

단계	내용	담당자
① 계약 초안 검토	연구책임자와 법무팀이 주요 조항 검토	연구책임자, 법무담당
② 보안조항 점검	NDA, IPR, 보안이행 조항 포함 여부 확인	보안담당자
③ 기관 승인	기관 내 보안심의 또는 법률검토 승인 절차	기관장, 보안위원회
④ 최종 체결	쌍방 서명 및 원본 보관	계약담당 부서

### 3 수행 중 연구보안 유의사항

#### ▶ 보안대책의 이행 및 관리

- » 연구기관은 연구자 개인의 자율적 보안 준수를 장려하는 동시에 조직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보안이 내재화되도록 지원 필요

#### 예 주요 이행 항목 예시

- 연구자 대상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 국제공동연구 수행 전 서약서 제출 및 사전교육 의무화
- 외부기관 방문 전 사전보고 및 기관 내부 승인 절차 운영
- 연구성과물 외부 공개 전 보안담당자 사전검토

#### 예 시나리오별 보안 조치 예시

상황	보안 조치
국제학회 참석	참석 전 기관 승인 → 발표자료 보안 검토 → 비밀정보 포함 여부 점검
공동연구 파견근무	파견 전 서약서 작성 → 파견지 보안환경 확인 → 정보접근 제한 설정
외부 발표 또는 언론 인터뷰	발표 내용 사전 제출 → 비공개 정보 존재 여부 확인 → 보안 책임자 승인 후 발표
내부 회의 중 외부인 참여	회의 초청 명단 사전 등록 → 외부인 신분 확인 및 제한 구역 접근 금지 조치

#### 예 보안 이행 점검 항목 예시

- 연구 시작 전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이수 여부
- 연구정보 공유 시 암호화·접근권한 제한 적용 여부
-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개 전 검토 프로세스 존재 여부
- 외부 협력자와의 자료 공유 시 NDA 유효 여부

#### ▶ 연구노트 작성 및 보안관리

- »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아이디어, 실험결과, 성과 분석 등이 기록되는 자료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기여도를 입증하고, 보안자료로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체계적인 작성과 보관이 요구됨

### ➤ 연구노트 작성 지침

-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일자별로 작성
- 공동 실험의 경우, 각 연구자의 기여도 명확히 기재
- 실험과정 중 변경사항, 중단 사유 등도 모두 기록
- 타인의 서명·날인 또는 디지털 서명 등 검인 절차 포함 권장

### ➤ 보관 지침 및 보안수준

-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또는 문서보관함에 물리적 보관
- 스캔하여 전산화(백업)하고 접근권한을 제한
- 최소 5년 이상 보관 권장 (기관 규정에 따름)
-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성과 관련 분쟁 우려 시까지 폐기 금지

#### 예 연구노트 관련 FAQ 예시

##### Q1 공동연구자인 외국 파트너와 연구노트를 공유해도 되나요?

A1 외국기관과의 연구노트 공유는 NDA 체결 여부, 보안등급, 정보 민감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기관 보안담당자 승인 후 가능

##### Q2 연구노트는 디지털만으로도 충분한가요?

A2 전자연구노트도 유효하나, 접근권한 관리, 위변조 방지, 백업 체계가 충실히 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별도 보안관리 체계로 관리해야 함

### ▶ 보안등급 재분류 및 수행 중 보안사항 변경 시 대응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조 제2항

- 연구 수행 중 과제 성격 또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과제가 보안과제 등으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이 상향·하향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재분류하고 관련 보안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 필요

#### ➤ 보안등급 재분류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4조 제1항 기준

-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이 보안등급 변경 필요성 인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의 보안담당 부서에 보안등급 재분류 요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시 적정성 검토
- 등급 변경 후 보안계획서 수정 및 추가 보안조치 이행

## ▲ 연구자 및 실험실 보안 문화 정착

### 예 연구자 차원의 실천 항목 예시

- USB 등 저장장치 무단 반출 금지
- 연구자료 이메일 전송 시 암호화 및 수신자 확인
- 실험실 내 외부인 출입 기록 및 감시
- 공동 컴퓨터 로그인 기록 정기 점검
- 출퇴근 시 연구자료 잠금, 모니터 자동잠금 설정

### 예 기관 차원의 운영 권고사항 예시

- 연구실별 보안관리책임자(RSO, Research Security Officer) 지정
-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
- 정기적인 보안감사 및 연구책임자 대상 인터뷰

## 4 종료 후 연구보안 유의사항

### ▶ 특허출원 시 보안 유의사항

» 연구성과가 특허로 이어질 경우, 특허출원 전·후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 필요

» 특허사무소 선정 및 계약 시 보안조치

-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외부 특허사무소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사무소 임직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 기술문서 송수신 시 보안메일 또는 암호화 전송 시스템 사용

- 국내외 특허출원 동시 진행 시, 국가별 민감도 고려하여 공개 여부 결정

» 출원 전 보안 검토 프로세스 예시

- 연구책임자 →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출원 요청

- 보안담당자 → 기술 민감성 및 대외 공개 가능 여부 검토

- 민감기술 포함 시, 외부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밀특허 제도 검토

- 기관장 또는 연구보안위원회 승인 후 출원 진행

» 비밀특허제도 활용 권고

- 전략기술이나 국방·안보 관련 기술의 경우, 일정 기간 비공개 상태로 특허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특허제도 활용 고려

- (국내 기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재권 전담기관과 협의 후 비공개 유지 요청 가능

### ▶ 논문 게재, 학회 발표 등 대외 공개 시 보안검토

» 논문, 보고서, 학회 발표 등 연구성과의 공개는 필수적인 학문적 활동이지만, 보안 위험요소가 내재하므로 다음 절차를 준수

» 사전 공개 검토제 운영 권장

- 기관 차원에서 “성과 공개 전 보안검토 제도” 마련

- 학술지 투고 전, 사내 보안담당자 또는 기술보호위원회의 기술 민감도 점검 필수

- 외부 학회 발표 자료는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학회 발표 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민감기술, 공동개발 중인 비공개 기술 포함 금지

- 질문응답 과정에서 비계획적 정보 유출 방지 교육 필요

- 온라인 컨퍼런스 참여 시, 화면 공유·채팅 유출 등의 기술적 리스크 관리

예 기술 내용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 확인
- 외국 정부 또는 기업과의 공동 성과 여부 검토
- 미출원 특허내용 포함 여부
-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포함 여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 보안조치

- »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기술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보안의 관점에서도 철저한 검토 필요
- » 기술이전 계약 시 유의사항
  - 기술평가서에 보안등급, 공개범위, 보유기술의 전략성 명시
  - 이전 대상 기업과의 NDA 및 활용제한 조항 삽입
  - 기술이전 후, 재이전 금지 및 타인에게의 공개 제한 조항 포함
  - 기술 활용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명시
- » 수출통제 기술 포함 여부 검토
  - 이전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거나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전 허가 획득
  - 외국기업 또는 합작법인 이전 시, 기술보호심의 필요

▲ 성과활용 단계에서의 연구보안 관리체계 운영

- » 보안책임자 승인제 운영 권고
  - 성과 발표,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 외부 활용 전 반드시 부서장 또는 보안담당자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
  - 승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행 내역 정기 점검
- » 성과활용 보안절차 통합 가이드 배포
  - 연구성과 활용 시점별로 필요한 보안조치, 문서 양식, 책임자 역할을 명시한 성과활용 보안매뉴얼을 제작·배포
- » 성과활용 이후 추적관리
  - 기술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 활용 현황 보고 의무 부과
  - 민감 기술의 경우, 타기관 재이전 또는 해외 이전 발생 시 사후보고 체계 운영



## 〈색인〉 주요 용어 해설 (미국)

용어	정식 명칭	정의 및 설명
ACP (NASA)	Access Control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NASA 시설, 정보, 기술에 접근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부기관이 충족해야 할 보안 및 수출통제 요건을 규정하는 문서.</b> 보안성, 수출통제 적합성, 승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li> </ul>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 수출통제(EAR) 및 전략물자 관리 담당 기관</li> </ul>
CI	Counter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방첩.</b> DOE 내에서는 외국의 정보활동,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등을 탐지·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활동을 의미함. DOE 방첩국(DOE-IN)이 이를 총괄하며, 외국인 접근심사, 방첩 브리핑 등을 수행함</li> </ul>
COA	Collaborators and Other Affili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NSF 연구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안자의 공동 연구자, 지도교수, 제자 등 협력관계자 목록을 명시하는 필수 문서</b></li> </ul>
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협동연구개발계약.</b> DOE 국립연구소와 외부 기관(산·학·연 포함)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계약 형태</li> </ul>
CSO	Cognizant Secretarial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DOE(미국 에너지부) 내에서 특정 프로그램, 사업, 연구개발 분야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주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조직 또는 사무국을 의미.</b> 특정 외국인 접근 요청, 민감 주제(Sensitive Subject) 접근, 외국 협력 검토 등과 관련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CSO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li> </ul>
CUI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통제 비분류 정보.</b> 기밀은 아니나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중요 민감 정보로, 특별한 접근통제 및 보호조치가 요구됨</li> </ul>
DAEO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지정 윤리책임관.</b> DOE 내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공무원의 이해충돌, 외국 정부 연계 활동 등을 심의하는 윤리 담당자</li> </ul>
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b> 무기수출관리(ITAR) 관련 규정 및 허가 담당</li> </ul>
DFARS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국방부(DoD)의 연방조달규정.</b> 방위 계약 관련 규정 집합</li> </ul>
DoW	Department of W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전쟁부(구 국방부).</b> 군사 관련 연구개발(R&amp;D) 및 국가안보 연구 수행</li> </ul>
DOE	U.S. Department of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에너지부.</b> 국립연구소 운영 및 에너지·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amp;D) 정책 총괄 부처로, 연구보안 관련 다수의 규정을 제정·운영</li> </ul>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국 상무부 BIS가 운영하는 수출관리 규정.</b> 민수용 이중용도 기술 통제</li> </ul>
FACTS	Foreign Access Central Track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외국인 접근 중앙 추적 시스템.</b> DOE 시설, 기술, 정보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의 정보를 등록·심사·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위험국가 출신 여부, 민감 기술 접근 여부 등을 판단하는 보안 통제의 핵심 도구</li> </ul>
FCOC	Foreign Countries of Conc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우려 국가.</b> 미국 국무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국 정부로, 기술유출·인권침해·지식재산 탈취 등의 우려로 인해 연구협력 시 추가적인 검토나 제한 조치가 적용됨.</li> </ul>

용어	정식 명칭	정의 및 설명
FCOI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b>연구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문제.</b> 주로 NIH, NSF 등 연구지원기관 규정에서 요구
FGTRP	Foreign Government Talent Recruitment Program	• <b>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재유치 프로그램.</b> 기술유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내 공공기관 연구자의 참여가 금지됨
FOAB	Field Operations Advisory Board	• <b>DOE 본부(HQ) 소속의 자문기구로</b> , 국제협정 체결 등에서 <b>위험국가 또는 민감 기술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제시를 수행</b>
FOCI	Foreign Ownership, Control, or Influence	• <b>외국 소유·지배·영향 여부.</b>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외국 이해관계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안 심사 항목
FTMS	Foreign Travel Management System	• <b>외국출장 관리 시스템.</b> DOE 직원 및 계약자가 해외출장(official foreign travel)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으로, 출장 목적·일정·접촉 대상 등을 입력하고, 보안심사, 방첩 브리핑, 승인을 연계함. DOE O 550.1(Official Travel)에 근거
GC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b>법무실.</b> DOE의 법률 자문기관으로, 법령 해석, 규정 제정 지원, 계약·소송 대응, 윤리·보안 관련 법률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함
GCAM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Manual	• <b>NASA가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보조금(Grant) 및 협력계약(Cooperative Agreement)을 관리하는 공식 실무 매뉴얼.</b> 계약 체결, 재정관리, 성과보고, 종료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IA	Interagency Agreement	• <b>정부기관 간 협정(기관 간 계약).</b> DOE와 다른 미국 연방기관(예 : NASA, DoD, NIH 등)이 자금이나 기술,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형태. SPP와 달리 외부 민간이 아닌 정부 간 협력에 해당함. DOE가 외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받는 구조에서 사용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b>국제원자력기구.</b>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비확산 관련 국제기구
IN (DOE-IN)	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 <b>DOE 정보·방첩국.</b> 외국인 접근 심사, 인덱스 조회(Indices Checks), 방첩 브리핑 등 연구보안의 정보보안 분야를 총괄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b>미국 국무부 방위물자 수출통제 규정.</b> 군사물자 및 관련 기술 통제
JIT	Just-In-Time (정보 제출)	• NIH 등 연구기관에서 과제 심사 직전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시 <b>적시 제출을 뜻하는 단어</b>
LOI	Letter of Intent	• <b>의향서.</b> DOE와 외부 기관 간 협력 추진을 위한 비구속적 합의 문서로, 정식 계약(CRADA, SPP, MOU 등) 체결 전 상호 관심사항을 명시하여 협력 방향을 사전 조율함.
MFTRP	Malign Foreign Talent Recruitment Program	• <b>악의적 외국 인재유치 프로그램.</b> FGTRP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정된 프로그램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b>미국 항공우주국.</b> 우주 탐사 및 항공과학 연구기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 <b>비밀유지계약.</b> 공동연구 또는 기술교류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정보(기술, 데이터, 지적재산 등)의 무단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계약
NFS	NASA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 <b>NASA 전용 연방조달규정</b>

용어	정식 명칭	정의 및 설명
NISPM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Program Operating Manual	• <b>미국 전쟁부 주관 국가산업보안 운영지침.</b> 방위산업체 보안규정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b>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b> 과학기술 표준·보안 가이드라인 제정기관
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 <b>DOE 산하 국가핵안보청.</b> 핵무기 관리, 핵비확산, 국방 관련 핵기술을 담당하며 보안이 특히 강화된 연구기관 운영
NPR	NASA Procedural Requirements	• <b>NASA의 정책(NPD)</b> 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 지침 문서. 프로그램 관리, 연구과제 수행, 보안, 재정관리 등 모든 NASA 활동에 필수적으로 적용됨.
NSPM-33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33	• <b>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연구보안 대통령교서.</b> 연구자 국외관계 보고 및 보안 정책 강화 지침 등을 명시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b>미국 국립과학재단.</b> 비군사 기초과학 연구 지원 주무기관
NSF OIG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fice of Inspector General	• <b>NSF 감사실.</b> NSF 산하의 독립 감사·조사기구로,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윤리 위반, 이해충돌 등을 감시·감사하며, 내부고발 및 부정행위 조사를 수행함
PAPPG	Proposal and Award Policies and Procedures Guide	• <b>NSF의 연구제안서 및 과제운영 절차 가이드라인.</b> 연구보안 요건도 포함
PSO	Program Security Officer	• <b>DOE 및 국방부 등에서 프로그램별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인물</b>
RPPR	Research Performance Progress Report	• <b>연방연구지원 과제의 중간성과 및 진척상황을 보고하는 표준 양식</b>
SciENcv	Science Experts Network Curriculum Vitae	• <b>미국 연구자 이력서 통합시스템.</b> NSF, NIH 등에 이력서 제출 시 사용
SCL	Sensitive Countries List	• <b>민감국가 목록.</b> DOE가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지원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정
SPP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s	• <b>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b> DOE가 민간·외부 기관과 전략적 목적으로 공동 수행하는 프로젝트. 보안 및 임무 부합성 심사 필수
SSP	System Security Plan	• <b>정보시스템의 보안통제 및 보호조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공식 문서.</b> NIST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감정보(CUI 등)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계약자는 SSP 작성·유지가 필수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 <b>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국제 테러 지원국.</b> DOE를 비롯한 모든 미국 정부기관의 연구보안, 외국인 관리, 수출통제 정책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조치를 적용받음.
TCP	Technology Control Plan	• <b>기술통제계획.</b> 수출통제 대상 품목(기술, 데이터,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접근통제, 책임자 지정, 위반 대응 등을 규정하는 공식 보안 계획 문서.
TTCP	Technology Transfer Control Plan	• <b>기술이전 통제계획.</b> 민감기술의 이전 과정에서 제3국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보호조치
UCNI	Unclassified Controlled Nuclear Information	• <b>통제 비분류 핵정보.</b> 핵무기·핵물질 등과 관련된 정보 중 법적으로 비분류이지만 특정한 통제가 필요한 민감 정보



## <색인> 주요 용어 해설 (EU)

용어	정식 명칭	정의 및 설명
AC	Associated Country	• <b>Horizon Europe 준회원국.</b> EU와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일부(주로 Pillar II)에 참여 가능.
ATAS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 <b>영국의 특정 이공계 연구·학업 비자 심사 제도.</b> 한국은 면제 대상.
AWG	Außenwirtschaftsgesetz (대외경제법)	• <b>독일의 대외경제법.</b> EU 이중용도 규정(2021/821)을 포함해 수출통제·제재·투자심사를 규율하는 독일의 기본 대외경제법
AWV	Außenwirtschaftsverordnung (대외경제령)	• <b>AWG의 하위 법령.</b> 구체적 수출통제 절차, 임계치, 수출목록 규정.
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b>독일 연방교육연구부.</b> 연구보안 정책 및 포지션 페이퍼 발표.
CA	Consortium Agreement	• <b>Horizon Europe 컨소시엄 협약.</b> 연구과제 참여기관 간 역할, 책임, 비용 분담, 성과 소유권, 데이터 관리, 출판,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부 계약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b>EU 공동외교안보정책.</b> 제재, 규범, 외교 대응을 포괄.
DESCA	DEvelopment of a Simplified Consortium Agreement	• <b>Horizon Europe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컨소시엄 협약 템플릿.</b> 유럽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비공식 표준 모델 CA.
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 <b>독일연구재단.</b> 연구윤리·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제공.
DPA	Data Processing Agreement	• <b>데이터 처리 계약.</b> GDPR 준수를 위해 EU 연구 파트너와 체결하는 보호조치.
DPA 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 <b>영국 개인정보보호법.</b> 브렉시트 이후 UK GDPR과 함께 적용.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b>미국 수출관리규정.</b> 전략물자·기술 수출을 통제.
EEES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 <b>EU 경제안보전략(2023).</b> 공급망·핵심인프라·기술 보안 대응.
ERA	European Research Area	• <b>EU 연구·혁신 통합 공간.</b> 연구보안도 점차 통합 의제에 포함.
EUCI	EU Classified Information	• <b>유럽연합 기밀정보.</b> Commission Decision 2015/444에 따른 정의·등급·처리 규칙 적용.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b>외국인 직접투자.</b> EU는 FDI Screening Regulation (2019/452)으로 전략·자산 심사.
FhG	Fraunhofer-Gesellschaft	• <b>독일 프라운호퍼협회.</b> 계약 기반 수출통제·정보보안 원칙 적용.
FIMI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 <b>외국 정보조작·간섭.</b> EU의 FIMI Toolbox로 대응.

용어	정식 명칭	정의 및 설명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2016/679). EU 내 정보주체 데이터 처리 시 제3국에도 적용.
HaDEA	Health and Digital Executive Agency	• EU 보건·디지털 집행기관. 연구보안 관련 과제 집행 담당.
HDS	Hébergement de Données de Santé	• 프랑스의 ‘개인 건강 데이터(의료정보) 전자 저장·처리’를 위한 법적·인증 제도. 프랑스 공중보건법에 근거함
HGF	Helmholtz-Gemeinschaft	• 독일 헬름홀츠연합. 각 센터별 Code of Conduct 운영. GDPR·수출통제 준수.
ILR	Indefinite Leave to Remain	• 영국 영주권 제도. ATAS 면제 사유 중 하나.
KEF	Kommission für Ethik sicherheitsrelevanter Forschung	• 독일 MPG 산하 연구윤리위원회.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자문 기구.
MGA	Model Grant Agreement	• Horizon Europe 표준 보조금 계약서. 보안 의무·성과 이전 절차 규정.
MOD	Ministry of Defence	• 영국 국방부. 국방·안보 연구개발 및 공급망 관리.
MPG	Max-Planck-Gesellschaft	• 독일 막스플랑크협회. 연구자 자율 보안 준수를 권장.
MS	Member States	• EU 회원국. Horizon Europe 참여 조건에서 “MS only” 제한 가능.
NSI Act 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 영국 국가안보투자법.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규율.
OSA	Open Strategic Autonomy	•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 원칙.
RAS	Rapid Alert System	• EU의 신속 경보 시스템. 정보조작·간섭 대응에 활용.
REA	Research Executive Agency	• EU 집행위 산하 연구집행기관. Horizon Europe 과제 집행·보안심사 담당.
RFOs	Research Funding Organisations	• 연구지원기관. 연구자금 배분, 연구보안 정책 적용.
RPOs	Research Performing Organisations	• 연구수행기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
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 GDPR에 따른 표준계약조항. 개인정보 역외 이전 시 법적 적정성 확보.
SOIA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 EU와 제3국 간 보안협정. EU CI를 역외에서 처리할 때 필수.
WGL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 독일 라이프니츠연구회. 연구보안 관련 자율 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